

사암선생연보

侯菴先生年譜

1762년(英祖 38, 壬午), 1세 공(公)은 6월 16일 사시(巳時)에 광주(廣州) 초부면(草阜面) 마현리(馬峴里)(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 원주[2013년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옛집에서 넷째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의 자(字)는 귀농(歸農)이었다. 이해에 나라에 차마 말 못할 변고(사도세자가 죽은 일)가 있어서 부친 진주공(晉州公→정재원)이 시골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었는데, 공이 그때 마침 태어났으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1763년(英祖 39, 癸未), 2세 완두창(豌豆瘡)을 앓았다.

1765년(英祖 41, 乙酉), 4세 《천자문(千字文)》을 배우기 시작했다.

1767년(英祖 43, 丁亥), 6세 진주공을 모시고 연천(漣川: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부임지로 따라갔다. 공의 인품은 관대하고 중후했으며 경학(經學)이 정미(精微)했던 것은 오로지 가정에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1768년(英祖 44, 戊子), 7세 오언시(五言詩)를 짓기 시작했다. 공의 시(詩)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진주공이 크게 기특하게 여겨 “분수(分數)에 밝으니 자라면서 틀림없이 역법(曆法)과 산수(算數)에 통달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은 천연두를 순조롭게 앓아 한 점 흔적도 없었는데, 오직 오른쪽 눈썹 위에 흔적이 남아 눈썹이 세 개로 나뉘었으므로 스스로 호(號)를 ‘삼미자(三眉子)’라 했다. 《삼미집(三眉集)》이 있는데, 이는 10세 이전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문인이나 큰 선비들이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반드시 대성할 것임을 알았다.

1770년(英祖 46, 庚寅), 9세 어머니 숙인(淑人) 윤씨(尹氏)가 돌아가셨다.(11월 9일이다. -원주) 윤씨의 본관은 해남(海南)이며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후손이다. 고산의 증손으로 이름은 두서(斗緒, 1668~1715)요, 호(號)는 공재(恭齋)인 윤진사(尹進士)라는 분이 있는데, 널리 글을 배우고 옛것을 좋아하여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모두 경제실용(經濟實用)에 관한 것이었다. 이분이 공에게는 외증조부가 되며, 조그마한 초상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공의 얼굴과 수염이 이분을 많이 닮았다. 공이 일찍이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신체와 정신 모두 외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고 했다.

1771년(英祖 47, 辛卯), 10세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배웠다. 이때 진주공이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몸소 가르쳤다. 공은 매우 영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독축할 필요가 없었다. 경전과 사서를 본떠 글을 지었는데 그 체(體)가 매우 비슷했으며, 1년 동안 지은 글이 자기 키만큼이나 되었다.

1774년(英祖 50, 甲午), 13세 두보(杜甫, 712~770, 호: 少陵野老)의 시를 뽑아 베껴놓고 그것을 모방하여 화답하는 운(韻)을 붙여 시를 지어 두보의 뜻을 깊이 얻은 것이 모두 수백 수나 되었다. 부친의 친구들이 크게 칭찬했다.

1776년(英祖 52/正祖 즉위년, 丙申), 15세 2월, 풍산 홍씨(豐山洪氏)에게 장가들었는데 2월 22일이었다. 장인은 무과(武科) 출신으로 승지(承旨)를 지낸 분으로 이름이 홍화보(洪和輔)이다. 공의 관명(冠名)은 약용(若鏞), 자(字)는 미용(美庸) 또는 용보(頌甫), 호(號)는 사암(侯菴) 또는 다산(茶山)이다. 집을 세내어 서울에서 살았다(이때 진주공이 복직되었다. -원주).

1777년(正祖 1, 丁酉), 16세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유고(遺稿)를 처음으로 보았다. 당시 후학들이 이 선생의 학문을 본받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공도 준칙으로 삼았다. 항상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많은 몽상을 했는데 성호를 따라 사숙(私淑)하는 가운데 그러한 몽상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했다. 가을에 진주공을 모시고 화순(和順) 부임지로 따라갔다.

1778년(正祖 2, 戊戌), 17세 동림사(東林寺)에서 글을 읽었다(이 절은 和順縣에 있는데 시문집에 그 기록이 있다. - 원주→동림 사독서기). 가을에 물염정(勿染亭)을 유람했다(이 정자는 同福縣에 시문집에 그 기록이 있다. - 원주 ((유물염정기))). 서석산(瑞石山)을 유람했다(이 산은 光州 동쪽에 있는데 시문집에 그 기록이 있다. - 원주→유서석산기).

1779년(正祖 3, 己亥), 18세 진주공의 명을 받들어 서울로 올라와서 공령문(功令文: 文科 시험의 여러 가지 문체. 科文)의 여러 문체를 공부했다. 겨울에 태학(太學=成均館)에서 시행하는 승보시(陞補試: 成均館 大司成이 매달 儒生들에게 보이는 시험으로 합격자들에게는 生員·進士科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던 시험)에서 뽑혔다.

1780년(正祖 4, 庚子), 19세 예천(醴泉) 임소로 진주공을 찾아 뵈고 반학정(伴鶴亭)에서 글을 읽었다(→ 반학정기). 진주(晉州) 축석루(矗石樓)를 유람했다. 진주공이 벼슬을 그만두고 광주(廣州)로 돌아올 때 공이 모시고 돌아왔다. 겨울에 마현(馬峴)에서 글을 읽었다.

1781년(正祖 5, 辛丑), 20세 이해에는 서울에 있으면서 과시(科詩)를 익혔다. 7월에 딸을 낳았는데 5일 만에 죽었다.

1782년(正祖 6, 壬寅), 21세 처음으로 서울에 집을 사서 살았다(서울 倉洞의 棗泉이다. - 원주).

1783년(正祖 7, 癸卯), 22세 여름 4월에 태학(성균관)에 들어갔다. 2월에 세자(世子) 책봉(冊封)을 경축하기 위한 증광 감시(增廣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生員과 進士를 뽑는 과기)에서 경의(經義) 초시(初試)에 합격했다.

4월에 회시(會試)에서 생원(生員)으로 합격했는데, 3등으로 일곱 번째였다. 선정전(宣政殿)에 들어가 은혜에 감사를 드릴 적에 임금의 특별히 얼굴을 들라 하고, 나이가 몇이나고 물었다. 이것이 공이 임금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기회였다.

회현방(會賢坊)으로 이사하여 재산루(在山樓)에 살았다.

9월 12일에 큰아들 학연(學淵, 1783~1859)이 태어났다(어릴 적의 字는 武群이다. - 원주).

1784년(正祖 8, 甲辰), 23세 향사례(鄉射禮)를 행했다. 공이 여러 선비들과 서쪽 교외로 나아가 향사례를 행했는데, 모인 자가 백여 인이나 되었다.

여름에 <중용강의(中庸講義)를 바쳤다. 공이 태학에 재학 중이었다. 임금이, 《중용(中庸)》의 조목에 대한 의문점을 기술한 80여 항목 중에서 첫머리에 사칠이기(四七理氣)의 변(辯)을 논하면서 퇴계(退溪, 이황, 1501~1570)와 율곡(栗谷, 이이, 1536~1584)이 논한 바의 차이점을 물었다. 동재(東齋)의 여러 학생들은 모두 퇴계의 사단이발(四端理發)의 설이 옳다고 했는데, 공은 율곡의 기발(氣發)의 설이 곧바로 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 설을 주장했다. 공이 글을 올린 뒤에 비방하는 말이 빗발치듯 일어났다. 며칠 뒤에 임금이 도승지 김상집(金尙集, 1723~?, 자: 士能)에게 이르기를 “그가 진술한 강의는 일반 세속의 흐름에서 벗어나 오직 마음으로 헤아렸으므로 견해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마음도 귀하게 여길 만하다. 마땅히 이 답안을 으뜸으로 삼는다.”라고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다. 이로부터 태학의 과시(課試)에서 바로 임금에게 선발(批拔: 시문을 잘 지어서 뽑히는 것)되었으니, 이것이 공이 정조(正祖, 재위 1776.3~1800.6)에게 인정받게 된 시초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사칠속편(四七續編)》을 찬술했는데 오로지 율곡의 설을 위주로 했다. 그러나 이때에 공은 실상 이러한 찬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벽(李穡, 1754~1786, 호: 曠菴)을 따라 배를 타고 두미협(斗尾峽)을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서교(西教→서학)에 관한 얘기를 듣고 책 한 권을 보았다. 이보다 먼저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서양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한자명: 利瑪竇) 등이 서양 물건을 가지고 와 명나라 조정에 바치니 황제의 은총과 하사품이 지극히 후했고, 대신 서광계(徐光啓, 1562~1633) 등의 접대도 매우 융숭했다. 그가 지은 역상수리(曆象數理)에 관한 책과 농정수리(農政水利)에 관한 학문은 대개 중국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서책이 점점 우리나라에도 미쳐오게 되었으니, 진주사(陳奏使) 정두원(鄭斗源, 15810~?, 호: 壺丁) 같은 이는 서양 서적을 가지고 와서 비부(秘府)에 바쳤으며, 재상이었던 소재(疎齋) 이이명(李爾命, 1658~1722, 호: 疎齋)은 서양인과 왕래하면서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곤 했다. 조공가는 사신이 해마다 연경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는 으레 양당(洋堂)에 들어가 혹 정밀한 기계를 얻어 오기도 하고, 혹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한 것이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다. 성호(星湖, 이익, 1681~1763) 선생의 《성호사설(星湖僞說)》을 보면 상위수리(象緯數理)에 관한 책들 이외에 서양인 판토타(D. Pantoja, 龐迪我, 1571~1618)의 《칠극(七克)》《칠극대전(七克大全)》의 약칭. 최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뿌리와 이를 극복하는 일곱 가지 덕행을 다룬 일종의 德行書. 전7권. 《천주실의(天主實義)》와 함께 일찍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삼비아시((Sambiasi, F., 畢方濟, 1582~1649)의 《영언여작(靈言蠶句)》(삼비아시가 구술한 것을 徐光啓가 받아 쓴 책으로 천주교의 입장에서 영혼에 관하여 논한 철학서. 전2권으로 1624년 상해에서 출판), 이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의 《주제군징(主制群徵)》(1629년 북경에서 간행된 책으로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다. 천주교의 교리를 해설한 책.) 같은 책에 대해서 성호 선생께서 논단해놓은 것이 있으니 당시 이러한 책들에 대해 조정에서는 금지령이 없었고, 선비들도 분변하여 배척함이 없었던 것을 증험할 수 있다.

6월 16일, 반제(泮製: 泮宮製述의 준말로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제술만으로 보이는 시험)에 뽑혔다(성균관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전(箋)을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채점하여 삼등 하(三下)의 점수를 주고 종지와 붓을 상으로 주었다. - 원주).

9월 28일, 정시(庭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는 과거)의 초시(初試)에 합격했다(五殿에 尊號를 올린 것을 경축하는 시험이었는데 3등 첫 번째였다. - 원주).

1785년(正祖 9, 乙巳), 24세 2월 25일 반제에 뽑혔다(집에 있으면서 응교하여 律賦를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살펴보고 종이를 상으로 주었다. - 원주). 또 27일 반제에 뽑혔다(春塘臺에 임금이 친히 왕림하여 공의 시험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붓과 종이를 상으로 주었다. - 원주).

이해 2월 25일과 27일 양일에 반제를 시행했는데 모두 임금의 비점을 받고 격려를 받아 뽑혀 상으로 종지와 붓을 하사 받았다. 27일 임금이 친히 춘당대에 나와 식당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사기그릇과 토기(土器)에 담은 누린내 나고 쉰 음식을 친히 잡수시되 진수성찬과 다르게 여기지 않으셨다. 검소한 덕이 고금에 빛나고 즐거운 정이 상하에 넘쳐흘렀으니 참으로 성대한 행사였다.

4월 16일, 반제에 뽑혔다(성균관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표(表)를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채점하여 종지와 붓을 상으로 주었다. - 원주).

10월 20일, 정시의 초시에 합격했다(역적 토벌을 경축하는 과거였다. - 원주).

11월 초3일, 감제(柑製: 黃柑製의 약칭으로, 제주도 특산물인 황감을 진상하면 이를 성균관·四學의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이는 시험)의 초시에 합격했다.

이해 겨울에 제주도에서 공물마치는 글이 올라와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공이 발해(發解: 과거의 초시에 합격함)하여 수석을 차지했다.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니, 임금이 공의 시험 답안지를 읽게 하고 무릎을 치며 칭찬하기를 “그대가 지은 것이 실은 장원보다 못하지 않으나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했다. 물러나오니, 승지(承旨) 홍인호(洪仁浩, 1753~1799)가 “아무개 같은 자는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다.”라는 임금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12월 초1일,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친히 나와 식당(食堂)에서 음식을 들었는데 봄날과 같았다. 그리고 식당의 명(銘)을 짓도록 했는데, 공이 수석을 차지하여 붉은 비점이 찬란했다. 다음날은 유생들을 성정각(誠正閣)으로 불러 비궁당(匪躬堂)의 명을 짓게 했는데, 공이 또 수석을 차지했다. 격려하고 칭찬함이 분에 넘칠 지경이었다. 특별히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짚을 내려주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1786년(正祖 10, 丙午), 25세 2월 초4일, 별시(別試)의 초시에 합격했다.

7월 29일, 둘째아들 학유(學游, 1786~1855, 호: 耘浦)가 출생했다(어릴 적 字는 文群이다. - 원주).

8월 초6일, 도기(到記: 성균관 유생이 식당에 출입한 회 수를 적은 장부. 아침과 저녁 두 끼를 1회로 하여 50회가 되어야 반제에 응시할 수 있었음.)의 초시에 합격했다.

이해 가을에 도기가 있었는데 공이 또 초시에 합격했다. 춘당대에서 임금을 뵈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가 지은 글이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때 여러 사람들이 지은 문체와 흡사하여 근래의 숙된 문체에 빠지지 아니했으나, 귀하게 여길 만하다. 다만 결실을 이루는 것이 늦어져 점차 숙된 문체를 따를까 염려되니 다른 무리를 본받지 말 것을 명하노라.”라고 했다.

1787년(正祖 11, 丁未), 26세 정월 26일, 반제에 뽑혔다(집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표를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살펴보고 붉은 비점을 찍은 것이 답안지에 가득했다. 《당송팔자백선(唐宋八子百選)》을 상으로 받았다. - 원주).

3월 14일, 반제에 뽑혔다(집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전(箋)을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살펴보고 휘장(揮場: 시험장을 돌아다니며 합격자를 외치는 일)하고 우열을 가렸다. - 원주). 다음 날 순위를 정함에 수석을 차지했다(빈청(賓廳: 3정승이 정무를 맡아보는 곳)에서 시험 답안지를 가져오게 하여 임금이 살펴보았다. - 원주).

이때 반시(辨試)에서 답안지를 낸 지 얼마 안 있다가 문득 휘장 소리를 듣고 여러 유생들이 모여 보니 바로 공이 지은 것이었다. 모두 13구였는데 글자마다 붉은 비점이 있었다. 다음 날 비교함에 수석을 차지했다. 이날 밤 성장각에 들어가 임금을 뵈니 아름다운 촛불이 휘황했다. 명을 받고 왕의 자리(御欄) 앞에 나아가니 임금은 편한 복장(便服)으로 베개에 기대고 있었다. 공으로 하여금 시권(試券)을 낭송하게 하고,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부채로 장단을 치며 좋다고 했다. 이 시권은 학성군(鶴城君, ?~?)과 강윤(姜潤, 1701~1782, 자: 德以)의 일을 인용한 것이었다. 임금이 “이 두 기신(耆臣: 實職에 있는 70세 이상의 정2품 이상 문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耆老所에 들어간 신하)의 일을 그대가 어떻게 아는가?” 하고 물으니, 공이 “조보(朝報: 승정원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官報)에서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문체가 매우 좋다.” 하고 시신(侍臣)에게 명하여 《국조보감(國朝寶鑑)》 한 질과 백면지(白綿紙) 1백 장을 가져오게 하여 공으로 하여금 안고 나아가게 했다. 문 밖에 나오니 명을 받은 감수졸(監守卒)이 대신 안고 나아갔다. 이날 보는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8월 21일, 반제에 뽑혔다(성균관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표를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살펴보고 비교했다. - 원주). 23일 순위를 정함에 고등(高等)을 차지했다(집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표를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살펴보고 답안지에 붉은 비점을 가득히 찍었다. - 원주).

8월 반시(辨試)에서 순위를 정함에 고등을 차지했다.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들어와 입대(入對)할 것을 명했다. 들어가니 석류나무 아래에 앉으라고 했다. 임금이 물었다. “그대는 《당송팔자백선》을 얻었는가?” “얻었습니다.” “《대전통편》은 얻었는가?” “얻었습니다.” “《국조보감》도 얻었는가?” “얻었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근일에 내각(內閣: 奎章閣)에서 인쇄한 서책을 그대가 모두 얻었으니 내가 줄 책이 없구나.” 하고, 크게 웃은 다음 곁에 있던 신하를 돌아보고 “술을 가져오너라.”라고 했다. 계당주(桂觴酒)를 큰 사발에다 가져왔다. 술을 못 마신다고 극구 사양했으나, 임금이 명하여 다 마셨다. 술이 몹시 취해 비틀거리니 임금이 내시감(內侍監)에게 부축해 나가라 명하고, 조금 있다가 빈청에 머무르라고 했다. 잠시 후 승지 홍인호(洪仁浩)가 소매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은밀히 건네주면서 “네가 장수의 재주도 겸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을 내려준다. 훗날 동철(東詰)과 같은 도적이 있으면 너를 기용하여 출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임금의 교지를 전해주었다(이때 영동지방에 정진성(鄭鎭星)과 김동철(金東詰)의 옥사가 있었다. - 원주). 돌아와 보니 《병학통(兵學通)》이었다.

12월에 반제에 뽑혔다(성균관에 있으면서 응시하여 표를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살펴보고 답안에 붉은 비점을 가득 찍었다. - 원주). 특별히 낮은 등급에 두면서 이르기를 “여러 번 응시하여 여러 번 수위를 차지하니 꽃은 찬란히 피어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 때문에 꽃을 거두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공이 과거 보는 일을 그만두고 은거하여 경전의 뜻을 궁구하려는 뜻을 가졌다. 아마도 임금이 무인으로 등용할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문엄(門淹)에 향장(鄉庄)을 샀다.

1788년(正祖 12, 戊申), 27세 정월 초7일, 반제에 합격했다(이 시험은 인일제(人日製: 人日인 음력 정월 초 7일이 佳節이라고

하여 보이던 시험. 성균관 유생이 주 대상임.)였다. - 원주.

회정당(熙政堂)에 들어가 임금을 뵈었다. 임금이 “그대가 지은 책문(策文)이 몇 수나 되는가?” 하여 “20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3월 초7일, 반제에 합격함에 수석을 차지했다(삼일제(三日製: 3월 3일에 보이는 시험)에서 試表에 권점(圈點: 본래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의 성명 밑에 銓選官이 둥근 점을 찍는 것인데 여기서는 試官이 찍은 점을 말함.)을 받았다. - 원주.

회정당에서 임금을 뵈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는 초시를 몇 번이나 보았는가?” 하여 “회시(會試)를 보지 못한 것이 세 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1789년(正祖 13, 己酉), 28세 정월 초7일, 반제에 합격했다(인일제에서 試表에 권점을 받았다. - 원주).

회정당에서 임금을 뵈었다. 임금이 앞으로 나오라 하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다가 “초시를 몇 번이나 보았는가?”라고 하여 “네 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급제하겠는가?” 하고 물러가라고 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급제하지 못함을 민망히 여긴 것 같다.

봄의 도기(到記)에서 급제[釋褐]했다.

정월 26일, 반시(半試)에서 표를 지어 수석을 차지하고 곧바로 전시(殿試: 初試·覆試를 통과한 사람에게 왕이 몸소 보이던 문과의 최종시험)에 나아갔다. 임금이 ‘송나라 여러 신하들이, 위국공(魏國公) 한기(韓琦, 1008~1075)가 북문에 나가 지키던 날 <희설(喜雪) 시(詩)를 지어 천하의 중임(重任)을 자임했음을 나타낸 것을 축하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어제(御題)를 제출했다. 임금이 우의정(채제공(蔡濟恭, 1720~1799, 호: 樊巖) - 원주)에게 이르기를 “춘당은 북원(北苑)이니 ‘북문’에 비유할 수 있고, 오늘날 마침 큰 눈이 내렸으니 ‘희설’에 비유할 수 있으며, 경의 사람됨이 ‘위국공이 천하의 중임을 스스로 맡았다.’라고 하는 데 견줄 만하니, 경은 힘써 보라.”라고 하니, 우의정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했다. 시험 답안지를 평가하여 심봉석(沈鳳錫, 1729~?)을 1등으로 하고 공을 2등으로 했다. 이름을 발표하기 전에 임금이 이르기를 “나이가 많아 가상한 자를 1등으로 하고, 국가에 쓸 만한 자를 2등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의정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드디어 심봉석을 1등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름을 발표할 때 이르러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봉석이 탈락되는 바람에 공이 수석으로 급제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은 항상 ‘임금은 명(命)도 만들고 상(相)도 만든다.’라고 했는데 심모(沈某)의 얼굴생김[相貌]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내가 어찌 ‘국가에 쓰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다음 날 회정당으로 불렸다. 거동하고 대답할 때마다 사전(謝箋)을 지었는데, 전(箋) 중에 ‘재주는 조식(曹植, 192~232)의 글재주만 못하나, 나이는 등우(鄧禹, 2~58)가 재상을 제수 받던 때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었다. 임금이 웃으면서 “백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재상이 태어난 일인데, 이 사람도 재상이 되고 싶어 하니 무슨 뜻이 있어서인가?”라고 했다. 이날 임금의 말씀이 자상했으니 모두 기쁘고 즐거워하는 뜻에서였다.

3월에 전시에 나아갔다. 탐화랑(探花郎: 展試 甲科 3위 합격자)의 예로써 7품관에 붙여져서 희릉 직장(禧陵直長)에 제수되었다.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임명되었다. 이해 봄 임금이 회정당에 나와서 초계제신(抄啓諸臣)에게 명하여 《대학(大學)》을 강의하게 했는데, 공이 돌아와 그 내용을 기록해놓았으니 《회정당대학강의(熙政堂大學講義)》 한 권이 있다.

5월에 임금의 특별 교지로 부사정(副司正: 五衛에 속해 있던 중7품의 무관)으로 옮겨졌다.

6월에 가주서(假注書)에 제수되었다.

이해에 문신에게 부과하는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것이 모두 다섯 번이었고, 수석에 비교된 것이 모두 여덟 번이나 되어 상으로 하사받은 것이 매우 많았다.

가을에 각과문신(各課文臣)으로 울산 임소로 진주공을 찾아갔는데 임금의 교지에 의한 내각의 독촉문이 있었으므로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내각의 공문으로 인해 돌아올 때 안동(安東)을 경유하면서 ‘산장(山長: 산속에 은거하며 학문을 가르치는 재야 학자) 이진동(李鎭東, ?~?)’이란 사람이, 상소한 일 때문에 고을 원(營邑)에게 미움을 받아, 원이 다른 일로 그를 무고하여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진동이 계곡(鷄谷: 현재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닭실))의 권씨(權氏) 집에 숨어 있는데 그를 잡으려는 자들이 조령(鳥嶺)과 죽령(竹嶺)에 잠복하고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몰래 고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친구 몇 사람이 공에게 일러 주었다. 공이 말하기를 “사태가 위급하니 비록 내각에 죄를 짓더라도 구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저물녘에 말을 타고 120리를 달려 새벽녘에 영주에 이르렀다. 또 방향을 바꾸어 50리를 달려 호평(虎坪)의 김좌랑(金佐郎)(김한동(金翰東, 1740~1811, 호: 臥隱)이다. - 원주)의 집에 이르렀다. 이진동이 청암정(靑巖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그를 데리고 멀리 말을 몰아 밤에 죽령을 넘어 단양(丹陽)에 도착했다. 오염(吳琰, 1743~?)이 오대익(吳大益, 1729~1803, 호: 雲巖)의 별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노인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 화를 면하게 해주었으니, 원의 계략은 실현되지 못했다.

겨울에 주교(舟橋: 임금의 거동 때 한강에 설치하는 浮橋)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공이 그 규제(規制)를 만들어 공을 세웠다.

12월에 셋째아들 구장(懼祥)이 태어났다(어릴 적의 字이다. 辛亥年 3월에 요절했는데 壙誌(《幼子懼祥壙銘》)가 있다. - 원주). 1790년(正祖 14, 庚戌), 29세 2월 26일 한림회권(翰林會圈: 會圈은 大提學·直閣·待敎. 한림의 벼슬을 시킬 만한 적임자를 뽑을 때 전임자들이 한데 모여서 선출될 사람들의 성명 위에 圈點을 찍는 일을 가리킨다.)에서 뽑혔다(蔡濟恭이 右相으로 권점을 주관하여 沈能迪(1762~?)·金履喬(1764~1832)·鄭文始(1761~?)·洪樂游(1761~?)·尹持訥(1762~1815→무구윤지눌묘지명) 및 공을 뽑았는데 여섯 사람 모두 三點씩이었다. - 원주). 29일 한림소시(翰林召試: 會圈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들이 王命으로 詩·賦·論·策 등의 최종시험을 보는 것)에서 뽑혀 그날 예문관 검열(檢閱)로 단독 임명되었다.

3월 초8일, 임금의 엄한 분부를 받고 해미현(海美縣: 2013년 현재 충청남도 서산지역)으로 유배되었다. 13일에 유배지에 이르렀는데 19일에 용서를 받았다.

공이 한림원에 들어갈 때, 체재공이 우의정으로 권점을 주관했는데 김이교·서유문(徐有聞, 1762~?)·홍낙유·윤지눌이 함께 뽑혔다. 그런데 한 대간(臺諫)이 “사사로운 정을 따라 법식(法式)을 어겼다.”라고 말하여, 한림권점에서 뽑힌 사람들이 이 의(義)를 내세우며 한림소시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임금이 회정당에 나와 엄한 교지를 거듭 내려서 여러 사람이 이윽고 궁궐로 들어가자, 액(掖隸: 궁중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吏員이나 下隸)를 시켜 오지동이를 가져다 그들에게 주어 소변을 보게 하고 대궐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바깥 날씨는 춥고 밤은 깊어가 부득이 각자 시험 답안을 올렸는데, 공과 김이교가 뽑혔다. 임금의 하교가 매우 엄하여 부득이 숙배(肅拜: 謝恩하는 뜻으로 임금에게 공경히 四拜하는 禮)를 했다. 다음 날 새벽 상소문을 올리고, 곧바로 퇴궐하여 여러 번 패초(牌招: 승지를 시켜 왕명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를 어기다가 마침내 해미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10일 만에 방환(放還)되어 다시 한림원에 들어왔다. 며칠 뒤 내각 응교 시권(內閣 應敎試券)에 직함(職銜)을 쓰지 않았는데 임금이 노하여 “본직은 당직(唐職: 중국에서 받은 관직으로 이것은 시권에 쓰지 않음)이 아니거늘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여 뒤에 부득이 그 관직을 썼다. 이미 6품에 올랐으나 이 조에서는 그 품계에 맞는 관직에 비의(備擬: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하지 않았는데 6월에 특별으로 곧바로 대간에 비의되었다. 그러므로 낭서(郎署: 각 관아의 堂下官)의 직을 두루 거치지 않았다. 이때 임금이 연신(筵臣: 경연에서 경전 등을 강론하는 신하)에게 이르기를 “우의정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나로 하여금 한 한림을 잃게 했다. 그러나 어찌 반드시 한림만이 사람의 나이갈 길이겠는가.”라고 했다(윤지눌이 한림 권점에서 뽑힘으로써 臺言을 야기한 것을 이른 것이다. - 원주).

공이 해미로 귀양 가서 10일 동안 있다가 용서받고 돌아오는 길에 음(癪疥)을 씻고자 온천에 들렀다. 온천 관리인을 불

러 경진년(1760, 영조 36) 장헌세자(莊獻世子, 莊祖, 懿皇帝, 1735~1762)가 온천에 왔을 때의 일을 물으니, 한 노인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그때 동궁(東宮)께서 행궁(行宮)에서 묵게 되었는데, 동궁을 호위했던 금군(禁軍)의 말들이 민간의 밭을 짓밟아 수박통이 깨어지고 덩굴이 뽑혀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동궁이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피해를 입은 수박 값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즉시 후하게 배상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을 금군에게 나누어주니, 백성은 가난을 면하게 되고 금군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환성이 우레와 같았으며 부로(父老)들도 감탄을 마지않았습니다.” 동궁이 온천의 서쪽 담장 아래에서 과녁에 다섯 개의 화살을 쏘고는 “상쾌하구나!” 하고, 그 땅을 손질하여 단을 만들게 하고 왜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우뚝하게 치솟다가 웅이가 댕쳐 높이가 겨우 몇 길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이덩굴과 칩덩굴이 가지와 줄기에 얽히고설켜 있고, 기와조각·인분덩이 등 오물들이 쌓여 있었다. 공이 분연히 이르기를 “너희들이 잘못된 일이다. 동궁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요, 친히 명하여 만든 단인데, 어찌 이와 같이 더럽힐 수 있단 말이나.” 라고 하니, 관리인이 아뢰기를 “그때 동궁께서 돌아가신 뒤에 저희들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단을 쌓도록 청했으나, 관에서 꾸짖고 기각시켰으니 저희들이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공이 이르기를 “돌을 주워서 둘레에 쌓고, 풀을 뽑아 자라게 해 주는 일을 누가 못하게 한단 말이나. 내가 돌아간 뒤에 네가 그 일을 하도록 하여라.”라고 했다. 관리인 등이 관에 호소하면서 정 한림(丁翰林)이 이곳을 지나다가 왜나무와 단이 황폐해져 있는 죄를 엄히 힐책했음을 두루 말했다. 관에서 이에 쌀 2석을 주어 단을 쌓고 풀을 뽑게 했다. 그 뒤에 관찰사와 고을 수령(土帥)이 왜나무 단의 일을 아뢰니, 임금의 비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그 충성을 칭찬하고 권장했다.

5월 초3일, 예문관 검열(檢閱)로 도로 들어갔다가 이달 초5일 용양위(龍驤衛: 五衛 중 左衛로 文宗 원년에 설치한 군대 편제의 명칭) 부사과(副司果: 五衛 소속의 종6품 군직)로 승직되었다.

7월 초4일, 시간원(司諫院) 정언(正言)으로 추천되었다. 11일 정언에 제수되었고, 19일 각과(閣課) 규장각의 일을 하도록 벼슬이 갈랐다.

9월 초6일, 정언에 제수되어 잡과감대(雜科監臺)에 나아갔고, 초10일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제수되어 무과감대(武科監臺)에 나아갔다.

공이 지평으로서 훈련원의 무과 시험을 감찰하게 되었는데, 먼 지방의 무사들이 재기가 뛰어나 이미 고등에 들자 시험관들이 《삼략(三略: 중국 한나라 때 張良(?~기원전 186)이 黃石公(?~?, 秦나라 末에 활동)에게서 받았다는 병서)》을 강하게 하고 피를 써서 교묘한 질문을 하여 끝내 낙방시켰다. 오직 서울의 장수(將帥) 집안 자제들만이 강(講)에 응하여 과거를 독점하니, 그릇된 예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누차 시정할 것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아전을 불러 급히 소지(疏紙: 상소용으로 쓰는 종이)를 가져오게 했다. 주시관(主試官)이 깜짝 놀라 “소지는 무엇에 쓰려고 하오?”라고 물으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막 병이 났는데, 혹 국사에 보탬이 있는 일을 한다면 병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관이 사사로운 정을 좇고 있는데도 감찰하여 그치게 하지 못하고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데도 그 한을 풀어줄 수 없으니, 감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미 나랏일에 보탬이 없음을 알았으니, 차라리 나의 병이나 요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주시관이 너그러이 용서해줄 것을 간청했다. 이 시험의 합격자 명단에는 먼 지방 사람이 매우 많았다.

12월 각과친시(閣課親試)에 합격하여 상을 받은 것이 모두 세 번이나 되었다.

임금이 초계문신들로 하여금 대궐 안 각 관청에 숙직하면서 《논어(論語)》를 읽고 매일 여러 편씩 강하여 7일 만에 강을 마치도록 했다. 공이 한밤중에 상의원(尙衣院: 임금의 의복과 궁중에 소요되는 일용품, 금, 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에서 《논어》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각리(閣吏)가 와서 소매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이것이 내일 강할 장(章)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깜짝 놀라 “어찌 이것을 강하는 사람이 미리 얻어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니, 그 각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이 하교하신 일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논어》 전편(全篇)을

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끝내 살펴보지 아니하니, 그 각리가 웃고 돌아갔다. 다음 날 경연(經筵) 석상(席上)에 올라 《논어》를 강하는데, 임금이 규장각 관원들에게 이르기를 “정(丁) 아무개는 특별히 다른 장을 강하게 하라.”라고 했다. 강을 끝냈을 때 틀린 곳이 없었다. 임금이 웃으면서 “과연 전편을 읽었구나.”라고 했다. 며칠 뒤 한밤중에 눈바람이 치고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내전(內殿)에서 글 읽는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을 내려준 일이 있었다. 공이 상의원으로부터 내각으로 나아가다가 밤이 칠혹 같이 어두워서 담장에 부딪쳐 얼굴에 상처가 났다. 그다음 날 춘당대에서 임금을 뵈었는데 임금이 공의 얼굴에 납지(蠟紙: 상처에 고약을 붙일 때 사용하는 밀납 먹인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납지는 왜 붙였는가? 어젯밤에 과음하여 넘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공이 답하기를 “과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밤이 칠혹처럼 캄캄해서 그랬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날에 취학사(醉學士)가 있고 전학사(顛學士)가 있었다는데 과음하지 않았다면 취학사는 아닐 테니 전학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책을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얼굴을 다쳤는데도 오히려 책을 잘 읽으니, 마땅히 고침(高籤)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순통(純通: 純通純粗 純略不通)의 성적 등급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받았다. -원주). 이날 임금이 친시(親試)했는데 ‘내각으로 음식을 내려준 것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에 전주어 전(箋)을 지어 올려 또 1등으로 뽑혔다. 임금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나 오히려 좋은 글귀를 잘도 지었으므로 1등으로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 전에 “잘 익은 감귤은 멀리 바다 건너 봉래에서 왔고, 옥소반의 진귀한 음식은 그대로 식전 방장(食前方丈: 사방(四方) 열 자의 상에 잘 차린 음식)이로세.[霜柑老橘遜矣從海外蓬萊, 玉盤珍羞居然爲食前方丈.]”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임금이 특히 이 구절을 칭찬하여 좋은 구절로 삼았다.

12월 각과친시(閣課親試)에 합격하여 상을 받은 것이 모두 세 번이었다(말과 표범 가죽 등이었다. -원주).

1791년(正祖 15, 辛亥), 30세 5월 23일, 사간원의 정언에 제수되었다.

10월 22일,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12월 친시(親試)에서 7등을 차지하고, 과시(課試)에서 10등을 차지했으며, 과강(課講)에서 6등을 차지하여 모두 상을 받았다.

이해 겨울에 <시경의(詩經義)→시경강의(詩經講義)> 800여 조(條)를 지어 올려 임금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 임금이 이 책에 대해서 비지(批旨)를 내리기를 “널리 백가(百家)를 인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해놓은 것이 무궁하니, 참으로 평소 축적된 학식이 넓고 깊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홍재전서(弘齋全書)》 중에는 절취(節取)해서 기록해놓은 것이 200여 조나 되는데, 모두 칭찬을 받은 것이다.

겨울에는 호남에서 권○○·윤○○의 옥사(獄事→진산사건)가 있었다. 목만중(睦萬中, 1727~1810)·이기경(李基慶, 1756~1819)·홍낙안(洪樂安, 1752~?) 등이 공모하여 이번 기회에 선류(善類)를 모두 제거하고자 체제공에게 글을 올려 “충명하고 재주 있는 벼슬아치와 유생들 중에 10 중 7, 8은 모두 서교(西教→서학)에 빠져 있으니 황건(黃巾)의 난이나 백련교도(白蓮教徒)의 난과 같은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보다 먼저 공이 이벽(李穡, 1754~1786, 호: 曠菴)을 따라 배를 타고 두미협(斗尾峽)으로 내려가다 처음으로 서교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정미년(1787, 정조 11) 이후로 임금의 총애가 더욱 두터웠을 때에도 자주 이기경의 강정(江亭)으로 나아가 학업을 닦았다. 이기경도 서교에 관해 듣기를 좋아하여 손수 책 한 권을 베끼기도 했는데, 무신년(1788, 정조 12)부터 이기경이 다른 속셈을 품게 되었다. 당시 성호의 후학들이 성대하게 일어나 학문을 갈고 닦으며 도를 강론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 나누어 가졌는데,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이를 닦은 뒤에는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외우고 해가 뜨면 <경재잠(敬齋箴)>을 외우고 정오에는 <사물잠(四勿箴)>을 외우고 해가 지면 <서명(西銘)>을 외우도록 했다. 염민(廉敏: 중국 송나라 때의 성리학자인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와 閩中の 朱熹를 가리킴)을 좇아 수사(洙泗: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洙水와 泗水의 두 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자 했으며, 장엄하고 정성스럽고 겸손하게 강론을 했다. 일찍이 서쪽 교외에 나아가 향사례(鄉射禮)를 행했는데, 모인 사람이 백여 명이나 되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예의 법도가 찬연히 다시 밝아지는구나!”라고 했다. 이기경의 무리가 투서를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성호의 후학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계략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임금이 체제공을 시켜 투서한 세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의 허실을 조사하게 했다. 이기경이 아뢰기를 “서교의 글 가운데에는 좋은 곳도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승훈(李承薰, 1756~1801, 호: 蔓川)과 함께 성균관에서 그 글을 보았으니, 만약 그 글을 보았다는 죄로써 논한다면 신도 이승훈과 같이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곧바로 공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가 대답한 말이 공평했음을 말하고, 함께 일이 잘되게 하자고 했다. 공이 이치훈(李致薰, 1759~1822)을 불러 말하기를 “성균관에서 서교에 관한 글을 본 것이 사실이니 심리(審理)에 나아가서도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임금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니, 이치훈이 말하기를 “밀고한 자가 이미 자수를 했으니, 옥사가 비록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임금을 속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밀고한 바가 옳지는 않으나 옥사란 임금께 고하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오직 옥사만 볼 뿐이니, 명문거족들이 집집마다 이러쿵저러쿵 수군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지금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시고 어진 정승이 임금을 보좌해 정사를 다스리고 있으니, 사실대로 아뢰어 바로 이때에 굽은 종기를 터뜨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뒷날 비록 후회할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으나, 이치훈이 듣지 않고 이승훈의 옥사에 대해서 이기경이 남을 무고했다고 대답하여 드디어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에 이기경이 초토신(草土臣: 喪中에 있는 신하)으로 상소를 하여 대신(大臣)을 비방했는데, 사실을 조사해보니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성균관에서 글을 보았다는 사실이 더욱 자세히 드러났다. 임금이 노해서 이기경을 경원(慶源: 현재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면)으로 귀양 보냈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으나, 공은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의 화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다. 공이 때때로 이기경의 집에 가서 어린 자식들을 보살피주고 그의 어머니 소상(小祥) 때에는 천 냥을 내어 도와주었다. 을묘년(1795, 정조 19) 봄에 나라에 대사면이 있었으나, 이기경은 풀려나지 못했다. 공이 승지 이익운(李益運, 1748~1817)에게 말하기를 “이기경이 마음씨가 불량하여 송사(訟事)에서 패배를 했으니, 비록 한때의 통쾌한 일이지는 하지만 뒷날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정에 들어가 고하여 석방시켜 주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이공도 “내 뜻도 그와 같습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들어가 앞서 말한 대로 아뢰니 임금이 특별히 이기경을 풀어주었다. 이기경이 돌아온 지 오래되어 점차 조정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오래 사귄 친구조차도 그와 함께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공만이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며 “이른바 옛 친구란 옛 우정을 잃지 않는 법이다.”라고 했다. 신유옥사(辛酉獄事) 때에는 이기경이 주도하여 반드시 공을 죽이고 말고자 했다. 그러나 홍의호(洪義浩, 1758~1826, 호: 澹寧) 등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다가 말이 공에게 미칠 때면 그는 반드시 눈물을 줄줄 흘렸으니, 비록 형세가 몰려서이나 그의 양심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겠다.

1792년(正祖 16, 壬子), 31세 3월 22일, 홍문관록(弘文館錄: 홍문관의 校理·修撰을 뽑을 때의 1차 후보자 선임 기록)에 뽑혔으며, 28일 도당회권(都堂會圈: 홍문관의 校理·修撰을 뽑을 때의 2차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 뽑혀 29일 홍문관 수찬(修撰)에 제수되었다(당시 어떤 사람이 “전체 추천 기록이 모두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 원주). 당시 의논이 공이 관록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니,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은 정씨(丁氏)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온 곳이니, 정 아무개도 관록에서 뺄 수 없지 않는가.” 하여 마침내 이의가 없게 되었다.

이해에 임금이 은밀히 체제공에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면서 “남인(南人) 가운데 대통(臺通: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으로 천거되는 것)을 서둘러야 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묻고, 또 이가환(李家煥, 1742~1801, 호: 貞軒)·이익운(李益運, 1748~1817) 및 공에게 각자 소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체제공과 두 사람이 모두 “권심언(權心彦, 1734~?)이 가장 급합니다.”라고 했다. 이는 아마도 백여 년 동안 한쪽(남인)이 벼슬에 나아갈 길이 막혀, 한 번 대통이 있을 때 겨우 한 사람이었으므로 각자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공이 28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의 세벌(世閥)·과명(科名)·문학(文學)·정사(政事)의 우열을 상세히 기록하여 올리면서, “이 28인은 어느 누구도 시급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누구를 먼저 하고 누구를 나중에

하는 것은 오직 성상께서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으니, 신이 감히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라고 했다. 대정(大政: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과하여 승진시키고 좌천시키는 都目政事)을 할 때가 되자 임금의 특별히 정관(政官: 전관(銓官). 文武官의 전형을 맡아보던 吏曹과 兵曹의 관원)에게 효유(曉諭)하여 공이 작성해 올린 이들 중에서 8인을 대통하게 했으며, 수년 사이에 모두 시행되었으니, 어진 신하가 어진 임금을 만남이 이와 같았다.

4월 초9일, 진주(晉州) 임소에서 진주공의 상(喪)을 당했다. 5월에 충주(忠州)에 옮겨 장사 지냈다. 이때 공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대유사(大酉舍: 규장각의 사무를 관장하는 摺文院의 부속건물) (內閣의 後堂 - 원주)에서 숙직을 하면서 임금이 다른 사람과 주고받았[廢和] 시축(詩軸: 시 두루마리)을 정리하고 있었다. 부친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운봉현(雲峰縣)에 이르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한 달 만에 충주로 영구(靈柩)를 모시고 왔고, 장사를 지낸 뒤 마현(馬峴)으로 돌아가 곡했다. 이때 임금이 자주 연신(筵臣)들에게 공의 근황과 귀장(歸葬: 시신을 고향으로 가져와 장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물었다. 광주(廣州)에 여막(廬幕)을 짓고 거처했다.

겨울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 수원성(水原城-화성)의 규제를 지어 올렸다. 임금이 이르기를 “기유년(1789, 정조 13), 겨울 배다리를 놓는 역사(役事)에 아무개가 그 규제를 만들어 공을 이루었으니, 그를 불러 집에서 성(城)의 규제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라고 했다. 공이 윤경(尹敬, 1567~1664)의 <보약(堡約)>과 류성룡(柳成龍, 1542~ 1607, 호: 西厓)의 <성설(城說)>에서 좋은 제도만을 취하여, 초루(譙樓)·적대(敵臺)·현안(懸巖)·오성지(五星池) 등의 여러 법도를 조목조목 나누어 정리해 바쳤다. 임금이 또 《도서집성(圖書集成)》과 《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인중(引重)과 기중(起重)의 법을 강하라고 하여, 공이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바쳤다. 도르래(滑車)와 일레(鼓輪)는 작은 힘으로 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었다. 성 쌓는 일이 끝나자, 임금이 “다행히 기중가(起重架)를 이용하여 경비 4만 폐미가 절약되었다.”라고 했다.

<기중도설(起重圖說)>에서 말했다. “성(城)은 돌을 가지고 쌓아야 하니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돌뿐이다. 그런데 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데 힘과 재정을 모두 소모하게 된다. 이는 무거운 떨어지려는 성돌을 가진 돌을 억지로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기 때문이다. 옛날 주(周)나라가 번성할 때 무왕(武王)이 구정(九鼎)을 낙읍(雒邑: 지금의 중국 허난성(河南省) 낙양(洛陽) 서쪽 지역)에 옮겼고, 선왕(宣王)이 석고(石鼓)를 봉상(鳳翔: 지금의 중국 섬서성(陝西省) 위수(渭水) 유역에 있는 도시(都市)에 세웠는데, 이 두 물건은 비할 데 없이 크고 무거웠다. 저 두 임금이 어질고 지혜로웠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어깨에 땀을 흘리고 다리를 부러지게 하며, 구부(九府)의 재물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겠는가. 《예기(禮記)》에 ‘무거운 술을 끄는데 그 힘을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옛날의 성인(聖人)은 올빼미 꼬리를 보고 배를 만들었으며, 가을날 마른 쭉대가 굴러다니고 북두(北斗) 자루 끝이 건성(建星)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수레를 만들었으니, 이는 반드시 도구(器具)를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세에 은택을 미치고자 함이었을 터인데 전하는 바가 없으니 애석하다. 응소(應劭, 153~196 사이 추정)의 말에 ‘태산(泰山)에 무제(武帝) 때의 돌이 있는데 다섯 대의 수레로도 실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집을 지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서경(西京) 이후로는 이미 어쩔 수가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지금 그 남겨진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르래뿐이다. 뚝은 무겁고 뚝대는 높으니 몇 명의 장정들이 뚝을 일으켜 세우는데, 장대 끝에 달린 도르래의 회전하면서 번갈아 주는 힘이 없다면, 어찌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옛사람이 남겨준 뜻을 이어받고 새로운 제도를 참고하여 기중소가(起重小架)를 만들어 화성의 성 쌓는 일에 쓰게 하니, 이는 천 개의 술에 한 덩이 고기와 같고 아홉 마리 표범에 한 반점과 같이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기계가 신비스럽게도 일을 하는 데 빠른 진척을 보일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의심의 한. 성문 양쪽 곁에 쌓는 돌(속칭 현단석(縣端石)이라 한다. - 원주)과 같은 것은 그 한 개의 무게가 수만 근이나 되어 천 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백마리의 소로도 잡아당길 수 없는 것인데, 단 두 사람이 말뚝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번거롭게 ‘영차, 영차’하고 애를 쓰지 않고도 깃털 하나를 들어올리듯 공중에 들어올릴 수 있어서, 일꾼들은 숨차지 않고 국가의 재정도 허비되지 않을 것이니,

그 이로움이 또한 크고 많지 않겠는가. 만약 축적된 지식을 감추지 않고 점차 공력을 들여 등근 바퀴와 나선형 바퀴를 만들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게 한다면 어린애의 한 팔의 힘으로도 수만 근이나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니, 절대로 평범한 사고방식으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공사가 작고 물건도 가벼운 데는 무엇을 쓰겠는가? 다만 간단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하나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가(架: 나무로 만든 사각형 틀)이고, 두 번째는 횡량(橫梁: 가로대)이고, 세 번째는 활차(滑車: 도르래)이고, 네 번째는 거(筥: 기둥대)이다. 거(筥)에는 고륜(數輪: 일레)과 녹로(轉軸)를 부착해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중총설(起重總說)〉에 말했다. “활자를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것에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 인력을 더는 것이 첫째고, 무거운 물건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다는 것이 둘째다. 인력을 더는 점에 대해서 논해보자.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려면 반드시 힘과 무게가 서로 같아야 비로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령 1백 근의 무게라면 반드시 1백 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방법은 단지 도르래 한 대만을 사용하는 것이니, 50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으로 1백 근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절반의 힘으로 전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두 대의 활차를 사용한다면 25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으로 1백 근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힘으로 전체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것이니, 만일 활차가 세 대나 네 대일 경우에 그 힘을 점점 더해주는 것이 모두 이 예(例)와 같은 것이다. 새로운 도르래를 더 설치할 때마다 감절의 힘이 더 나게 되니, 그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이제 위아래 여덟 개의 바퀴에서 얻어지는 감절의 힘이 25배나 되니, 이는 굉장한 것이다. 또 무거운 물건이 무너지고 떨어지는 위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논해보자. 대개 물건의 무게는 같지 않지만 밧줄의 굵기는 한계가 있으니, 일정한 밧줄로 일정하지 않은 물건을 다룬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없다. 자칫 잘못하여 손에서 놓치게 되면 무거운 물건이 반드시 무너지고 떨어져 다치게 마련이다. 이제 위아래 여덟 개의 바퀴를 사용하는 방법을 쓴다면, 한 개의 밧줄이 여러 번 감겼으나 그 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닥의 밧줄로 두 가닥 밧줄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여덟 겹의 힘이면 수만 근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도 오히려 힘이 남게 되니, 어찌 무너지고 떨어질 리가 있겠는가. 활차를 사용하여 매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녹로(轉軸)를 사용하면 그 힘을 감절로 낼 수 있다. 가령 이곳에 바퀴가 네 개씩 달린 활차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40근의 힘으로 1천 근이나 되는 무게를 움직일 수 있다. 만약 여기다가 또 녹로를 더 설치하는데, 녹로 손잡이의 굵기를 녹로 기둥 직경의 10분의 1의 비례로 만든다면, 40근의 힘으로 2만 5천 근의 무게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십자(十字) 모양의 막대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막대기의 굵기를 녹로 기둥 직경에 대해 이와 같은 비율로 해야 한다. - 원주). 그러므로 녹로가 활차와 서로 힘이 되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논한바 힘을 배가시키는 비례(比例)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의 전문적인 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상의 방법은 기중기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 인력(人力)을 감소시키는 것은 또한 많다. 만약 크고 작은 바퀴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천하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이란 없다. 더구나 나선형(螺旋型)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밀어주는 방법일 경우에는 어린애의 한 팔의 힘으로도 수만 근의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을 쌓는 데 사용되는 석재(石材)는 그다지 크거나 무거운 것들이 아니니, 닭을 잡는 데 굳이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다.”

〈성설(城說)〉에 간략히 말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화성에 성을 쌓는 역사(役事)는 비용은 많이 들면서 일은 번잡하고, 시기는 어려운 데인데 일은 크게 벌려놓았으므로 성상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나 조정의 의론은 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만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신이 삼가 전에 들은 것을 간추려 외람되나마 어리석은 견해를 올립니다. 첫째는 분수(分數)요, 둘째는 재료(材料)요, 셋째는 호참(壕塹)이요, 넷째는 축기(築基)요, 다섯째는 벌석(伐石)이요, 여섯째는 치도(治道)요, 일곱째는 조거(造車)요, 여덟째는 성제(城制)입니다.”

성제에는 웅성(甕城)·포루(砲樓)·적루(敵樓)·적대(敵臺)·포루(鋪樓)·노대(弩臺)·각성(角城)·현안(懸眼)·누조(漏槽) 등의 도

설(圖說)이 있고, 거제(車制)에는 유행거(游衡車)의 도설(圖說)이 있다.

1793년(正祖 17, 癸丑), 32세 4월에 소상(小祥)을 지내고 연복(練服)으로 돌아왔다.

어름에 화성 유수(華城留守)로 있던 채제공이 들어와 영의정이 되었다. 상소하여 다시 임오년(1762, 영조 38)에 장헌세자를 헐뜯어 고해바친 이들에 대하여 논했다. 김종수(金鐘秀, 1728~1799, 호: 夢梧)가 말하기를 “임오년 사건은 연명으로 상소(劄)를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 자는 역적이다.”라며 극렬하게 공박했다. 임금이 영조(英祖, 재위 1724.8~1776.3)의 <금등지사(金藤之詞: 영조가 사도세자 사건에 관해 정조에게 물려준 글로, 卍나라 武王이 병이나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어린 成王과 그 삼촌인 周公과의 관계 등을 문자로 남겨 금계 속에 감추어두었다는 내용의 《書經》의 편명)를 내보이며 장헌세자의 뛰어난 효성을 밝히니, 그 일이 무마되었다. 이때 홍인호가 한광부(韓光傅, 1723~?)에 대항하여 “채제공이 상소한 말 가운데 망말이 많다.”라고 공박하니, 친구와 관료와 유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홍인호를 공격했다. 이것이 이른바 갑인년(1794, 정조 18)의 사건이다. 홍인호는 공이 주동이 되어 의론했다고 의심하여 마침내 사이가 멀어졌으나,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

윤6월 초2일, 곡산 부사(谷山府使)에 제수되었다. 임금이 “구설(口舌) 때문에 두려우니 물러가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마침 곡산에 빈자리가 있어 어필(御筆)로 공의 이름을 추가하여 적고 낙점(落點)했다. 아직 인사를 하는 날 임금이 친히 유시(諭示)하기를 “지난번 상소문은 문사(文詞)를 잘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心事)도 빛나고 밝으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한번 승진시켜 쓰려고 했었는데 의론이 들끓으니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한두 해 쯤 늦어진다 하고 해서 해로울 것은 없으니, 떠나거라. 장차 부르리니,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먼젓번 사또는 치적(治績)이 없었으니, 잘 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부임한 뒤 이계심(李啓心, ?~?→이계심사건)의 결박을 풀어주고, 고마고(雇馬庫)의 초과지출액(加下錢)을 조사하고, 벌꿀에 지나치게 부세(賦稅)하는 것을 바로잡고, 현장조사(檢地法)를 행하고, 살인한 도적을 엄습해 잡고, 겸제원(兼濟院→제겸제원절목후)을 세워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의 거처를 편안하게 해주고, 정당(政堂)을 세우고, 여덟 가지 규정을 세웠다. 이계심이라는 자는 곡산의 백성이다. 먼젓번 사또가 다스릴 때에 아전(衙前)이 농간을 부려 포포보(砲保布: 砲軍에 딸린 保人이 내는 軍布) 40자의 대금으로 돈 900냥을 대신 거두었으므로(본래는 200냥을 거두어야 마땅하다. - 원주) 백성의 원성이 시끄럽게 일어났다. 이때 이계심이 우두머리가 되어 천여 인을 모아 가지고 관(官)에 들어와 호소했는데 말이 매우 공손하지 못했다. 관에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자 하니, 천여 명이 한꺼번에 무릎을 건어붙이고 이계심을 둘러싸 대신 고문받기를 청하여 끝내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 아전과 관노(官奴)들이 각자 곤장을 들고 뜰에 모여 있던 백성을 마구 치니 백성이 모두 흩어졌다. 이계심도 탈출하여 도망가 숨었는데,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오영(五營)에 명을 내려 엄탐해 잡게 했으나 끝내 잡지 못했다. 그 말이 경성(京城)에 와전되어 “곡산의 백성이 들것에다 부사를 담아 객사(客舍) 앞에 버렸다.”라고 했다. 바야흐로 공이 두루 하직 인사를 하러 다닐 때, 대신 김이소(金履素, 1735~1798, 호: 庸菴) 이하 여러 공들이 모두 주동자 몇 놈을 죽이라 권하고 채제공은 더욱 기강(紀綱)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곡산 땅에 들어서니 어떤 백성이 호소하는 글을 가지고 길을 막는 자가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가 바로 이계심이었다. 곧바로 이계심으로 하여금 뒤따라오도록 했더니, 아전이 아뢰기를, “이계심은 오영에서 체포령이 내린 죄인입니다. 법에 따라 붉은 포승줄로 결박을 하고 칼(劊)을 씌워 뒤따르게 함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라고 했으나 공이 물리쳤다. 관청에 오른 뒤에 이계심을 불러 앞에 나오라 하여 이르기를,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뺐으니, 천금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라고 하고 드디어 불문에 붙였다. 이에 백성들의 원통함이 퍼지고 여론이 화락해졌다.

당시 고마고에 초과지출액이 700여 냥이 있어서, 지방 관원으로 하여금 민간에 영(營)을 전하여 더 징수하게 했다. 공이 지나치게 징수하지는 않는지 의심하여 영을 내려 잠시 늦추도록 했다. 며칠 뒤 수안군(遂安郡: 황해도(黃海道) 동북부

(東北部)의 군)에서 살인 사건에 대해 같이 조사하자고 요청했다. 공이 이질(痲疾)을 앓고 있어서 임시로 문서로써 감영에 보고했는데, 그다음 날 고마고에서 하기전(下記錢: 비용에 대한 지급액) 24냥을 이방(吏房) 앞으로 송부해왔다. 공이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대체로 이웃 고을과 함께 죄를 다스린다는 문서가 감영에 보고되면 그 예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했다. 공이 이르기를 “문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바치게 하는 것은 그릇된 예이다. 한 달에 세 번씩 심문을 한다면 1년이면 900냥이나 될 것이니, 이미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된다.”라고 하고 마침내 이에 없애버리니, 곡산의 백성이 첫 정사를 바라보고 각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곡산에 보민고(補民庫: 영조 29년(1753)에 설치한 것으로 지방민의 營農, 喪葬, 進貢의 기금을 관리하던 곳)가 있었는데, 해마다 가하전이 반드시 천 꿩미도 더 되었다. 관에서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대체로 감영에서 꿀에 부과하는 세금 때문이라고 했다. 감사가 봄가을로 으레 공문을 보내 백밀(白蜜) 3두(斗)와 황밀(黃蜜) 1섬을 징수해 갔는데, 또한 감영에 딸린 아전들이 몇대로 백밀 3두를 6두로 받고 황밀 1섬을 백밀 2섬으로 받아가면서 감영에서 지급되는 액수는 단지 공문에 있는 숫자대로 했다. 또 봄가을로 으레 공문을 띄워 징수해 가는 이외에 별도로 공문을 띄워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징수해 갔다. 그러니 보민고에서 더 거두어들이는 것은 오직 이 때문이었다. 공이 아전과 백성에게 이르기를 “감영에서 하나를 구하는데 수령이 둘을 바치고, 감영에서 누른 것을 구하는데 수령이 흰 것을 바치는 것은 아첨이다. 그 숫자와 색깔을 공문대로만 해서 바치라.”라고 하니 아전이 아뢰기를 “감영에 딸린 아전들은 승냥이나 이리와 같은 자들이므로 일에 반드시 말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돈을 허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백성에게 징수를 할 것이니, 그전대로 경비를 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공이 “일단 가보라.”라고 했다. 아전들이 감영에 이르니 과연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이윽고 비장(裨將)이 아뢰니 감사가 이르기를 “저 사람은 그 고을의 백성을 등에 지고 있고 나는 내 입만 가 지고 있으니, 다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받아들일도록 명했다. 곡산 부사로 있는 3년 동안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예를 삼으니, 보민고의 남은 돈이 해마다 천(千)으로 계산되어 정당(政堂)을 세우고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의 접대비에 충당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곡산의 백성 김오선(金五先, ?~?)이란 자가 영풍(永豐: 함경남도 안변(安邊) 지역) 시장으로 소를 사러 갔다가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이들이 뒤밧아 가다가 문암동(門巖洞) 입구에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목과 가슴과 배에 칼자국이 네 군데나 있었다. 문암은 이화동(梨花洞)(김오선이 살던 마을이다. - 원주)과의 거리가 불과 10리였다. 처자식과 마을 사람들이 도적에게 살해된 줄 알면서도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겨 관에 고(告)하지 않고 곧바로 시체를 매장해버렸다. 오랜 뒤에야 고하는 자가 있었다. 공이 그곳에 가지 아니하면 그 실상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말을 재촉하여 가면서 이르기를 “옛날에 사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법(檢地法)이 있었으니, 내가 현장을 조사해야겠다.”라고 했다. 곧 그곳에 이르러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오다가 이화동에 들러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리저리 캐물었으나, 끝내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단서를 얻어 곧바로 토졸(土卒) 수십 명을 풀어 영풍촌을 급습해 도적의 얼굴을 이는 자를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계략을 일러 주고 노인령(老人嶺) 아래에 가서 엄습하여 체포하게 했더니, 과연 김오선을 죽이고 소를 빼앗은 자는 김대득(金大得, ?~?)이었다. 드디어 곡산부의 문 앞 시가지에서 곤장을 쳐 죽이니, 이에 도적의 무리가 이 소문을 듣고 흩어져 달아났다.

읍에 귀양살이하는 사람 10명이 있었는데, 고을의 400호(戶)에서 돌아가며 그들을 먹여주도록 하니, 천경법(錢更法: 중국 고대에 교대하여 국경 경비로 나가게 한 법)과 같아서 그 고통이 걸식하는 것보다 더 심했다. 유배 온 사람들이 날마다 울부짖으며 죽기를 원하고, 그들을 먹이는 사람들도 또한 매우 괴롭게 여겼다. 공이 곧 화전세(火田稅) 100여 결(結)을 덜어서 겸濟院(兼濟院)을 세워 기와집과 돛자리에서 살게 하고 끼니를 항상 마련해주시니,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은혜에 감격하고 백성도 편하게 여겼다.

부(府)의 청사가 오래되어 퇴색하고 허물어지니, 아전과 백성이 정당(政堂) 세우기를 청했다. 공이 허락하지 않고, 몰래

설계도를 그려 그 칸수를 계산해두었다. 대체로 대들보·기둥·서까래·문지도라·문설주 등의 재목을 조목조목 열거해놓고, 소나무·뿔나무 등 여러 종류의 목재도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여 실제로 필요한 숫자를 산정했다. 분배를 고르게 한 뒤 아전과 장교를 파견하여 하루 안에 재목을 배도록 했다. 다 배었다고 보고하니, 곧 유행거(遊衡車: 수레 가운데 무게중심이 잡히도록 고안된 운반용 이륜 수레)·삼륜거(三輪車) 등을 만들었다. 마침 비가 온 뒤에다 매서운 추위로 개울과 땅이 모두 얼어붙어 미끄러워서 쉽게 운반하여 읍으로 가져왔다. 이에 공이 아전과 장교들과 노예들을 불러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이 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느냐? 나는 내년에 다시 어느 곳에 가 있을지 알지 못하니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백성이 비록 간혹 뜰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비 내릴 때 설 수 없는 곳이며, 혹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자는 종신토록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또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이 집의 주인은 결국 너희들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공장(工匠)의 힘드는 일을 돕는 아전과 장교 이하가 서로 다투어 힘을 기울이니, 백성의 힘을 적게 쓰게 되었다.

여덟 가지 규정의 첫째는 호적(戶籍)의 규정이다. 공이 고을에 이르러 상벌을 미답게 한 뒤에 이르기를 “백성은 자녀와 같고 수령은 부모와 같은 것이다. 자녀의 빈부(貧富)와 허실(虛實)을 부모 된 자로서 살피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오늘날 수령 된 자들이 으레 가좌책자(家坐冊子: 주민의 집의 위치·가족관계·생활정도 등을 기록한 책)를 만들지만, 영성하기만 하고 정확하지 못하며 번잡하기만 하고 요점이 적으니, 단지 백성을 소란하게만 할 뿐 실제로 쓸모가 없다.”라 했다. 이에 향관(鄕官)과 이교(吏校) 중에서 가장 노련하다고 일컬어지는 자를 엄선하여 마을에 사는 모든 백성의 전택(田宅)·재산·인구·우마(牛馬)의 실제 숫자 및 신분의 높고 낮음, 양역(良役)의 있고 없음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열거하여 가져오게 했고, 관에서 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마을에서 얻어먹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떠날 때에 경계하기를 “깊은 산골짜기와 외딴 마을 작은 집은 관에서 이르지 못하는 곳이니, 조사하여 정험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송사(訟事)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무심한 곳에서 나오는 법이니, 너희들은 삼가라.”라고 거듭 거듭 훈시했다. 그들이 돌아오자 총괄해서 종횡표(縱橫表)를 만들었는데, 12권에 불과했다. 방(坊)과 리(里)를 구별해놓으니, 찾아보기에 매우 편리했다. 이에 모든 백성의 빈부·허실·강약·고락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여 감추고 숨기는 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분배해서 호적(戶籍)을 만들고 증가한 호(戶)나 감소한 호를 수령이 직접 작성하여 간사한 아전들이 손을 쓸 곳이 없게 되었으며, 일을 시키고 임무를 맡기는 데 체통이 서지 않는 것이 없었다.···다섯째는 관고(官庫)의 규정이다. 곡산에 보민고·고마고·보폐고(補弊庫)·군수고(軍需庫)·칙수고(勅需庫)·군기고(軍器庫)·양현고(養賢庫) 등이 있었는데, 모두 그 절목(節目)을 바꾸었다. 대체로 매년 마땅히 써야 할 물건은 절목에 따라 지출하고 장부에는 기록하지 못하게 했으며, 오직 뜻밖 에 별도로 지출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장부에 정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니 아전들이 농간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연말에는 각 창고에 남은 재정이 5, 6백 폐미나 되었으며, 적은 곳이라도 수십 폐미는 되었다. 이것을 칙수로 돌려 ‘에칙고(艾勅庫)라 이름했다(즉, 7년 병에 3년 묵은 쌀을 쓴다는 뜻이다. - 원주).···여덟째는 과사(課士)의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는 도무지 일정한 정원이 없었으며, 아래로 군현에 이르러서도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다. 공이 학궁(學宮)에 명을 내려 유생 100여 인을 천거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시(詩)와 부(賦)로 시험하여 능력이 없는 자는 도태시키고 80인을 선발하여 ‘사림생(詞林生)이라 이름했다. 대체로 가과(家課)나 정과(庭課)를 모두 오직 이 80인에게만 응시하게 했으며, 죽어서 결원이 생기면 이러한 예에 따라 보충해 넣었다(武士도 또한 이러한 예에 따라 권무청(勸武廳: 숙종 때, 양반자제들에게 무예를 익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에서 주관했다. - 원주). 겨울에 감사의 비밀 공문이 왔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토산 현감(兪山縣監)이 서면으로 보고하기를 ‘본현의 토포(討捕) 장교가 금천(金川) 시가지에서 한 도적을 잡아 결박하여 몇 리를 가자, 흰 말을 탄 도적의 대장이 길을 막고 도적을 탈취하여 포박을 풀어주고 도리어 장교를 결박하여 앞세우고 몰았습니다. 산을 돌고 물을 건너 매우 깊숙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공청(公廳)이 있었으며 당상(堂上)에는 여러 두령들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교를 끌어들여 하나하나 죄를 손꼽은 다음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새벽에 5, 60명의 도적 무리가 관아의 문을 침범했습니다. 제가 호각을 불며 군사를 모으고 아

전과 관노들로 하여금 집전하게 했더니 모두 흠어져 달아났습니다.'라고 했소. 곡산 부시는 예에 따라 감영(監營)의 장수를 겸하게 되어 있소. 관하의 여러 읍들에서 도적의 변란이 이와 같으니 매우 편안하지 못하오. 곧바로 교졸(校卒) 수십 명을 발하고, 또 관하 여러 읍에 명을 내려 군사를 발하게 하여 도적의 무리들을 섬멸하도록 하시오...." 공이 다 본 뒤 아전과 장교들에게 퍼 보이니,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용맹한 자들을 엄선하여 부서별로 약속을 정하고 진취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자, 공이 "그만두라."라고 하고, 손수 아전 1명과 장교 1명을 뽑았다. 두 사람 모두 제 옷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약질이였다. 도적의 소굴에 가라고 명령하니,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공이 이르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도록 해라. 붉은 포승줄은 가져가지 말고 의관을 벗고 가서 내 뜻을 알아듣도록 얘기해 적장으로 하여금 오게 하여라."라고 했다. 모두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라고 하니, 공이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했다. 3일이 지나자 소리(小吏)와 소교(小校)가 적장(賊將) 10여 명을 데리고 왔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 모두 양민이었다. 죄를 씻어 돌려보내고, 도리어 토산(土山: 지금의 황해도 금천 지역)의 장교를 잡아다가 곤장을 쳐 다스렸다. 모두들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니, 공이 이르기를 "평온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는 법이다. 내가 이 때문에 이 일이 무고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 했다. 소리(小吏) 최태두(崔泰斗, ?~?)라는 자는 3년을 입역(入役)했는데, 저채(邸債: 경주인(京主人)에게 진 빚) 13만 냥을 지고 있었다. 이방(吏房)에게 캐물으니, 이방이 답하기를 "그의 부형과 종족으로 봉명방(鳳鳴坊)에 사는 자들이 수십 호인데 모두 부자들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이 무슨 말인가?"하고, 이방에게 곤장으로 다스리게 명을 내렸다. 그가 빚진 까닭을 조사해보니, 대체로 최태두가 해마다 군포(軍布)를 담당하는 아전이 되어 군전(軍錢)을 축내고 저채(邸債)를 끌어다 쓴 것이었다. 곧 최태두를 잡아다 조사해보니, 대체로 고을의 호걸들과 마조(馬槽: 마작의 원형)로 도박을 하여 진 빚이었다. 공이 이방에게 이르기를 "이 일을 알 만하구나. 태두가 어릴 적에 마조를 좋아하니, 그의 부형 종족들이 매를 치며 나무랐으므로 원한이 맺혔던 것이다. 태두가 맹세코 이 원한을 갚고자 하여 부(府)의 아전이 되기를 구했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받아들여 가만히 앉아서 재물을 누아채려고 했다. 바야흐로 그가 군전(軍錢)을 취해 마조를 할 때에도 너희들은 버젓이 알면서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의 종족들은 모두 부유한 백성입니다.'라고 했고, 상경(上京)하여서도 그를 경저리(京邸吏)의 집에 보내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종족이 모두 부자들입니다.'라고 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으므로, 오늘 또 관에 고향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말하니, 이는 간사한 자를 돕는 자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고을의 호걸들이 마조를 하여 얻은 돈의 실제 액수와 청례(廳例), 정례(情例)를 조사하고 가재(家財)를 조사하여 모두 10만 냥을 얻었다. 곧 경저리를 불러 앞으로 나오라 하여 "네가 빌려 준 본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니, "7만 냥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네가 바야흐로 돈을 빌려주려 할 때에 웅당 여러 아전들의 편지를 받아 보았을 터인데, '봉명방에 부유한 백성이 많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으니, 경저리가 "참으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했다. 공이 이르기를 "못 간악한 자들이 무리를 이루었는데, 너도 거기에 참여했으니 이자 6만 냥 중에서 받은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다. 봉명에 사는 여러 백성을 불러 최태두의 실정을 수소문해보니, 과연 대쪽을 합한 것같이 들어맞았다.

거울에 《마과회통(麻科會通)》이 완성되었다. 《마과회통》은 홍역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기록한 책이다. 당시 공의 여러 아들들이 연이어 홍역으로 요절을 했으므로 공이 처방을 수집하여 이 책을 완성했으니, 모두 12권이다.

1794년(正組 18, 甲寅), 33세 6월, 삼년상을 마쳤다.

7월 23일,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에 제수되었다.

8월 초10일, 비변사 낭청(備邊司郎廳)에 계하(啓下)되었다.

10월 27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제수되었다가 28일 홍문관 수찬(修撰)에 제수되었다. 이날 본관(本館)에서 숙직을 했는데, 밤 2경에 승정원의 하례(下禮)가 큰 소리로 홍문관 서리(胥吏)를 불러 "옥당(玉堂)에 숙직을 늦게 했으므로 정 아무개를 노량도 별장(露梁渡別將)으로 제수하니, 곧바로 사은(謝恩)하도록 하라."라는 하교(下敎)를 전했다. 공이 연영문

(延英門)에 이르러 숙배(肅拜)하고, 영춘軒(迎春軒) 밖에 이르러 투자례(投刺禮: 명함을 꺼내 보이고 면회를 요청하는 것)를 행했다(노랑도 별장은 으레 장용영(壯勇營)의 별야병장(別牙兵將)을 겸하기 때문이다. - 원주).

10월 29일 성정각(誠正閣)에 들어가 임금을 뵈고 경기 암행어사(暗行御史)의 명을 받았다. 11월 15일 복명(復命)했다. 전연천 현감(漣川縣監) 김양직(金養直, ?~?)과 전 삭녕 군수(朔寧郡守) 강명길(康命吉, 1737~1801)을 논죄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게 했다. 그 서계(書啓)는 대략 다음과 같다. “김양직은 5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마음씨가 밝지 못한데다가 술타령만 일삼고, 정사는 탐학한데다가 기생만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환곡(還穀) 3500석(石)의 모조(耗條: 환곡을 받아들이는 때 소모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더 받아들이는 모곡(耗穀)에 해당되는 몫)을 멋대로 처분하여 모두 사유(私用)으로 빼돌렸으며, 재결(災結: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로 면세받은 것) 51결(結)에 대한 실제의 혜택을 도둑질해 먹어 백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751석은 무슨 곡식인지 더 남겨두고서 모곡(耗穀)을 너무 과다하게 거두었으며, 미수(未收)분 2천 1백여 석을 허위로 올려 두고 무난하다고 속여서 보고했습니다. 직책을 팔아서 자신을 살찌우느라 역(役)을 무수히 면제시켜주었으며, 노비를 놓아주고 돈을 요구하는 등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악명이 끝이 없습니다.… 강명길은 늘그막에 탐욕이 끝이 없고, 야비하고 인색함이 매우 심한 자로서 백성의 소송과 관청의 일에는 머리를 저으며 관여하지 않고, 식비(食費)와 봉록을 후려쳐 차지하고 멋대로 거두어들였으며, 표절사(表節祠: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심대(沈垓, 1546~1592)·양지(梁志, ?~1592)·강수남(姜壽男, 1552~1592)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회감(會減: 회계상으로 감하는 것)해야 할 곡식을 고가(高價)로 부민(富民)에게서 강제 징수했습니다. 산화전(山火田)에 함부로 높은 세금을 매긴 법에 대해서는 모두들 흉년든 해보다 더 건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향임(鄕任)은 너물 바치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의 집 꾸러미는 그 지방의 나룻배로 실어 나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京畿暗行御史論守令臧否啓〉) 본래 김양직은 화성(華城)으로 현룡원(顯隆園)을 옮길 때 지사(地師)였고, 강명길은 자궁(慈宮: 임금의 어머니)의 의원(醫員)이었다. 모두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터라 계(啓)를 올릴 때, 당시의 의론이 그들을 죄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별단(別單)〉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금년 추수에서 네 고을 가운데 연천이 가장 흉년이 들었는데, 김양직이 탐학(貪食)한 정사를 한 뒤인지라 허다하게 남아 있는 해독이 오늘날까지 매우 극심합니다. 대체로 별환(別還: 주로 양반이 사사로이 환곡을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는 자들은 가난한 양반이거나 걸식하는 백성 할 것 없이 규정 이상으로 더 분급하기에 급한 자들인데, 소청(訴請)만 하면 곧 허락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 양반은 매질을 하며 독축해도 낼 것이 없고, 백성은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여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지적하여 받아낼 곳이 없게 되니 허위로 명목을 세워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이미 그러한 사실을 낱낱이 감영(監營)에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제사(題辭: 백성이나 하급관청에서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사(願書)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내리는 지시나 판결)는 내려오지 않고 허위로 올려 둔 문서만이 돌아왔으니, 신(新)·구(舊) 수령 모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던 훌륭한 법전(法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폐단을 그치게 할 가망은 없습니다. 독축이 날로 급해져서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가류곡(加留穀)을 공공연히 팔아먹은 뒤, 이것을 자기 멋대로 분배하여 강제로 채워 넣게 하는데, 유리(由吏: 지방 관아에 딸린 이방(吏房)의 아전)는 며 몇 섬, 창리(倉吏: 지방 관아의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는 가장 몇 섬을 내라고 하여 그 수량을 열 배 백배로 늘려 보고에 준(準)하게 한 뒤에야 그만두니, 가옥과 전답을 다 팔더라도 오히려 모자랄까 걱정입니다. 아전도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향임(鄕任)에 오르면 구족(九族)이 역(役)을 면제받기 때문에 향임을 팔기 시작한 이래로, 넉넉한 집안 부유한 백성은 유자(儒者)의 옷을 입고 군적(軍籍)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반면에 가난한 백성은 황구침정(黃口簽丁: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내게 했던 폐단)과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내게 했던 폐단)의 폐단이 온 고을에 더욱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곳이나 공통된 근심거리지만 큰 고을에서는 그런대로 변통을 할

수 있는 반면, 작은 고을에서는 더욱더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출도(出道)한 날 즉시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원문(完文: 판사(官司)에서 작성·발급하는 공증력(公證力) 있는 문서)을 작성해 내도록 하여 뇌물을 바치고 임명된 자는 모조리 임명장을 거두어 불에 태워버리고, 그 본인 및 친족을 막론하고 군정(軍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충당하도록 하여, 한편으로는 뇌물을 주고 군역(軍役)을 면하는 교활한 풍습을 징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구첩정이나 백골징포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곡(還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고을의 백성이 뜰에 가득히 모여 호소를 하고 길을 가로막고 간절히 말을 했지만, 신이 모두 돌아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관찰사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다시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김양직이 순전히 팔아먹은 것은 숫자를 계산하여 징수해내도록 하고, 그 외에 지목하여 징수해낼 곳이 있는 자는 금년 내로 절반 혹은 3분의 2를 내도록 연기해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조정의 덕스러운 뜻을 선포하게 하여 연천의 백성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마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정승 서용보(徐龍輔, 1757~1824, 자: 汝中)의 가인(家人)으로 마전(麻田: 현재의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사는 자가 있었는데, 향교의 터를 정승의 집에 바쳐 묘자리를 삼고자 하여 거짓으로 “터가 좋지 않다.”라고 하고, 고을의 선비들을 협박하여 학궁(學宮)을 옮기고 명륜당(明倫堂)을 헐어버렸다. 공이 시찰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체포해 징계했다.

정동준(鄭東浚, 1753~1795, 자: 士深)을 논핵하는 상소를 올리려 하다가, 임금의 엄한 교지로 인하여 사은숙배(謝恩肅拜)한 뒤 밤에 옥당(玉堂)에서 숙직하다가 이날 밤에 암행어사의 명을 받들었으므로 결국 상소를 올리지 못했다. 이때에 내각학사(內閣學士) 정동준이 병을 청탁하여 집에 있었다. 음(陰)으로 조정의 권세를 잡고 사방의 뇌물을 긁어모았으며, 귀하고 명망 있는 조정 대신들을 매일 밤 백화당(百花堂)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내외(內外)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눈꼴사납게 보고 있었다. 그 상소는 대략 다음과 같다. “내각을 설치한 것은 곧 전하께서 선인들의 이름을 계승하고 문치(文治)를 진작하여 백년대계의 기틀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으니, 신하 된 자로서 누군들 우러러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인재를 선발하여 임명하는 데 있어 혹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총애를 받아 분수에 지나침이 있게 되면,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이 짝트고 으스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신(閣臣) 아무개 같은 사람은 병을 핑계로 집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국사를 돌보는 노고를 바치지 않으니, 그 일을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의 집은 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호화로우니 걸가는 사람 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각신으로서 좋은 소식이 아닌 듯합니다.” 다음 해에 정동준이 과연 쫓겨나니, 사람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탄복했다.

12월 초 7일, 경모궁(景慕宮: 정조의 아버지인 장헌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기 전에 신위를 모시던 궁)에 존호(尊號)를 추존해 올릴 때 도감(都監: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기구)의 도청(都廳: 도감에 딸린 벼슬로 낭관(郎官)의 우두머리)에 개하(啓下)되었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연신(筵筵)에게 이르기를 “정 아무개는 본래 한림(翰林) 출신으로 응당 내각에 들어갔어야 할 터인데 불행히도 일이 어긋나 신해년(1791, 정조 15) 이래로 시일을 끌어오다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은 겨우 대교(待敎)·직각(直閣)으로 있으니 잘못된 일이다. 마땅히 바로 품계를 올려주어 만약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나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을 삼을 것 같으면, 내각의 제학(提學)으로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했다. 마침내 임금의 뜻이 대신에게 전해졌으므로 도청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해 을묘년(1795, 정조 15)은 장헌세자의 회갑이 되는 해였다. 임금이 다음 해 장헌세자에게 휘호(徽號: 왕의 존호(尊號) 위에 덧붙이는 찬미하는 글귀)를 올리고, 또 태비(太妃)와 태빈(太嬪)에게도 호(號)를 올리고자 하여 예조(禮曹)에 도감을 설치하여 체제공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공을 도청 낭청(都廳郞廳)으로 삼았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이 휘호 여덟자를 논의했는데 금등(金燈)에 담긴 세자의 뛰어난 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금등의 말은 “피 묻은 적삼이여, 피 묻은 적삼이여. 오동나무 지팡이여, 오동나무 지팡이여.[桐兮桐兮, 血衫血衫.]”이다. - 원주). 임금이 고치도록 의논하게 하고자 했

으나 내세울 명분이 없었으므로 은밀히 체제공과 이가환(李家煥, 1742~1801, 호: 貞軒)에게 자문했다. 이가환이 아뢰기를 “바친 8자 중에 ‘개운(開運)’이란 글자가 있으니, 이는 석진(石晉: 중국 5대 때 석경당(石敬瑁)이 후진(後晉)을 세웠으므로 후진을 석진이라고 함.)의 연호(年號)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의 크게 기뻐하여 드디어 존호를 고치도록 의논하라고 명했다. 이에 ‘장륜용범기명창휴(章倫隆範基命彰休)’라고 존호를 의논하여 올리니, ‘장륜용범(章倫隆範)’이란 바로 금등의 뜻이다. 대제학(大提學) 서유신(徐有臣, 1735~?, 자: 舜五)이 옥책문(玉冊文: 제왕(帝王)이나 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옥책(玉冊)에 새긴 송덕문(頌德文)을 지으면서 또 금등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응교(應敎) 한광식(韓光植, 1729~?, 자: 一之)이 소(疏)를 올려 소략하고 잘못된 점을 논했다. 임금이 한광식의 소를 도감의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 보내 옥책문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두 구절만 바꾸어도 되는지를 의논하게 했다. 이때 도감 제조(都監提調) 민중현(閔鍾顯, 1735~1798, 시호: 文穆)·심이지(沈爾之, 1720~1780, 자: 養吾)·이득신(李得臣, 1742~1802, 자: 聖良)·이가환 등이 모두 깊이 신음만 하고 의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이 말하기를 “대체로 표(表)·전(箋)·조(詔)·고(誥)와 같은 유형(類型)은 자구에 결합이 있을 경우 삭제하거나 윤색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옥책에 금등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장륜(章倫)’ 두 글자는 곧 이 한 편의宗旨(宗旨)인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놓은 곳이 없으니, 과문(科文)에 비유해보자면 포서과제(舖序破題: 시제(試題)의 뜻을 밝히는 도입부)가 완전히 시제(試題)의 뜻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전편(全篇)을 다시 짓지 않는다면 아마도 올바른 뜻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여, 마침내 다시 짓기를 청했다. 임금이 이병모(李秉模, 1742~1806, 자: 彝則)에게 명하여 다시 지어 올리게 했다.

옥책(玉冊)과 금인(金印: 추상(追)하는 존호(尊號)를 새긴 도장)이 완성된 뒤 봉(封)하여 올리려고 하는데, 서리(胥吏)가 묻기를 “태빈궁(太嬪宮: 정조의 어머니인 홍씨(洪氏))의 옥책과 금인에도 ‘신근봉(臣謹封)’이라고 써야 합니까?”라고 하여, 체제공이 의궤(儀軌)를 두루 찾아보게 했으나 모두 전거(典據)를 찾아내지 못하여 한나절이 되도록 허둥대며 어찌 할 바를 몰랐었다. 이에 공이 나아가서 “‘신근봉(臣謹封)’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체제공이 눈을 부릅뜨고 망언을 하지 말라 했으나 민중현과 심이지는 “왜 그런가?” 하고 물었다. 공이 말하기를 “지금 옥책과 보금인(寶金印) 그리고 기타 물품을 도감의 여러 신하들이 그 존호를 옥에다 새겨 태비(太妃)와 태빈에게 올린다면 조정(朝廷)에서 태빈에 대해 ‘신(臣)’이라고 칭(稱)하지 않으니, 지금 또한 ‘산’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하들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옥책 등 여러 물품을 만들어 대전(大殿)에 올리는 것이고, 대전에서 정성과 효도로써 태비와 태빈께 올리는 것이니, 대전에 올리는 물품에 ‘산’ 자(字)를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하여 ‘산’ 자를 써서 올렸다.

12월 13일, 홍문관 부교리(副校理)에 제수되었다.

1795년(正祖 19, 乙卯), 34세 정월 17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에 제수되었다.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이어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었다.

2월 17일,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임금이 태빈(太嬪)을 모시고 두 군주(郡主: 왕세자의 적녀(嫡女)에게 내리는 외명부(外命婦) 정2품의 위호(位號). 여기의 두 군주는 장헌세자의 딸인 청연(淸衍)과 청선군주(淸璿郡主)를 데리고 화성으로 행차할 때 특별히 병조 참의에 제수하여 시위(侍衛)로서 따르게 했다. 임금이 현릉원에 배알(拜謁)한 뒤, 화성으로 돌아와 봉수당(奉壽堂)에서 잔치를 베풀고, 어제(御製)를 나누어주며 호종했던 신하들에게 그 운(韻)에 맞추어 화답하는 시(詩)를 짓게 했다. 이는 아마도 장헌세자와 자궁(慈宮)이 모두 이 해에 회갑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다. 공이 화답한 시는 다음과 같다.

장락궁 높은 곳에 새 잔치 베푸니 長樂宮高設饌新

수성이 이르러 신명스런 봄을 축복하네 壽星臨處祝靈春

하늘과 함께 천년만년 길이길이 사시라니與天無極期千萬

아침 해 돋는 듯 비로소 육순이네.如日方昇始六旬

눈에 가득 벽도화는 모두가 서기이고滿眼碧桃渾瑞氣

붉은 꽃 꽃은 이들 모두가 봉인이네.挿頭紅萼總封人

우리 임금 효성은 순효로 받드리라.吾王錫類推純孝

아침까지 늙은이들 백 잔 술에 취하리.黃耇明朝醉百巡

(奉和聖製奉壽進饌)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꼭 같지는 않다.)

또 장대(將臺)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낙남현(洛南軒)에서 양로(養老)잔치를 베풀었는데, 공이 모두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2월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행차하여 친히 강신례(降神禮)를 행했다. 그 전날 저녁 병조에서 숙직을 할 때에 봄바람이 부채질하듯 싱그럽게 불어왔으므로 ‘선화(扇和)’ 두 글자를 써서 군호(軍號: 군중에서 쓰는 암호)로 올렸더니, 조금 뒤 “허다한 문자가 있는데 왜 하필 ‘선화’라고 하는가. 속히 다시 고쳐서 올리라.”라는 엄한 교지가 내려와 고치고 또 고치기를 아흔아홉 번이나 한 뒤 ‘만세(萬歲)’라는 두 글자를 써서 올려 비로소 재가를 받았다. 군호가 발표된 뒤, 또 ‘폐하께서는 만세의 수(壽)를 누리고 신은 이천석(二千石)이 되었습니다.’라는 어제(御題)가 내려와, 새벽 문 열 때까지 칠언배율(七言排律) 100운(韻)을 지어 올리라고 했다. 공이 왕길(王吉)의 <사오사(射烏詞)> 100운을 써서 지어 올렸다(<騎省應教賦得王吉射烏詞一百韻> 참조). 임금이 비답(批答)하기를 “지난 밤 군호의 일로 인하여 시험 삼아 100운의 배율을 지어 바치라고 했는데, 시간은 2경(更)이 지난 뒤였고 글제도 또한 뜻이 애매했으며, 승지가 명(命)을 전하러 갈 때도 ‘이 어제(御題)에서 애기하고 있는 인물은 전한(前漢) 때의 사람이고 그 일은 활 쏘는 데 관계된 일이다. 널리 두루 조사해보고 새벽 문 열 때까지 시(詩)를 지어 바치라.’라고만 기록하여 보냈는데, 문을 열자 시(詩)가 이미 완성이 되었도다. 시편은 원만하고 구절구절 잘 다듬어져 있으며 왕왕 놀랄 만한 어구(語句)가 많으니, 이서구(李書九, 1754~1825)와 한만유(韓晩裕, 1746~? 자: 汝成)의 <장안시상주가면(長安市上酒家眠)>이라는 100구(句)의 고시(古詩)와 같이 한계가 나그러운 점은 차치하더라도, 황기천(黃基天, 1760~1821, 자: 義圃, 호: 菱山)이 1경(更) 만에 지은 100구의 부(賦)가 아직도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것과 같고, 윤행임(尹行旹, 1762~1801, 자: 聖甫, 호: 方是閑齋·石齋)이 100구의 표(表)와 3도(道)의 책(策)을 지을 때 삼복더위 한 밤중 2경만에 한번 붓을 휘둘러 완성하니 이문원(摛文院: 원래는 어진(御眞)·어필(御筆) 등을 보관하는 관청이었는데, 정조 5년에 규장각 관원들의 숙소가 됨으로써 규장각의 별칭이 되었다.)이 크게 빛을 발했다고는 하는 것에는 비길 수 있리라. 오늘 이 사람의 글 짓는 솜씨가 신속하기는 시부(詩賦)를 짓는 것보다 빠른 듯하고, 짓는 과정에 있어서도 표책(表策)을 짓는 것보다 못하지 않으니, 이만큼 실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보기 드문 사람이라 할 만하다.” 했다. 반열(班列)에 있는 여러 문신들이 평을 하여 올리니, 큰 사슴가죽 한 장을 내려주었다. 이에 규장각 제학(提學) 심환지(沈煥之, 1730~1802)가 평하기를 “문장이 활달하기는 구름이 퍼지고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짜임새가 정교하기는 옥을 다듬고 비단을 짜놓은 것과 같으니,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이른바 문원(文苑)의 기재(奇才)라 하겠다.”라고 했고, 예문관 제학(提學) 이병정(李秉鼎, 1742~1804)은 평하기를 “반밤 사이에 100구의 배율을 지었는데도 생각을 굴린 것은 맛이 있고 운을 맞춘 것도 구차하지 않으니, 쉽지 않은 일이다.” 했고, 홍문관 제학(提學) 민종현(閔鐘顯, 1735~1798)이 평하기를 “문장의 화려함은 넘쳐흐르고 음운(音韻)은 쟁쟁하다. 온종일 애써 읊조리며 지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佳作(佳作)이라고 할 만한데 하물며 몇 시간 만에 지은 것임에랴.” 했다. 이때 임금이 공에게 관각(館閣)의 일을 맡기려고 하여 일부러 먼저 그렇게 하여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며칠 뒤에 감시(監試)·회시(會試)에서 1소(所)의 고관(考官)으로 교지를 받들었다. 이때 남인(南人)으로 입격한 자가 50인이나 되었는데, 모두 2소에서 뽑힌 사람들이었고 1소에서 뽑힌 사람은 겨우 세 사람뿐이었다. 1소의 시관(試官)이 사정(私情)을 썼다고 오인(誤認)되어 그 말이 임금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공의 백운시(百韻詩)를 지목하여 임금

이 평을 한 뒤로, 사신(詞臣)들과 각신(閣臣)들이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멀지 않아 마땅히 내각(內閣)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과장(科場)의 말을 선동하여 모함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 며칠 뒤 군복(軍服)의 일로써 특별히 본직인 병조 참의에서 체차(遞差)되었다.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을 썼다는 말이 비화되었기 때문이다.

3월 초3일, 의궤청(儀軌廳: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후세에 참고하도록 그 일의 시종(始終)과 본말(本末)을 기록하는 관청) 찬집문신(纂輯文臣)으로 계하(啓下)되었다.

규영부(奎瀛府) 교서승(校書承)으로 부임할 것을 명하고, “남이 하나를 할 때 그대는 열을 해야 비로소 속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엄한 교지를 내렸다.

《정리통고(整理通攷):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攷)》로 수원성(水原城)의 규모 및 제도를 적은 책》을 찬술하도록 명했다. 화성(華城)에 원소(園所: 장헌세자의 능인 현릉원(顯隆園)의 터를 말함)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일에서부터 <배봉진지(拜峯鎭志)를 쓰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공이 맡아서 닦아놓았다. 이 역사(役事)에 이가환·이만수(李晩秀, 1752~1820, 자: 成仲, 호: 履翁·履園)·윤행임(尹行恁, 1762~1801)·홍인호(洪仁浩, 1753~1799)·이상황(李相璜, 1763~1841, 자: 周王, 호: 桐漁·玄圃)·엄기(嚴耆, 1762~?, 자: 伯英)·김이교(金履喬, 1764~1832)·김이재(金履載, 1767~1847, 자: 公厚)·서준보(徐俊輔, 1770~1856)·김근순(金近淳, 1772~?)·조석중(曹錫中, 1763~?) 등이 모두 참여했으므로 세상에서 “영예스러운 인재를 매우 잘 가려 뽑았다”라고 일컬었으니, 그 당시의 풍채를 상상해볼 수 있다.

<식목년표(植木年表)에 발(跋)을 쓰기를 “위의 표(表)는 현릉원에 식목한 숫자이다. 을묘년(1795, 정조 19) 봄에 개서국(開書局)에 명하여 《정리통고》를 찬술하게 했는데, 비궁(闕宮: 종묘)·침원(寢園: 임금의 산소) 및 용주사(龍珠寺)·배봉진(拜峯鎭) 등 여러 곳의 연혁과 규제(規制)를 신에게 명하여 찬술하라고 하셨다. 명을 받은 뒤, 임금이 <식목부(植木簿)를 주면서 유시하기를 7년 동안(기유년(1789)부터 을묘년까지-원주) 8읍(수원(水原), 광주(黃州), 용인(龍仁), 과천(果川), 진위(振威), 시흥(始興), 안산(安山), 남양(南陽)-원주)에 식목한 장부책을 수레에 싣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으나, 누가 공로가 많은지 심은 나무의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백하지 않으니, 그대는 번잡한 내용은 삭제하고 간략하게 하기를 힘쓸 것이며, 명백한 점만 따라 한 권이 넘지 않게 하라.” 하셨다. 신이 물리나와 연표(年表)를 작성할 적에 가로로 12단(端)을 만들고(7년 동안 12차례 식목한 것을 배열하기 때문이다.-원주), 세로로 8단을 만들어(8읍을 배열하기 때문이다.-원주) 칸마다 그 숫자를 기록하고 총계를 내어보니, 소나무·왜나무·상수리나무 등 여러 나무들의 총 숫자가 모두 1200만 9772그루였다. 이것을 맨 끝에 기록하여 올렸더니, 임금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아니면 자세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대가 한 마리 소가 땀을 흘리며 끌 정도로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한 장의 종이에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잘했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시고, 오랫동안 칭찬하셨다. 이해 여름에 간언(諫言)하는 자에게 원한을 사서 가을에 금정(金井)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제 그 초본이 책 상자 속에 남아 있으므로 애오라지 이것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줌으로써 임금의 침원(寢園)에 대한 효성이 이와 같이 지극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했다.

하루는 상원(上苑)에 온갖 꽃이 활짝 피었는데, 임금이 여러 학사들을 단풍정(丹楓亭) 아래로 불렀다. 궁중의 말을 타고 호종하는 사람이 무려 20여 인이나 되었다. 청양문(靑陽門)을 나와 궁궐 담을 한 바퀴 돌아 석거각(石渠閣)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잠시 후 이들을 데리고 농산정(籠山亭)에 이르러 곡연(曲宴: 임금이 궁중의 내원(內苑)에서 베푸는 작은 연회)을 베풀고 여러 신하들이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수석과 꽃으로 빼어난 금원(禁苑)의 경관, 기이한 정자·연못·누대(樓臺), 신비한 책상·도서(圖書) 등 구경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발걸음을 옮겨 서총대(瑞蔥臺)에 이르러 임금이 활을 쏘는데 여러 학사들로 하여금 집안사람이나 부자(父子) 같이 가까이서 보게 했다. 저녁나절에 부용정(芙蓉亭) 아래로 데리고 가 꽃을 구경하고 고기를 낚았다.

<부용정시연기(芙蓉亭侍宴記)에 말했다. “금상 전하 19년 봄에 임금께서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을 베풀었는데, 신이 규영부(奎瀛府) 찬서(撰書)로 글씨를 쓴 노고가 있다고 하여 특별히 명하여 잔치에 참석하게 했다. 이때에 대신(大臣)·각신

(闕臣)으로 잔치를 참석한 사람이 모두 10여 인이나 되었다. 임금이 단풍정에서 말을 타고 여러 신하들에게도 말을 타고 따르도록 했다. 어가(御駕)가 유근문(遊觀門)을 경유해서 북쪽으로 궁궐의 담을 따라 돌다가 집춘문(集春門) 안으로 들어서 꾸불꾸불 돌아 석각(石渠閣) 아래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상림(上林)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었고 봄빛이 화창했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안일하게 유희나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경들과 함께 즐겁으로써 마음을 서로 주고받아 천지의 조화에 응하고자 함이다.’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임금의 얼굴빛이 유쾌해지고 목소리도 화창했다. 잔치를 끝내고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행차를 옮겨 원(苑) 안에 있는 여러 정자를 둘러보고 저녁나절에 부용정에 이르렀다. 임금은 물가에 있는 난간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우고, 여러 신하들도 연못가에 앉아 낚싯대를 드리웠다. 낚은 고기를 통 안에 넣어 두었다가 이윽고 모두 놓아 주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배를 띄우게 하고 배 안에서 시를 짓게 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짓지 못하는 자는 연못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모두 가두겠다고 했다. 몇 사람이 과연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곧 풀어주었다. 또 음식이 나와 실컷 먹고 취했다. 임금이 어전(御前)의 홍사촉(紅紗燭)을 내려 주어 이것을 밝히고 원(院)으로 돌아왔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과 같다고 하겠으나 임금의 도가 너무 굳세기만 하고 마음씨가 미답지 못하면 모든 정사는 쪼스러워지고 육기(六氣)는 어긋나게 되어 재앙과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은 내려오고 땅은 올라간 것을 ‘태(泰: 《주역(周易)》의 11번째 괘)’라고 하는데, 군자의 도는 성장하고 소인의 도는 소멸하여 음양이 조화되므로 사특하고 바르지 못한 기운이 발붙일 틈이 없는 것이다.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평소 애뜻이 공손하고 겸소하시어 말을 치달려 사냥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음악이나 여색이나 진기한 물건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며, 환관과 궁첩(宮妾)이라고 하여 사사로운 정을 주지 아니하신다. 다만 진신대부(摠紳大夫)들 중에 문학과 경술(經術)이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여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즐기신다. 비록 사죽금석(絲竹金石)과 같은 온갖 악기를 베풀어 놓고 번갈아 연주하게 하여 노년 적은 없으나, 음식을 내려주고 온화한 얼굴빛으로 대해주어서 친한 이를 친히 대해줌이 마치 집안사람들이나 부자(父子) 사이와 같았으며, 엄하고 딱딱한 얼굴빛은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도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민생의 질고(疾苦)와 여항(閹巷)의 말 못할 답답한 사정을 모두 환히 들을 수 있었으며, 경(經)을 말하고 시(詩)를 이야기하는 자들도 의구심 없이 질정하고 변석하는 데 정성을 다할 수 있었다. 아! 이것이 이른바 군자의 도가 성장하고 소인의 도가 소멸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 호방형(胡邦衡=胡銍, 1102~1180, 자: 邦衡)이 명원정(明遠亭)에서 임금을 모시고 연회를 한 뒤 물러나와 〈옥음문답(玉音問答)〉을 지어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盛事(盛事)를 서술했다. 신도 지금 연회에 참석했으니, 어찌 이盛事를 기록하여 성덕(聖德)을 드날리지 않겠는가.”

삼일제(三日製)에서 선비들을 시험하는데, 임금의 특旨(特旨)로 대독관(對讀官)에 차하(差下)되었다. 임금이 제학(提學) 서유린(徐有隣, 1738~1802, 자: 元德)에게 이르기를 “취하고 버리고 흠잡고 병통을 지적하기를 대독관과 함께 서로 상의해서 하라.” 했다. 공이 일어나 사양하면서 “문원(文苑)의 고사(故事)에 대독관은 단지 답안만 읽을 뿐 감히 가부(可否)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신은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임금이 “함께 의논할 수 있을 만함을 알고 있으니, 사양하지 말라.”라고 했다. 공이 굳이 사양했으나 임금이 교지(教旨)를 거듭 내리므로 공이 부득이 답안을 평하는 데 참여하여 의논했다. 제학 서유린이 성지(聖旨)를 받았다고 하여, 한 점을 찍고 한 점을 지을 적마다 모두 공의 말을 기다렸다. 공이 엄한 교지를 받은 이래로 한평생 다시는 고관(考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은명(恩命)이 있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지난번 과장에서 일어났던 참소에 대해서 임금이 이미 그것이 무고임을 아셨기 때문이리라.

이때 배율(排律) 답안 한 장이 버려졌는데, 버리려 할 때 임금이 다시 한 번 훑어보고 떨어짐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 있었다. 답안 채점이 다 끝났을 때, 배율(排律)은 뽑힌 것이 6없었다. 임금이 “아까 그 한 장이 아깝다.”라고 하고, 시신(侍

臣)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했다. 구석구석 뒤져도 찾지 못하거늘, 공이 일어나 한 장을 집어가지고 오니 과연 그것이였다. 드디어 제일(第一)에 놓고 이름을 펴보니 정약선(丁若鏞, ?~?)이었다. 공이 오장(五臟)을 벌벌 떨며 큰 함정에 빠진 사람과 같이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임금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어, “신의 족제(族弟)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그 사람 됨됨이와 문예(文藝)는 어떠한가?”라고 물어, “범용(凡庸)한 선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물러 나와서 공이 채이숙(蔡邕叔, 1762~?, 채홍원(蔡弘遠), 이숙은 그의 자)에게 “나는 이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 사정(私情)에 의해 성지(聖旨)를 입었는데, 또다시 지적지간(咫尺之間)의 어담(御談) 앞에서 이런 꼴의 혐의를 범했으니,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대저 고관이란 직책은 반드시 죽는 자리인가 봅니다.”라고 했다. 며칠 뒤에 임금이 채이숙에게 묻기를 “어제 정약선을 만나 보았는데, 그 행동거지는 단정하고 조심성 있었으며, 응대(應對)하는 것도 압전하고 우아했다. 그의 문학은 어떠한가?” 하니, 채이숙이 “문예도 또한 정묘(精妙)합니다.” 했다. 임금이 “정 아무개에게 물었다더니 범용하다고 대답했는데, 그 무슨 까닭이 있는가?” 하여, 채이숙이 공이 앞서 한 말을 빠짐없이 아뢰었다. 그랬더니 임금이 크게 웃었다.

며칠 뒤 임금이 세심대(洗心臺)에 행차하여 꽃구경을 했다. 공이 또 그곳에 따라갔다. 이때에 술이 이미 몇 순배 돌았고 활쏘기도 끝이 났었다. 임금이 시를 짓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는 시를 짓게 했다. 내시(內侍)가 오색 채전(彩箋) 한 축(軸)을 가져왔다. 임금이 “그대들 가운데 누가 가장 속필(速筆)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정 아무개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공에게 명하여 어막(御幕) 안에 들어와 시를 베껴 쓰라고 했다. 공이 탑전(榻前)에서 붓을 뽑아 쓰려고 하니, 임금이 “장막 안의 땅이 고르지 못하니 어담 위에다 시축(詩軸)을 편안하게 올려놓고, 그대는 어담 아래에 앉아 베껴 쓰라.” 했다. 임금이 바야흐로 어담 위에 앉으니, 임금의 위엄이 지적(咫尺)에 있는지라 공이 머뭇머뭇 하며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임금이 빨리 하라고 명을 하여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붓을 놀림에 임금이 내려다보고 잠시 후 웃으면서 “과연 속서(速書)로구나.” 했다. 대우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3월 20일,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다.

4월, 공이 규영부 교서에서 이옥고 정직(停職)되었다. 이는 일종의 악당들이 헛소문을 선동하여 모함하고 험뜯고 간사한 꾀를 썼기 때문이었다. 공이 이때부터 가슴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 마침내 다시는 대궐에 들어가 교서를 하지 않았다.

7월 26일,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으로 외직에 보임되었다.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공을 크게 기용하려고 하던 순간이었다. 여름에 소주(蘇州) 사람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세례명: 야고보)가 변복(變服)을 하고 몰래 들어와 북산(北山) 아래에 숨어서 널리 서교(西教→서학)를 전했다. 진사 한영익(韓永益, 1767~?)이 그것을 알고 이석(李哲, 1759~1829)에게 고(告)하고, 이석은 채상공(蔡相公)에 고하고, 채공은 임금에게 은밀히 아뢰었다. 임금이 포도대장 조규진(趙奎鎭, ?~?)에게 명하여 기습하여 체포하도록 했으나 주문모는 잡지 못하고 최인길(崔仁吉, 1765~1795, 중국어 역관으로 주문모를 숨겨 주었음)·윤유일(尹有一, 1760~1795, 북경에 가서 주문모 파견을 교섭하여 성공함) 등 세 사람만 잡아다 곤장으로 처서 죽였다. 이때 목만중(陸萬中, 1727~1810) 등이 헛소문으로 선동하여 이번 기회에 선류(善類)를 모두 모함하려 하여, 몰래 박장설(朴長高, 1729~?, 자: 稚教, 호: 汾西)에게 사주(使囑)하여 상소하게 했다. 그는 자칭 ‘기려지신(驕旅之臣: 다른 나라 사람으로 벼슬하는 신하)’이라 하고는, 맨 먼저 서유방(徐有防, 1741~1798, 호: 奉軒)의 간사함을 논하고, 다음으로 포도청에서 성급히 죽인 것을 논했다. 이어 이가환에 대해서는 “이가환이 일찍이 천문책(天文策)에 대답하면서 감히 청몽기설(淸蒙氣說)을 썼다.”라고 하고, 또 “동고관(同考官)이 되었을 때 책문(策問)이 오행(五行)이었는데, 해원(解元)은 오로지 서양 사람의 설을 주로 하여 오행을 사행(四行)으로 하여 대답했다.”라고 했다. 해원(解元)은 바로 공의 중형(仲兄)인 손암공(巽菴公=정약전, 1758~1816, 호: 巽菴)이다. 이것은 모두 목만중이 항상 몰래 사주하며 하던 말들이었다. 상소가 들어가니 임금이 진노하여 전교(傳敎)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비록 떨치지 못한다고 하나 그들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놀라운 정도로 패란(悖亂)하는가. 그들도 또한 나라 안의 벼슬아치요, 유구(琉球)나 일본에서 어제오늘 귀화한 무리들이 아닌데, ‘기려(驕旅)’

란 칭호가 어찌 감히 마음속에서 썩터 입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고는 드디어 박장설에게 명하여 먼저 두만강(豆滿江)으로 가게 하고, 다음은 동래(東萊)로 가게 하고, 그다음은 제주(濟州)로 가게 하고, 또 다음에는 압록강(鴨綠江)으로 가게 하여, 네 변방으로 두루 흘러 다니게 하여 ‘기려’의 명칭에 맞도록 했다. 또 전교하기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책(對策)에서 사행(四行)을 주장한 답안이니, 한번 조사하여 바로잡는 것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오늘 임헌공령(臨軒功令)에 실린 대책을 가져다 위아래로 여러 번 살펴보고 상소한 자가 말한 부분을 지구(字句)를 따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애초부터 비슷하게 의심스러운 곳도 없었다. 처음에 오행에 대해 말하고, 다음에 금(金)·목(木) 이행(二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수(水)·화(火)·토(土) 삼행(三行)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는 토(土)가 사행(四行)에 붙어 있음을 말하고, 다시 오행으로써 거듭 결론을 맺었다. 이행이나 삼행으로 묶어놓은 점에 대해서는 혹 망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唐)나라 승(僧) 일행(一行, 683~727)은 수레와 문자가 통용되지 않았던 세상에 살면서도 ‘대연력(大衍曆) 《주역(周易)》 대연(大衍)의 수를 추산하여 만든 책력’에서 800년에 하루의 차가 있는 오류를 능히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일행의 글도 사학(邪學)으로 돌릴 수 있겠으며, 일행의 역법도 서양의 법(法)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극히 맹랑하다고 할 만하니, 식견 있는 선비들이 스스로 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했다. 또 전교하기를 “서양의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수백여 년이나 되어 사고(史庫)와 옥당(玉堂)의 옛 장서(藏書)에도 모두 있으니 수십 질뿐만이 아니다. 두서너 해 전에 특명으로 사 모아 온 것이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은 모두 알 것이다. 옛 정승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 1658~1722, 호: 疎齋)의 문집 속에도 서양인 소림대(蘇霖戴, ?~?)와 서신 왕래를 하면서 그들의 법을 구해 보려고 한 편지가 있다. 그의 말에, ‘대월(對越)·복성(復性)은 우리 유교(儒敎)와 다를 것이 없는 듯하니, 황로(黃老: 황제(黃帝)와 노자(老子), 즉 도교(道敎)를 가리킴)의 청정(淸淨)과 구담(瞞曇: 성도(成道)하기 전의 석가, 즉 불교(佛敎)를 가리킴)의 적멸(寂滅)과 똑같이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법과 비슷하고 도리어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이론을 취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천하를 바꾼다면 곤란한 일이다.’라고 했으니, 옛 정승의 말이 그 이면(裏面)을 자세히 변론해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간혹 순전히 공격하고 배척한 자도 있다. 옛 찰방(察訪) 이서(李澈, 1662~1723 호: 玉澗)의 시(詩)에는 ‘오랑개가 이학(異學)을 전하니, 도덕의 도둑이 될까 두렵다. [夷人傳異學, 恐爲道德寇.]’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대체로 근일(近日) 이전에는 박학하고 품위 있던 선비들도 거기에 대해 입론(立論)하여 평을 하긴 했지만 그 비평이 완곡하건 준열하건 그 시대에는 별로 상관 없었다.” 했다. 아마도 정조가 전후로 전교한 것은 오로지 정헌(貞軒) 이가환 및 공의 형제에 대해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덕을 이루어주고자 함이었을 것이니, 성상(聖上)의 보살피심이었던 것이다.

가을에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아무개 아무개 등 몇 사람을 바야흐로 크게 기용하려던 참이었었는데, 박장설이 상소한 뒤로 구설(口舌)이 매우 많으니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박정하게 꾸짖어 각각 지급까지의 종적을 밝히고, 뜻을 분명히 밝히게 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아야만 되겠다.” 했다. 며칠 뒤 특별히 교지를 내려 금정도 찰방에 보임(補任)되었던 이가환을(전에 누차 혐의를 받아 이 직책에 보임되었다. - 원주) 특별히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임명했다. 또 전교하기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안건은 정 아무개의 일이다. 그가 만약 눈으로는 성인의 글이 아닌 것은 보지 않고 귀로는 경(經)을 어지럽히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죄 없는 그의 형이 어찌하여 소장(疏章)에 올랐겠는가. 그가 만약 문장을 하려고 했다면 육경(六經)과 양한(兩漢)의 문장이 좋은 모범이 될 터인데, 하필 기이한 것을 힘쓰고 새로운 것을 구하고자 하여 몸과 이름을 낭패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아니면 무슨 다른 욕심이라도 있었던 말인가. 종적에 별다른 실마리가 없다고 하지 말라.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그에 대해서 단안(斷案)을 내릴 수 있겠다. 그가 글자의 획을 쓴 것을 보니 아직도 타이르는 말을 따르지 않고, 비스듬히 쓴 체(體)가 예전 그대로 고치지 아니했으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엄한 처분을 내려 설사 이미 선(善)으로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선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혹 이번 일로 인하여 반성을 하고 손을 떼어버린다면 그에게 있어서 덕을 이루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전승지 정 아무개를 금정도 찰방으로 제수하니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나와 하직 인사를 하겠는가. 마땅히 즉시 길에 올라 살아서 한강을 넘도록

도모하게 하라.” 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헌(貞軒)과 공이었기 때문에 성은(聖恩)이 짐짓 시론(時論)을 따라 인심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일 것이다.

이때에 임금이 진산 현감(珍山縣監) 이기양(李基讓, 1744~1802, 호: 伏庵)을 서울로 불러 태학(太學)에 나아가 과시(課試)에 응하도록 했다. 임금이 그를 인견(引見)하고는 크게 기뻐하여 바로 부(賦) 한 편을 시험하고 특별히 급제를 시켜주니 이때가 9월이었다. 10월 중에 비지(批旨)를 내려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에 제수하고, 채상국(蔡相國)에게 이르기를 “경이 지금 늙었는데도 경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가, 이 아무개를 얻고 나니 내가 이제는 근심이 없다.” 했다. 이때에 악당들이 두 사람을 제거하기로 기약했는데, 임금이 그들의 실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명목상 두 사람을 내쫓았으나, 실제로는 한 사람을 더 늘려 세 사람으로 한 것이니, 악당들이 크게 원망했다. 이때에 정헌(貞軒)이 충주에 있으면서 편지를 공에게 보내 “사흥(土興: 복암(茯菴) 이기양(李基讓)의 자(字)이다. -원주)이 성은을 입게 된 것은 선류(善類)의 다행스런 일이나, 두 갈퀴의 창(槍)이 앞으로 삼지창(三枝槍)이 되겠지요.”라고 했다(복암(茯菴)의 묘지(墓誌)에 있는 문구(文句)이다. -원주).

공이 금정(金井: 금정은 홍주(洪州)에 있는 지명이다. -원주)에 있었는데, 역속(驛宿)들이 대부분 서교(西敎)를 학습하고 있었다. 공이 임금의 뜻에 따라 그중에 주모자를 불러서 조정의 금령을 타일러 주며 제사를 지내도록 권고하니, 사림(士林)들이 그 말을 듣고는 본래의 견해를 바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때 목재(木齋) 이삼환(李森煥, 1729~1814)에게 청하여 온양(溫陽)의 석암사(石巖寺)에서 만났는데, 당시 내포(內浦)의 이름 있는 집 자제들인 이광교(李廣教, ?~?)·이명환(李鳴煥, 1773~1808)·권기(權夔, ?~?)·강이오(姜履五, ?~?) 등 10여인이 또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날마다 수사(洙泗)의 학문을 강(講)하고, 사칠(四七)의 뜻과 정전(井田)의 제도에 대해서 물었으므로 별도로 문답을 만들어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를 지었다.

또 성호유고(星湖遺稿)를 가져다 <가례질서(家禮疾書)>부터 교정을 시작하여 차서(次序)가 문란한 것은 바로잡고 자획이 잘못된 것은 고치며, 범례(凡例)를 세워 한 부(部)의 완전한 책이 되게 했다.

또 <퇴계집(退溪集)>만 부를 가져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마친 뒤, 퇴계가 다른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 편 읽은 뒤에 아전들의 인사를 받았다. 정오가 되면 연의(演義) 1조(條)씩 수록(隨錄)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이라 했으니, 모두 33칙(則)이다.

12월 20일, 용양위 부사직(龍驤衛副司直)으로 옮겨졌다.

1796년(正祖 20, 丙辰), 35세 정월(正月)에 오사(五沙) 이정운(李鼎運, 1743~1800)이 금백(錦伯: 충청도 관찰사)이 되었다. 임금이 승지 이익운(李益運, 1748~1817)에게 이르기를 “정 아무개가 계책을 써서 도적을 잡았으니, 그 일은 민멸시켜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계략도 마땅히 드러내주어야 할 것이다. 경의 형에게 말하여 임지(任地)에 도착하거든 곧바로 그 연유와 상황을 자세히 갖추어 올리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포장(褒獎)을 더하여 발탁해서 쓰고자 하니, 장계(狀啓)는 모름지기 정 아무개와 상의하고 초안은 경의 형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했다. 이승지(李承旨)가 곧바로 와서 하교(下敎)를 전해주니, 공이 대답하기를 “은혜롭게도 염려해주심은 참으로 망극한 일이오나, 도적을 잡았다고 상을 받는 일은 천하에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초안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장계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공의 형님과 더불어 마땅히 이로부터 절교하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내일 경연 석상에서 이 점을 분명히 주달(奏達)해주시오.”라고 했다. 오사(五沙)가 또 편지를 보내 알아듣도록 타이르니, 공이 답장을 보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어제 동생을 만나 엿드려 임금께서 경연에서 내린 교지를 받았는데, 오늘 또 보내주신 가르침을 받고 보니, 우리 임금님의 뜻을 알게 되어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장계의 초안이야 어찌 도와 드리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다만 삼가 생각건대 사군자(士君子)가 자신을 곧바로 세우고 자기의 도를 행함에 있어 오직 사유(四維: 禮·義·廉·恥)가 중한 것이니, 진실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망심하여 소홀히 함이 있다면 비록 주공(周公)의 재주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볼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은 비·바람으로 목욕을 하고 시석(矢石)을 무릅쓰며 예측할

수 없는 지방으로 들어가 요행이 없는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까지 적장의 목을 베고 기(旗)를 뽑아버려 천리(千里)의 땅을 개척한 자라고 하더라도 돌아와서는 조용히 공을 자랑하거나 으스스대지 아니하여 조금이라도 교만한 얼굴색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것은 신하 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니 공(功)으로 여길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이존창(李存昌, 1752~1801, 세례명: 루도비코 곤자가)이란 자는 명(命)을 피하여 다니는 한 백성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실령이 백성이 비바람을 부르고 둔갑을 하여 몸을 감추는 재주를 지니고 있어 오영(五營)의 병사들을 풀어도 잡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제가 낸 피와 계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잡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공으로 여길 수 없는 일이지, 하물며 저 이존창이라는 자는 겨우 이름이나 바꾸고 자취나 감추어 이웃 고을에 은신하고 있던 자이니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가 은신하고 있던 곳을 알았으니, 포졸 한 명만 데리고도 결박하여 잡아오는 것이 독안에 든 자라를 잡듯이 쉬운 일인데, 하물며 저는 처음부터 염탐하는 방법에 참여하여 듣지 못했으니 무슨 공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처럼 보잘것없는 일을 가지고 장황하게 늘어놓아 일세의 이목(耳目)을 속임으로써 자신을 진출시키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또한 잘못되고 군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불우하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이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명(聖明)께서 이 몸에 은총을 내리주시려고 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은총을 내리시는 데 급급하셔서 이와 같이 지극히 어질고 친절한 은교(恩教)가 있게 되었을 것이니, 조용히 생각해보건대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몸의 미미한 지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은(聖恩)의 뜻을 받을 수가 없으니,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진실로 당신께서 저의 이와 같이 지극히 간절한 뜻을 생각해주시지 않으시고 감영(監營)에 도착하자마자 장계를 올려 한 구(句)만 자(字)라도 후 저에게 공을 돌려주는 말을 하신다면, 저는 즉각 상소를 하여 당신께서 사정(私情)을 따라 임금을 속였다는 잘못을 들어서 극렬히 논핵(論劾)할 것입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앞으로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직 만 리 밖의 외딴 곳으로 귀양 갈 것을 결심하고 있으니, 또한 양찰(諒察)해주십시오. 위로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아래로는 대감의 뜻을 저버렸으니 송구스러운 마음 급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때에 공이 임금의 뜻을 거스른 일로 오랫동안 직명(職名)이 없었다. 그 뒤에 김이영(金履永, 1755~1845)이 금정에 보직되었다가 돌아가서 “아무개가 금정에 있을 때 성심(誠心)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거두어주었으며, 관직에 있어서는 청렴하고 근신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 뒤에 심환지(沈煥之, 1730~1802)가 또 아뢰기를 “정 아무개는 군복(軍服)의 일로 인하여 특명으로 정망(停望: 죄 지은 사람의 벼슬을 박탈함)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미 쓸 만한 때가 되었을 뿐더러, 또한 금정에 있을 때 일깨워 교화시킨 바가 많으니, 청컨대 다시 거두어 쓰소서.”라고 했다. 임금이 윤택하고 곧 형조(刑曹)의 녹계(錄啓: 죄인의 수감(囚禁)과 판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일)로 인하여 하유(下諭)하기를 “근래에 연신(筵臣)의 말을 들으니 내포(內浦) 일대 외직에 보임되었던 찰방이 성심으로 교화시키고 거두어주어 괄목할 만한 효험이 있었다 하니, 특별히 중화척(中和尺)을 하사하노라.” 하고 이어서 어시(御詩) 두 수(首)를 내려 주며 화답시(和答詩)를 지어 올리라고 했다.

10월에 명을 받고 규영부(奎瀛府)의 교서가 되었다. 겨울에 규영부로 불러들여 자리를 마주하고 특별히 오랫동안 이별했던 뜻을 유시(諭示)하고, 이어서 책 이름에 대해서 의논하기를 “세상에서 반마(班馬: 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라 칭하고 있는데, 반고(班固, 32~93)가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기원전 86?) 위에 있으니 별로 적절한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반(馬班)’이라고 한다면 생경한 말이 되니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여 답하기를 “세상에서 ‘사한(史漢)’이라고 칭하는 것도 오당하지 못합니다.” 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한서(漢書)》 또한 역사 기록이니 바로 《사기영선(史記英選)》이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여, 공이 “매우 좋습니다.” 했다. 임금이 “범례(凡例)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미심쩍은 점이 있거든 곧바로 유명표(柳明杓, 1746~?)를 데리고 들어와 상의하라.” 했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검서관(檢書官) 유득공(柳得恭, 1748~1807, 호: 냉齋)을 보내 《규운옥편(奎韻玉篇)》의 범례에 관해서 정헌(貞軒) 및 공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만수(李晩秀, 1752~1820)·이재학(李在學, 1745~1806)·

이익진(李翼晉, 1750~1819)·박제가(朴齊家, 1750~1805, 호: 楚亭) 등을 불러들여 《사기영선》을 교정할 때, 임금이 자주 자리를 함께하고 책이름을 의논하여 결정했으며,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사하여 그들을 우대했다. 또 자주 쌀·시탄(柴炭)·팽·짚·갈·감 등을 하사하고 향물(香物)도 나누어주었다.

하루는 화성(華城)에 내려가 여러 궁실(宮室)의 상량문을 써서 올리라고 하고, 또 《어람오경(御覽五經)》 100편과 《팔자백선(八字百選)》 등 여러 책을 내려주면서 제목을 써서 올리라고 했다. 이날 밤에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는 필체(筆體)가 훌륭하게 변했도다.”라고 했다. 이때부터 상을 내려주는 은혜가 두터웠다. 또 내장(內藏) 서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이 각신(閣臣)의 예와 같았으니, 특별한 배려였다.

12월 초1일,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제수되었다.

12월 초3일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다.

다음 날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올랐다가 부호군(副護軍)으로 옮겨졌다.

1797년(正祖 21, 丁巳), 36세 3월에 대유사(大酉舍)에서 음식을 베풀어주시는 데 나아가 참석하고 명을 받들어 춘추경전(春秋經傳)을 교정했다.

봄에 공이 집에 한가롭게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이 비궁(闕宮)으로 특별히 불러 명하기를 “오랫동안 내가 베풀어주는 음식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므로 특별히 부른 것이다.”라고 했다. 이윽고 음식이 나왔는데, 임금이 명하여 기둥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 먹게 했다. 조금 뒤 “토란의 별명이 있느냐?”라고 물어, “준치(蹲鴟)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속명(俗名)은 무엇인가?” 하여 “토련(土蓮)입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묻기를 “두보(杜甫, 712~770)의 시에 ‘뒤뜰에서 우울(芋栗)을 주우니 아주 가난하지는 않네. [圃收芋栗未全貧.]’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우(芋)와 울(栗)을 한꺼번에 일컫었는가?” 하여 답하기를 “두보 시의 구절은 우울이 아니고 서울(芋栗)이니, 서(芋)는 소울(小栗)로 《장자(莊子)》에서 ‘원숭이 기르는 영감이라도 토리를 준다. [狙公賦芋.]’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과연 그러하다.” 했다. 임금이 묻기를 “《사기(史記)》, 〈원앙열전(袁盎列傳)〉에 ‘눈으로 전송한다[目送之]’라는 구절을 혹 ‘스스로 전송한다[自送之]’로 쓰기도 하니, 잘못 된 것인가?” 하여 답하기를 “자송(自送) 운운(云云)한 것은 경제(景帝, 재위 기원전 157~기원전 141)가 몸소 일어나 보낸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진달한 것이 옳다.” 하고 이어서 사한제의(史漢諸義)에 대해서 의논했다.

이문원(摛文院)에 들어가 두보의 시(杜詩)를 교정하도록 명했다. 이의준(李義駿, 1738~1798, 자: 仲命) 등은 규영부에 있으면서 육유(陸游, 1125~1210)의 시(陸詩)를 교정했다. 이때 공이 이서구(李書九, 1754~1825)·김조순(金祖淳, 1765~1832, 호: 楓臯)과 함께 두보의 시를 교정했고, 이의준·이만수(李晩秀, 1752~1820)·남공철(南公轍, 1760~1840, 호: 金陵)은 육유의 시를 함께 교정했다. 임금이 유시하기를 “먼저 끝내는 조에게 상을 줄 것이고 나중에 끝내는 조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일이 끝났을 때에는 두시가 먼저였고 육시가 나중이었다. 임금이 상벌을 내리려고 하니, 이의준 등이 호소하기를 “육시가 두시에 비해서 배나 많으니 신들은 원통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러나 이미 명령을 했으니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김조순에게는 환약(丸藥)을 상으로 주고 이의준 등에게는 술잔을 벌로 주었다. “비록 벌주(罰酒)지만 환약보다는 낫다.”라고 하고, “비록 약을 상으로 받았지만 벌보다는 낫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서로 함께 찬양을 했으니, 아, 성대한 일이다.

교서관(校書館)에 입직(入直)하면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교정하도록 명했다. 하루는 임금이 대유사(大酉舍)에 나와서 공을 불러 음식을 내려주고 이어서 《춘추(春秋)》의 범례에 관해서 물었다. 이서구(李書九)·윤광안(尹光顔, 1757~1815, 호: 盤湖)·이상황(李相璜, 1763~1841)에게 명하여 함께 경전(經傳)을 편찬하도록 했다. 《주자강목(朱子綱目)》의 예(例)와 같이 하여 수십 일 만에 끝냈다. 출판되자 멀리까지 한 부(部)를 보내주어 그 노고에 보답해주었다(곡산 부사(谷山府使)로 있을 때이다. - 원주).

절제(節製: 절일제(節日製)의 준말. 성균관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으로 매년 인일(人日, 1월 7일), 상사(上巳, 3월 3일), 칠

석(七夕, 7월 7일), 중양(重陽, 9월 9일)에 실시했다.)의 대독관(對讀官)으로 명을 받고 회정당(熙政堂)에 입시(入侍)했다. 이날 사알(司諫: 임금의 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정6품직)이 붉은 분(盆)과 붉은 필(筆)을 대독관의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임금님의 하교입니다.” 했다. 임금이 어답 위에서 눈여겨보다가 “끝내는 붉은 붓을 잡게 될 것이니, 오늘은 시험 삼아 먼저 붓을 잡아 보아라.” 하니, 공이 어물어물하면서 감당하지 못했다. 임금이 하교를 거듭 내려서 공이 부득이 답안을 채점하게 되었다. 관례에는 명관(命官: 임금이 과장(科場)에 친히 나와 직접 임명하는 시관(試官)이나 주문(主文: 시관의 우두머리인 상시(上試))가 아니면 감히 가려 뽑을 수 없었다. 임금이 특별히 명을 내려 공더러 많이 뽑으라고 했다. 채점이 끝난 뒤 합하여 살펴보니, 공이 뽑은 것이 세 장이었는데 모두 윗자리를 차지하고 명관과 주문이 뽑은 것은 제4위, 제5위를 차지하여 보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다(임금이 “끝내는 붉은 필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제학(提學)이 되리라는 말이다. - 원주).

6월 22일,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소회를 진달했다(→〈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 상소는 모두 수천만 자(字)였다. 평생의 본말(本末)을 차례로 진술했는데, 털끝만큼도 숨김이 없었다. 임금이 비답하기를 “선단(善端)의 싹이 온화하여 마치 봄기운이 만물을 싹틔게 하는 것과 같이 종이에 가득 펼쳐져 있으니, 말한 것을 감격스럽게 들었다.” 했다. 경연 석상에서 이만수(李晩秀)·이면공(李勉功, 1753~1812, 자: 大臨) 같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그 광명(光明)을 극찬했다. 임금이 교지를 내려 끝없이 칭찬을 해주고, 또 연신(筵臣)들에게 “이후로 정 아무개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심환지(沈煥之, 1730~1802)가 또한 경연 석상에서 “상소문이 매우 좋고, 또한 그의 심사(心事)도 광명스럽습니다.”라고 극찬했으며, 승정원(承政院)으로 돌아가서도 칭찬을 마지않았다.

상소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은 것이 하늘처럼 끝이 없으니, 신이 어떻게 모두 다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엄한 스승과 같이 가르쳐서 기질(氣質)을 변화시켜주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길러주어 성명(性命)을 보전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혹 전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은 신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혹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신은 유독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골수에 사무칩니다. 말을 하려 하니 감격에 겨워 소리를 낼 수 없고, 글로 쓰려 해도 가슴속이 억눌려 글이 되지 않습니다. 신이 돌아보건대, 그 어느 누가 성을 받은 것이 이와 같겠습니까. 신은 본래 초야에 묻힌 한미한 사람으로 부형(父兄)의 음덕(蔭德)이나 사우(師友)의 힘도 없었는데, 오직 우리 전하께서 이루어주고 교화시켜주는 공에 힘입어 어린 몸이 장성하게 되고 천한 신분에서 귀하게 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의 시험에서 6년 동안이나 뽑혔고, 내각(內閣)의 과시(課試)에서 3년간이나 뽑혀 외발되어 학사로 선발되어 대부의 품계로 뛰어 올랐습니다. 대체로 문식(文識)이 조금씩 진전되고 작록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 어느 하나 우리 전하의 지극한 가르치심에 의해 훈도(薰陶)된 것과 지극한 정성에 의해 닦아진 것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목석(木石)인들 어찌 차마 이처럼 넓은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하께서는 수사염민(洙泗灑潤: 공자(孔子), 맹자(孟子),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학(學)을 몸소 실천하시고 요(堯)·순(舜)·우(禹)·탕(湯)의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천성(千聖)을 계승하여 집대성하시고 백가(百家)의 학설을 물리쳐 대일통(大一統)하시어, 만물을 안연(顔淵=顏回, 기원전 521~기원전 481)의 거문고와 증점(曾點, ?~?, 증자의 아버지)의 비파처럼 화순한 사이에 있게 하시니, 이에 성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이 이미 다행스럽게도 성인의 세상에 태어났으며, 더욱 다행스럽게도 성인의 문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비록 담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종묘와 백관의 성대함을 보지는 못했지만 《논어(論語)》, 《자장(子張)》에 자공(子貢)이 “궁실(宮室)의 담장에 비유하면, 나의 담장은 높이가 어깨에 미칠 따름이라 궁가(宮家)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거니와 공자(孔子)의 담장은 여러 길에 이르러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백관(百官)의 성대함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다. 여기서는 성인(聖人)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겸손의 말이다.), 훈자(薰炙)되고 함양된 점은 이미 깊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품행을 방정하게 하여 술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 천리(天理)《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의 “鳶飛戾天 漁躍于淵” 구절로, 천지 자연의 이치

를 상징한다고 해석되어왔다.)를 궁구하여 아름다운 소문과 명예를 얻어서 비·구름을 조화(造化)하는 천리(天理)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터인데, 단지 신의 불초하고 천박함으로 말미암아 전하께서 꼭진하게 이루어주시려는 뜻을 저버리고 전하의 불설지회(不屑之悔: 《맹자(孟子)》, 〈고자 하(告子下)〉에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탐하게 여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교훈이 된다는 뜻)를 수고롭게 했으니 그 실정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더라도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염구(冉求, 기원전 522~?)는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의 총애를 받는 제자였으나 한번 죄를 짓자 공자께서 ‘나의 무리가 아니니, 애들아! 복을 쳐 그를 성토하라.’ 하셨으니, 《논어(論語)》, 〈선진(先進)〉 대개 성인의 문하에는 도술(道術)에 정진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여 사적(私的)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의 죄과가 염구보다 훨씬 큰데도 우리 전하께서 이미 한번 용서해주시고 한번 가르쳐주시며, 차마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거두어주셨습니다. 오랑캐가 된 것을 아시고는 화하(華夏)가 되게 할 것을 생각하시고, 죽게 된 것을 아시고는 살게 할 것을 생각하시어 돌봐주고 구원해주시느라 거듭 성력(聲力)을 소비하여 비호하고 용인하여 회개하기를 바라시니, 우리 부모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처럼 할 수 있었습니까. 신은 마땅히 간을 갈라 피를 토하고 땅에 고꾸라져 죽음으로써 일세(一世)에 이 은혜를 밝히고 만세(萬歲)에 이 마음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불결한 티끌이나 뒤집어쓰고 구차하게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잔뜩 움츠리고 살금살금 눈치나 보고 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이 소위 양학(洋學)에 대해서 일찍이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았다는 것이 어찌 바로 죄가 되었습니까. 말을 박절하게 하지 않으려 해서 ‘책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참으로 책만 보는 데서 그쳤다면 어찌 바로 죄가 되었습니까. 대개 일찍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사모했으며,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원(本源)의 마음자리가, 기쁨이 스며들고 물이 젖어들어 뿌리가 튼튼히 박히고 가지가 얼기설기 뻗어나가는 것 같아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체가 이지러지고 본령(本領)이 그릇되었으니, 그 스며든 것의 깊고 얕음과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더디고 빠름은 거론할 것이 못 됩니다. 비록 그러하나 증자(曾子, 기원전 505~기원전 435)가 말하기를 ‘내가 바른 것을 얻어 죽으면 그만이다.’ 했으니, 신도 바른 것을 얻어 죽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로써 자신을 밝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신은 실상 팔구 년 전에 마땅히 벌을 받았을 것인데, 다행히 전하의 비호를 받아 형관(刑官)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 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마치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재작년 7월에 특별히 성지(聖旨)를 입어서 호서(湖西) 지방의 역(驛)으로 외직에 보임되었을 적에, 오히려 ‘늦었도다, 어찌 그리도 가볍게 처벌하시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손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받들고 눈물을 뿌리며 성을 나갈 적에 자자구구(字字句句)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말씀을 걸음걸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비방을 받아 구덩이에 묻힐 날이 임박했을 적에 성지(聖旨)를 내려 도리어 저의 문장(文章)을 논하셨고, 신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성지를 내려 글씨 모양만 닦하셨으니, 어찌 그리도 신을 아껴 은혜로우신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신단 말입니까. 신의 형이 대책(對策)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적에도 앞서 이미 10행(行)의 윤음(輪音)으로써 밝게 풀어주셨으며, 또한 신을 꾸짖는 교지에서도 단지 ‘그대의 형은 죄가 없다.’라고만 하셨으니, 전하의 이러한 한 말씀이 신의 형제를 살렸습니다. 신과 신의 형은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이 호서 지방의 역에 이르러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명(淸明)함으로 만드시 몸과 마음을 점검하여, 오랫동안 고치고 고쳤으나 오히려 깨끗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진실하게 누우셨으나 이미 잡초가 무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선단(善端)을 힘써 길러 우리 전하께서 훈도(薰陶)해주시고 생성(生成)시켜주시는 지극한 어지심과 큰 덕에 부합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한 시골의 훌륭한 선비를 구해 서로 더불어 질의(質疑)하고 논란하면서 성현(聖賢)의 글을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생각해보건대, 신의 행실이 조금은 진전된 바가 있어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기뻐했으니, 이것이 누구의 덕택이겠습니까. 신이 스스로 생각하니 평생의 큰 은혜가 금정(金井)행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한 해도 넘기기 전에 용서를 받아 살아서 한강을 건너 도성 안에 온전히 살게 되었으니, 살아도 여원이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신은 구렁에 처박혀 다시는 밝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난겨울 갑자기 은혜로우신 부름을 받아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대궐문을 다시 들어와 가까운 곳에서 모시게 되어 교정(校正)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금빛 휘황찬란한 등불은 꿈속과 같았으며, 내주(內廚)에서 내려주시는 진수성찬은 으르르리하게 호화로웠습니다. 마침내 더럽혀진 몸으로 맑고 근엄한 자리에서 진대(進對: 임금 앞에 나아가 물음에 답하는 것)하게 되었을 때 용안(龍顏)을 활짝 펴시고 옥음(玉音)을 부드럽게 하시므로 멀리 떨어져 있던 끝에 충정(衷情)이 갑자기 복받쳐 비 오 듯 눈물을 흘리며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조(騎曹: 병조의 별칭)에 특별히 제수되고 은대(銀臺: 승정원의 별칭)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은 비록 우리 전하의 지극한 은혜와 넓은 보살핌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신의 신상에 있어서는 실상 좋은 소식이 아닌 듯싶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곡진히 보전시켜주시려는 생각을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십니까? 신하로서의 도리로써 헤아려본다면 마땅히 양양(揚揚)하게 숙배(肅拜)하지 못할 일이고, 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어찌 감히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수되자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평인(平人)과 같지만 실정을 생각해 보면 평인과 같지 않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은 남들이 비방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 제수하는 명이 있으면 주저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신이 삼가 생각해 보건대, 어찌 다른 사람들의 참조하는 말이 없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덮어두시고 귀로는 그와 같은 말이 있다는 것을 환히 아시면서도 다행히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신이 실제로 이 점을 부끄럽게 여겨 곧바로 소(疏)를 올려 자신을 인척(引責)했어야 하지만, 책을 교정하고 시험을 주관하느라 주선(周旋)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체직(遞職)되고 보니, 다만 스스로 부끄럽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또 제수하는 교지를 받들게 되니, 보잘것없는 미천한 정성을 비로소 모두 다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해 건대, 천도(天道)는 가득 차는 것을 꺼려하고 인정(人情)은 굽히는 것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신이 오래도록 침체되고 막힌다면, 사람들은 ‘아무개는 실상 사악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해(害)를 입고 폐(廢)해짐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가련한 일이다.’라고 할 것이니, 이것이 신에게 있어서는 복이요 경사이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이 옛날처럼 날아오른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개는 옛날 사악한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이 좋은 벼슬을 하니, 또한 가증스런 일이다.’라고 할 것이니, 이것이 신에게 있어서는 화(禍)요 재앙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신이 조정의 반열에 한번 얼굴을 내밀게 된다면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말하기를 ‘저기 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사교(邪敎)에 빠졌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마주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를 것이니, 신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산속에 모습을 숨김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하여 알지 못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위로는 군부(君父)에게 의심을 받고 아래로는 당세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면, 자신을 세우는 데 한번 실패함으로써 만사(萬事)가 모두 기와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꼴이 될 것이니,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죽어서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은 군부(君父)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매우 극진했습니다. 스스로 그물이나 닢에 걸려 슬피 울부짖을 때에는 손을 잡아당겨 건져 주어 이부자리에 편안히 눕히고는 유행병을 앓는 사람처럼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점차 회복되면 다시 한 번 변괴를 치러 돌 밑에 깔린 죽순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마니, 이것이 아마도 신의 기구한 운명이며 처량하고 야박한 복분(福分)인가 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 전하께서 명을 내리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신을 불쌍히 여겨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살피 거두어주셨으나, 매번 한 가지 일의 발달에 문득 한 가지 허물을 받게 되니, 꿈에도 생각이 미치지 전에 먼저 명에 손상되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앉아서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에 이미 경험을 했으니, 뒤인들 어찌 후시나 다르겠습니까. 신은 차라리 한번 폐출되어 때로는 굽히고 때로는 펴서 부질없이 은혜만 너무 욕되게 하여 죄를 더욱 무겁게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자(朱子, 1130~1200, 호:晦庵)가 노덕장(路德章)에게 경계하기를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닦하지 말며 속으로 연마하여 만년(晩年)의 절개를 지키는 데에 힘쓰라.’라고 했으니, 신이 비록 불민(不敏)하오나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할 일은 오직 경전(經傳)에 잠심(潛心)하여

만년의 보답을 도모함이니, 영달의 길에서 자취를 멀리하여 자정(自靖)하는 뜻을 본받고자 합니다.”

1798년(正祖 22, 戊午), 37세 4월에 《사기찬주(史記纂註)》를 올렸다.

이에 앞서 임금이 《사기영선(史記英選)》에 주해(註解)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김이교(金履喬, 1764~1832)·김이재(金履載, 1767~1847)·홍수만(洪秀晚, 1759~?)·서준보(徐俊輔, 1770~1856) 등에게 찬주(纂註)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완성이 되어 진상했는데, 임금이 그것의 번잡함을 꺼려하여 번잡한 것을 깎아 내고 요점만 간추리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해에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임금이 이르기를 “곡산은 한가한 읍이니, 그곳에 가거든 찬주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이때에 이르러 주(註)가 완성되었으므로 각신(閣臣) 이만수(李晩秀, 1752~1820)를 통해서 올렸다. 올린 뒤 임금의 답보(答報)가 왔는데, “글로 올린 것이 뜻에 적합하니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했다.

겨울에 본부(本府)의 좁쌀을 돈으로 바꾸어 올리라는 영(令)을 철회해 주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장계(狀啓, 關西小米不得作錢事狀)는 다음과 같다. “경술년(1790, 정조 14)에 본부(本府)로 옮겨 놓은 관서(關西) 지방의 좁쌀과 관동(關東) 지방의 콩에 대한 8년 치의 모조(耗條: 쥐와 참새 등으로 인한 곡식 손실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관고(官庫)에서 빌려 준 곡식의 1/10 분량을 백성들에게 추가로 받던 것)를 한결같이 상정례(詳定例: 나라의 제도 또는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세액·공물액 등을 심사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부 돈으로 바꾸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신(使臣)이 마땅히 비변사(備邊司)의 공문대로 거행해야 할 것이나, 다만 금년 농사의 작황이나 오늘날 민정(民情)을 참작해 보건대 참으로 행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가가 지극히 쇠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가(市價)가 너무 헐값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돈의 액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본부로부터 환곡을 받은 집이 역(驛)·진(鎭)을 제외하고도 3,540호가 되지만, 사방의 길이 교차되는 지점인지라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무리들과 통나무집이나 토굴 속에서 화전(火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백성들은 참으로 한 푼의 돈도 손수 마련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민가가 지극히 쇠잔하다는 것입니다. 금년 농사가 목화는 비록 큰 흉작이지만 기장·피·콩·팥 등은 모두 풍작입니다. 좁쌀 한 섬의 값이 2냥 7전에 불과하고, 콩 한 섬 값이 1냥 1전에 불과하니, 이도 또한 되나 말로 소소하게 매매를 할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 4천 7백 섬의 곡식을 한 고을 안에 내어 판다면, 비록 그 값을 절반이나 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부는 두메산골 외진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본래 장사꾼이 모여드는 곳도, 배나 수레가 왕래하는 곳도 아닙니다. 끝이 없는 푸른 산에 바람 부는 대로 불을 놓아 화전을 일구어서 집집마다 곡식을 비축하여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니, 관에 있는 곡식을 내어 팔아야 하는가, 팔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애당초 의논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가 너무 헐값이라는 점입니다. 좁쌀은 모조를 통틀어 대략 3,935섬이고, 콩은 모조를 통틀어 806섬입니다. 지난해 관찰사가 보낸 공문 중 호조(戶曹)의 상정례에는 좁쌀이 1섬에 4냥, 콩은 1섬에 2냥 5전이었으니, 모두 합한 금액이 1만 7,755냥이 됩니다. 집집마다 배당을 하면 각 가구마다 내야 할 돈이 5냥 1푼이 됩니다. 시가대로는 하자면 한 가구당 1냥 7전 6푼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본부에서 올हे는 이미 곡식을 매출할 형편이 못되니, 쌀이나 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5냥 1푼의 돈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돈의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민가에서 한두 푼만 거두어들여도 물 끓듯이 사람들이 떠들어 대는데, 하물며 5냥 1푼의 돈을 갑자기 영(令)을 내려 기한 내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짐을 꾸려 집을 비우고 도망갈 것입니다. 거북 등에서 어떻게 털을 뽑을 것이며, 토끼 머리에서 어떻게 뿔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 달 전에 병영(兵營)의 공문대로 돈으로 바꿀 장용영(壯勇營)의 모곡 600여 섬을 민가에 분배했던바, 시가보다 더 내야 할 돈이 1섬당 1전 5푼에 불과했는데도 백성은 떠들썩하게 호소하며 방보(防報: 상급관청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변명하여 올리는 보고)를 원했거늘, 하물며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금년에 부사가 특별히 독촉하여 조와 콩을 갖다 바친 것이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만약 민간에 또다시 나누어주고 돈으로 내라고 한다면 중간에 손실됨이 많아 백성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니, 이리저리 참작해보아도 지금 돈으로 바꾸라

는 것은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중앙 관청에 보고하여 부민(府民)의 시급한 문제를 구해주소서.” 관찰사에게 보고되자 관찰사는 비변사로 이첩했다. 이에 비당(備堂: 備邊司의 통정대부 이상의 堂上官)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기를,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기강(紀綱)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근일에 기강이 해이해져서 시종신(侍從臣)으로 외직에 나가 수령이 된 자들이 조정의 공사(公事)에 대해서 한결같이 방보를 일삼으니, 이런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명령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기강은 날로 문란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곡산 부사를 우선 파직시키고 거두어 둔 조·콩을 전부 돈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소서.”라 했다. 임금이 “곡산 부사가 보고한 장계를 가져오라.”라고 하고, 다 읽은 다음 하교하기를 “옛적에 재물을 맡은 신하는 팔도의 시가를 두루 알아서 매양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지방에다 곡식을 꾸어 주고 돈으로 거두어들였으니, 백성과 국가가 모두 넉넉하게 되었다. 지금 경은 반드시 크게 풍년이 든 지역에 나가더라도 제대로 행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도리어 수령을 논죄하려고 하니,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시종신 출신의 수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전심(專心)으로 숨겨진 일들을 살피면서도 상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명령을 받들어 행하기를 오직 삼가서, 쇠잔한 음관(陰官)이나 냉정한 무관(武官)과 같이 한다면 무엇 때문에 시종신을 임명했겠는가. 경의 말은 매우 이치에 어긋나니 의당 추고(推考: 심문하여 내용을 따지는 것)를 해야겠지만, 중신(重臣)이 수령 한 사람을 논핵했다고 해서 도리어 추고를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치와 체면이 아닐 것이므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경이 아뢴 것을 불문에 붙일 것이니, 곡산부에 있는 쏘밭·콩을 돈으로 바꾸어 내라는 일을 즉시 철회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라.”라고 했다(승정원에서 등사해 보내기를 이와 같이 했다. -원주).

이해에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어 면포가 더욱 귀했다. 이에 중국 사신 접대를 위한 예비비(勅需錢)와 관원의 보수(官俸錢) 2천여냥을 내어 패서(溟西: 평안도) 지방에서 면포를 사들여 서울로 납부하는 데 충당하고, 그 값을 백성들에게서 징수하여 갚았다. 백성에게 징수한 것이 모두 200냥에 불과하니, 백성들이 송아지 한 마리씩 얻었다고 생각했다. 군포(軍布)는 백성들로 하여금 관청의 뜰에 들어와 친히 바치게 했다. 아전이 낙인척(烙印尺)을 가져왔는데, 그자를 보니 너무 길었다. 이에 오례의도척(五禮儀圖尺)을 가져다 비교해보니, 차이가 2치나 되었다. <오례의도(五禮儀圖)>에 의거하여 자를 만들어서 백성의 군포를 받으니, 군역(軍役)을 진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또 호적을 재작성할 때가 당도하자 칩기부(砵基簿: 농지나 주거지를 기록한 장부)를 가져다가 종횡표(縱橫表)를 만들고 또 지도를 만들고 경위선(經緯線)을 그려 넣어서 백성의 허실과 강약, 땅의 넓고 좁음과 멀고 가까움을 두루 알 수 있도록 했다(一기좌부). 수령이 스스로 신중성 있게 넉넉한 마음은 호수(戶數)를 늘리고 쇠잔한 마음은 호수를 줄여 적감(籍監)·적색(籍色)·적헌(籍憲) [호적의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관원의 규정을 없앴. 대체로 늘리고 줄인 것이 모두 실정에 맞았으므로 며칠이 안 돼서 호적을 조사한 문서가 일제히 도착했고 호소하는 백성이 없었다. 뇌물을 갖다주고 호수를 줄이는 폐단도 없어지게 되니, 쇠잔한 백성이 은덕을 입게 되었다. 해마다 장정을 군적에 올릴(簽丁) 때가 이르면 그 고을의 갑족(甲族)에게 매년 천거하여 보고하게 했는데, 공이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추천한 사람이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사람들이면 곧 나무라기를, “아무개는 새로 모군(某郡)에서 왔으며 흠아비인데다가 절름발이인데, 무엇 때문에 군포를 내게 한단 말이나.” 했다. 그 고을의 갑족이 깜짝 놀라 반드시 먹고살 만한 밑천이 있는 자로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흠아비나 가난한 백성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1799년(正祖 23, 己未), 38세 2월에 황주 영위사(黃州迎慰使)로 임명하는 교지를 받았다.

정월에 청나라 고종황제(高宗皇帝=乾隆帝, 재위 1735~1795)가 붕어하여 칙사가 왔으므로 호조 참관의 임시 직함을 가지고 칙사 일행을 맞이했다.

이에 앞서 서로(西路: 평안도와 황해도)에 감기가 크게 번져 걸리면 노인들은 반드시 죽었다. 공도 이 병을 앓았다. 갑자기 잠자리에서 생각하니 이 병이 의주(義州)로부터 감염되어 왔으니 반드시 중국으로부터 온 듯했다. 황제가 나이가 많았던 터이라 칙사의 행차가 있을 법했다. 곧 칙수도감(勅需都監) 한성일(韓聖一, ?~?)을 불러 “만약 칙사의 행차가 있다면 가장 근심할 만한 것이 어떤 일인가?”라고 물으니, 한성일이 답하기를 “포진(舖陳: 바닥에 까는 돗자리)입니다. 황해도[海

西 지방에서는 오직 배천(白川: 현재 황해도 연백 지역)의 강서사(江西寺)에서만 용수석(龍鬚席)이 생산되는데, 매년 칙사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온 도(道)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어 먼저 문지방에 들어선 자리아 그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곡산에서 배천까지의 거리가 300리이니, 여러 군(郡)에 비교해보더라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말이 빠른 자들에게 빼앗겨 순영(巡營)·병영(兵營)·어사(御使)·중사(中使)·원접사(遠接使)·접위관(接慰官) 등이 본부를 논책했는데, 그동안 실패한 일들이 모두 포진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곧바로 아전을 정해 강서사에서 용수석을 사오도록 당일 출발시켰다. 용수석을 사가지고 평산부(平山府: 황해도 중동부에 위치한 지역)에 당도했을 때 칙사가 온다는 기별이 왔다. 아전과 백성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칙사를 맞이하는 일이 이 때문에 낭패가 없었다.

이때에 감사(조윤대(曹允大, 1748~1813)이다.)가 부임했기에 황주 병사(黃州兵使)(정학경(鄭學耕, ?~?)이다.)이 신임 감사를 맞이하는 예(延命)를 행하려고 하니 감사가 비장(裨將)으로 하여금 대신 맞이하게 하므로 병사가 연명하려고 하지 않아 서로 며칠간을 버티었다. 감사가 장계(狀啓)를 올려 파직시키려 하자, 공이 들어가 감사를 만나 말하기를 “사상(使相: 덕망 있는 전직 宰相으로 감사의 벼슬을 겸한 사람)께서 장계를 올려 병사를 파직시키려 하신다니 사실입니까?”라고 하니, 감사가 “그렇소”라고 했다. 공이 “원수(元帥)가 부원수(副元帥)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 감사가 “그렇소”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는 이소(李愬, 773~820: 중국 唐나라 때의 武將으로 淮西를 평정시켰으며 여러 곳의 절도사를 역임했다.)와 같은 사상은 배도(裴度, 765~839: 중국 唐나라 때 宰相으로 淮西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晉國公에 봉해진 인물)와 같습니다. 이소가 무장을 갖추고 길 원편에서 맞이하는데 배도는 비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한다면 이치에 맞겠습니까. 비록 현령(縣令)이나 역승(驛丞)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달게 여기지 아니하면 사상께서 장계를 올려 파직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곧고 우리는 굽은 상태이니, 그만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감사가 크게 깨닫고 말을 달려 마침내 친히 연명을 받았으니, 병사가 무사하게 된 것은 공의 힘이었다.

3월에 본도(本道)를 감찰하라는 밀지(密旨)를 받았다. 이때에 공이 황주 영위사가 되어 황주에서 50일간 머물렀다. 임금이 비밀히 유시(諭示)하여 도내 수령들의 잘잘못을 감찰하게 했다. 이에 앞서 도내에 두 건의 옥사(獄事)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밀히 아뢰었기에 임금이 감사에게 유시하여 조사하게 했다. 감사 이의준(李義駿, 1738~1798)이 곡산 부사를 차출하여 조사를 시켜 두 건의 옥사가 해결되었다.

4월 24일, 내직으로 옮겨져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제수되었다. 상경 도중인 5월 초4일에 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제수 받고 부호군(副護軍)에 옮겨졌다. 입성(入城)한 초5일에 또 다시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다. 형조에 제수된 뒤 입시(入侍)하라는 독촉이 있었다. 입시하니 하교하기를, “애당초 올가을을 기다려 소환하려 했는데, 마침 큰 가뭄이 들어 여러 가지 옥사를 심리하고자 하여 불렀다. 내가 황해도에서 일어난 의심스러운 옥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그대의 장계(狀啓)를 보니, 그 글이 매우 명백하고 절실했다. 뜻하지 않게 글하는 선비가 옥리(獄吏)의 일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곧 불러들였다.”라고 하고, 판서 조상진(趙尙鎭, 1740~1820)을 돌아보며 “경은 단지 배개를 높이 베고 참의(參議)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하루는 황혼녘에 특별히 불러 중희당(重熙堂)으로 입대(入對)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부른 것은 형조의 일 때문이 아니다. 이제 황해도에서 왔으니 본도(本道) 읍의 폐단과 백성이 고질로 여기고 있는 점을 소상하게 말하라.”라고 했다. 이에 칙사를 접대하는 일과 둔전(屯田)에 있는 소[牛]의 일을 얘기하여 모두 윤희를 받았다. 그밖에 한담한 것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니, 밤이 이미 3경이었다.

지척문서(支勅文書: 중국 사신의 접대에 든 비용을 기록한 문서)를 마감하면서 올린 장계(〈論支勅勘薄事啓〉)는 다음과 같다. “신이 지척문서를 마감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황해도의 지척문서를 방금 마감했는데, 무신년(1788, 정조 12)에 정한 규례(規例)는 소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의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읍에서 문서를 마감할 때에 들쭉날쭉한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병진년(1796, 정조 20) 칙사가 온다는 기

별이 있었을 때, 응당 제공해야 할 각종 물품을 각 읍에서 두루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칙사의 행차가 떠난 후 오직 단청(丹青)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대략 증감하여 허락해주고, 그 나머지 각양각색의 온갖 물자는 단지 감영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고 중앙 조정에서 마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각 읍의 회계상에 올라가 있는 칙수전은 명목상의 숫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병진년에 마련해두었던 물자도 이번 중국 사신 접대(支餉)에는 대부분 쓸 수 없는 것이고, 비용 장부(下訃)를 다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감영과 각 읍 간에 서로 비용을 떠넘기려고 신경전을 펴 적절한 수준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정한 규제 중 각 읍에 한 차례의 칙수전으로 배정된 숫자는 기왕의 예를 참작하여 배당한 것으로 압니다. 일의 형편으로 헤아려 본다면 배당을 해준 뒤에는 감영에서 그것의 출입(出入)을 묻지 않는 것이 참으로 명령을 신뢰하도록 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번 지척 때에는 다담(茶談: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차리는 음식) 등 물자를 비록 삭제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정확한지의 여부를 구별하여 절반 혹은 3분의 1을 회감(會減: 주고받을 것을 상쇄하고 남은 것을 계산하는 것)한다면 삭제하는 수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진년에 마감하지 못한 장부는 이것으로써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각 읍의 지척문서는 감영에서 마감하든 중앙 조정에서 마감하든 모두 거론하지 말고 단지 정해진 규례에 따라 배당된 원금대로 전체의 액수를 회감할 것이며, 설사 약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각 읍에 있어서는 참으로 간편하고 폐단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감히 이처럼 번거롭게 진술합니다.”

초도 둔우(椒島屯牛)의 일을 논한 계(〈論椒島屯牛事啓〉)는 다음과 같다. “신이 황해도에 있을 당시 초도(椒島: 현재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에 속하는 섬)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농사를 돕기 위해 소를 지급한 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므로 감히 이에 그 내용을 아뢰입니다. 당초 진(鎭)을 설치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백성을 모집하여 소 몇 마리를 지급해 주고서 번식시키도록 했습니다. 중년(中年) 이후로 사복시(司僕寺)로부터 암소의 수를 계산하여 송아지를 징수했는데, 해마다 숫자를 늘려 한 마리당 15냥씩 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갑진년(1784, 정조 8) 겨울에 우안(牛案)에 기록된 숫자가 47마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우안에 등록된 숫자가 221마리로 늘어나, 섬 주민 11명 밑에 배당하여 한 사람당 소 23, 4마리씩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섬주민이 한 명도 생존한 사람이 없었고, 한 마리 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징수하고 친족에게서 징수하는 사태가 육지에까지 만연되었습니다. 장연(長淵)·풍천(豊川) 지방의 백성이 곤욕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우보(牛譜)를 작성하여 매번 관청에 들어가 소문제를 송사할 적에, 심지어 ‘모갑(某甲)의 소는 모을(某乙)의 소와 사실 이종간(姨從間)이 된다.’라고 하고, 혹 ‘모을(某乙)의 소가 모갑(某甲)의 소에게는 사실 생질(甥姪)이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니, 듣고 판결하는 사람이 놀라고 의혹하기도 했으며 원망과 비방이 물 끓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이의준(李義駿)이 스스로 돈 수천 냥을 마련하여 섬 전체의 소 값을 갚아주려고 했지만, 뜻만 있었지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해당 부서에 하문(下問)하여 보시고, 또 해당 도(道)에 다녀오게 하여 연구히 이와 같은 폐단을 개혁한다면 단지 한 섬만이 은택을 입는 것이 아니요, 해서 연안의 여러 읍의 백성까지도 만연되어 오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덕왕후(神德王后, ?~1396) 강씨(康氏)(太祖 李成桂의 둘째 妃)의 본궁(本宮)에 대한 일을 진술하여 특별히 비(碑)를 세우고 각(闕)을 건립하라는 하교를 받았다.

상주(上奏, 〈神德王后康氏谷山本宮形止啓〉)는 다음과 같다. “곡산부에서 동쪽으로 5리쯤 떨어진 곳에 당저(塘底) 또는 궁허(宮墟)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돌기둥 한 쌍이 있는데, 옛날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신덕왕후 본궁’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용봉(龍峯)이 있고, 앞에는 용연(龍淵)이 있는데, 지세(地勢)가 보통과 다릅니다. 옛 노인들이 말하기를 ‘태조대 왕이 영흥(永興, 현재 함경남도 영흥)으로부터 개성(松京)을 왕래할 때 이 시내에 이르러 갈증이 매우 심했는데, 이때 왕후가 마침 시냇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태조가 물을 청하므로 왕후가 물을 한 바가지 떠 그 위에다 버들잎을 띄워 드렸습니다. 태조가 노하니, 왕후가 ‘급히 마시면 숨이 막힐까 염려되어 그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태조가 그 말을 기특하

게 여겨, 마침내 예를 갖추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곡산 북쪽 80리에 있는 가람산(尙嵐山) 남쪽에 치도(馳道: 임금이 거동하는 길)가 몇 리에 걸쳐 산꼭대기로 나 있는데, 그 고장 사람들이 그곳을 치마곡(馳馬谷)이라고 부릅니다. 그 북쪽에 태조성(太祖城)이 있는데, 옛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태조가 일찍이 이 산에서 말을 달리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익혔다.'라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신덕왕후의 본적은 곡산이요, 친정아버지는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윤성(康允成, ?~?)인데 상산(象山)은 바로 곡산의 별명입니다. 또한 함흥·영흥으로부터 개성(松都)으로 가려면 곡산은 실로 곧바로 가는 길이며 지름길이 됩니다. 대체로 고원(高原)으로부터 서쪽으로 양덕(陽德)을 거쳐 남쪽으로 곡산을 경유하게 되면 노정(路程)이 가장 가까우니, 옛 노인들의 말이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돌기둥이 궁가(宮家)의 물건이 아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이의준(李義駿, 1738~1798)도 친히 그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보고 '유적이 분명하나 문헌(文獻)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 경연 석상에서 상주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장계(狀啓)로 아뢰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버들잎을 바가지에 띄워 드렸다는 사실은 야사(野史)에 두루 실려 있으나, 이 산골 사람들은 야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니, 당시부터 전해오는 옛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릉(貞陵: 神德王后 康氏의 陵)의 일에 대해 추모함이 있어야 합당한 것이 온릉(溫陵: 中宗의 妃 端敬王后 慎氏의 陵)의 일과 흡사합니다(神德王后와 端敬王后는 다 같이 廢位되었다가 후에 복위되었다.). 이곳은 또한 태조께서 왕업을 일으킨 사적과 연관이 있는 곳이니, 돌기둥의 곁에다 비(碑)를 세우고 각(閣)을 세워 택리(宅里)를 표하는 것이 밝게 다스려지는 시대의 융성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릉(貞陵)께서 태어나신 날은 6월 14일이고, 제삿날은 8월 13일이니, 이때에 전하께서 하문(下問)하신 것도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옥사를 심리하는 데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을 판결하여 종합적으로 밝히니, 매번 칭찬을 받았다. 이때에 호조의 아전 이창린(李昌麟, ?~?)이란 자가 거짓으로 하교를 전하고 공금을 도둑질했다. 임금이 다른 아전에게까지 죄를 나누어 주려고 하니, 공이 극구 항변하며 자기 주장을 고집하여 끝내 이겼다. 공이 아뢰기를 “소식(蘇軾, 1037~1101, 호: 東坡)의 말에 ‘요(堯)임금이 용서하라고 3번 말했으나, 고요(皋陶)는 ‘죽여야 합니다.’라고 세 번 말했다.’ 하니, 신이 진실로 고요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전하께서야 어찌 요임금보다 못하지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는 경(經)의 뜻으로 옥사를 결단하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서울의 죄수 함봉련(咸奉連, ?~?)이란 자가 살인 사건의 정범(正犯)이 되어 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임금이 “의심스러운 옥사이니 자세히 살펴서 논계(論啓)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공이 처음 조사한 문서를 가져다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봉련이 억울하게 갇혀 있음을 극구 천명하니, 임금이 그날로 즉시 봉련을 무죄 석방하고 그 문서를 불태워버리도록 했다. 봉련이 대로(大路)에서 칼(劊)을 벗고 춤을 추며 돌아갔다.

신저실(申著實, ?~?)이란 황주(黃州: 현재 황해도 황주군)의 백성이 돈 2전 때문에 사람을 밀어붙이고 지겟작대기 끝으로 항문을 찢어 죽였다. 그 사건을 조사한 관리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공이 상주하기를, “이번 일은 공교롭게 일어난 일이니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했다. 며칠 뒤에 임금이 특별히 판결하여, “지극히 조그만 것이 항문이고 지극히 뾰족한 것이 지겟작대기 끝이니, 지극히 조그만 구멍을 지극히 뾰족한 끝으로 찢른 일은 천하에 지극히 우연한 일이다.”라고 하여, 황저실은 마침내 정상이 참작되어 풀려나게 되었다.

6월에 대언(臺言: 司憲府나 司諫院에서 상주한 말)으로 인하여 상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체임(遞任)해 주기를 빌었다. 이때에 임금의 돌보아주심이 한창 융성할 때인지라 여러 번 부름을 받고 입대(入對)하여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대사간(大司諫) 신현조(申獻朝, 1752~1789)가 계청(啓請)하기를 “아무개 아무개 등의 죄상을 조사하여 다스리십시오.”라 했는데, 손암공(巽菴公=정약전(丁若銓, 1758~1816, 호: 巽菴)도 그중에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상주(上奏)가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체차(遞差)하도록 명했으나 관보(朝綱)에는 내지 않았다. 공이 처음에 그 일을 알지 못하고 평상시와 같이 형조의 자기 자리로 출근했다가, 그다음 날 비로소 그 얘기를 듣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민명혁(閔命赫, 1753~1818)이

혐의를 무릅쓰고 벼슬살이하고 있다는 소(疏)를 올려 공을 배척했다. 공이 이에 상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부름을 어겼다.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체차될 수 있었다.

소(《辭刑曹參議疏》)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마땅히 벼슬에 나갈 생각을 말았어야 했는데, 벼슬살이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남의 미움을 받은 것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위태하고 불안한 지경에 이르러야 말았습니다. 조정에 선 지 11년 동안 두루 여러 직책을 거치는 사이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스스로 취한 것이요, 둘도 스스로 취한 것이니, 어찌 감히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남을 허물하여 거듭 그물이나 함정 속으로 자신을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이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는 것은, 신과 같이 더러운 자를 전하께서 비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신과 같이 곤궁한 자를 전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감싸주시며, 혹시라도 갈고 닦아 훌륭한 인재로 양성되기를 바라셨으니, 어찌 신의 운명이 기구하고 박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토끼가 그물에 걸린 것 같고 새가 그물에 걸린 듯하여 부질없이 성념(聖念)만 수고롭게 헤드리다가 끝내는 커다란 허물을 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매번 이 일을 가지고 해마다 지루하고 번거롭게 배척이니 변명이니 하여 어지럽게 떠들어들었습니다. 비록 천지와 같은 어지심과 부모와 같은 자애로도 어찌 손을 저어 물리쳐, 건져주는 수고를 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은 밤새도록 뒤척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적십니다. 신이 일전에 헌납(獻納, 사간원(司諫院)의 정오품(正五品) 관직) 민명혁의 상소를 보았는데, 신의 형의 이름이 대사간 신헌조의 계사(啓辭)에 언급된 것을 들먹이면서 신에게 편안하고 태연히 의기양양하게 공무(公務)를 행하고 있다고 논죄했습니다. 아! 신의 의(義)에 처신하고 있는 점은 일단 놔두고라도 신의 형은 참으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 오직 신과 같은 불초하고 불품없는 놈이 아우가 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리 전하께서 신을 꾸중하신 교지에 단지 ‘죄 없는 그대의 형이 어찌하여 소장(疏章)에 올랐겠는가.’라고만 하셨으니, 그때의 열 줄의 은혜로우신 말씀은 맑고 명백하기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신은 오직 장엄하게 외며 감축(感祝)하면서 안고 황천으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붓과 입을 수고롭게 하여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아! 신의 형은 벼슬한 지 10년에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 없이 지금은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그 이름 석 자도 조정에서 잘 모르는데, 무슨 증오가 맺혀 있길래 이다지도 야단들입니까. 그 뜻은 신을 조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데 불과합니다. 신의 속마음은 이미 정사년(1797, 정조 21)의 상소(이른바 ‘自明疏’라고 하는 《변방사동부승지소》를 말함)에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의 분수는 본래 지나간 허물을 왜곡하여 숨기고 무턱대고 영달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신을 내쫓고 벼슬길을 막아 다시는 조정의 반열에 발을 못 붙이게 하신다면, 명분은 바로 서고 언론은 순하게 될 것이며, 일은 간결해지면서도 공은 빠를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어찌 반드시 꾸불꾸불 굴곡을 이루며 별도로 층을 만들어 이와 같이 고생을 하면서 우원하게 지내겠습니까. 아! 동생이 배척을 받으면 형이 막힐 것이고 형이 배척을 받으면 동생이 막힐 것이니, 일거양득이며 이해가 공평할 것인데, 어찌 그 가운데 나아가서 옥석(玉石)을 구별하여 이치에 맞는 말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막론하고 상참(常參: 議政大臣을 비롯한 重臣: 侍從臣들이 매일 편전에서 임금에게 국무를 아뢰는 일)이나 경연 석상에서 오고 간 말을 신이 만약 진작 들었다면 신은 황송하고 위축되어 참으로 대신(臺臣)의 말과 같이 응당 자정(自靖: 어지러운 현실을 스스로 떠나 고요히 은거함)하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연 석상에 나아갔던 여러 신하들이 어느 한 사람도 신을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비록 실사수천만 인이 여기저기서 모함을 하여 경각(頃刻)에 죽인다고 하더라도 수차 경연에 참석했던 신하들 중에서 신의 집으로 통보해주어 죽는 이유나 알고 죽게 하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령 이곳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골육 친척이 막 함정에 빠지려고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에게 말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알지 못하고 한창 놀이에 빠져 저 혼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알고 있는 어진 군자는 이치상 마땅히 측은히 여겨야 할 것인데 차마 또 죄까지 주겠습니까. 상참이 있는 지 며칠 뒤 과연 알쏭달쏭 분명하지 않은 말이 점차 신의 귀에 들렸으나, 당장 문적(文蹟)이 없어서 의(義)를 내세워 인책(引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

행히 실제로 마침 병이 나서 다시 공석(公席)에 나가지 못했으니, 의기양양하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뜻합니다. 신은 구차하게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영화와 녹(祿)을 구하고자 하지 않으며, 또한 높고 멀리 피하여 관직에서 급히 벗어나고자 하는 자도 아닙니다. 대체로 한평생의 허물을 스스로 당세에 밝혀 일세의 공의(公議)에 따라 세상이 과연 용납을 하면 구차하게 떠나지 않고, 세상이 용납을 하지 않으면 구차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추세를 보니, 용납하지 않을 뿐이 아니요, 한 가문을 아울러 연루하려고 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신은 단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될 뿐 만이 아니요, 가문에 있어서도 패역한 동생이 될 것이니, 신이 어찌 차마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이제 나아가도 의지할 곳이 없고, 물러나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만 신이 태어나서 자란 시골은 강과 호수, 새와 물고기 등 자연의 경관이 성정(性情)을 도야(陶冶)할 만하니, 천한 백성과 함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전원에서 여생을 쉬며 보양하고 성스런 임금님의 은택을 노래한다면, 신에게는 남의 표적에 들 염려가 없고 세상에는 눈의 가시를 뽑은 기쁨이 있으니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관직은 다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빨리 신의 직명(職名)을 삭탈하도록 명하시고, 선부(選部: 吏曹의 별칭)에 영(令)을 내려 사적(仕籍)에 실려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아울러 없애버리게 하소서. 또한 사패(司敗: 刑曹)로 하여금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명(身名)을 더럽힌 신의 죄를 다스리게 하여, 공의를 펴게 하고 제 자신의 뜻대로 자정할 수 있게 해주소서.”

임금이 비답(批答)하기를, “소(疏)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그대는 아무쪼록 사양하지 말고 빨리 직책을 수행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傳敎)하기를 “저 사람들이 한 말은 너무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 한 번의 상소면 충분하다. 패초(牌招: 임금의 비상사태나 야간에 급히 만나야 할 신하가 있을 경우, 승정원에 명하여 패를 써서 긴급하게 하던 제도)하여 형조 참의로 부임하도록 엄중히 신칙하라.” 했다. 7월 26일에 이르러 형조의 좌부좌 단자(坐不坐單子)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헌병(懸病: 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뜻을 기록하는 것)한 참의(參議)의 체직(遞職)을 허락하라.” 했다.

10월에 조화진(趙華鎭, ?~?), <黃嗣永帛書>에는 충청도 內浦 사람이며 천주교의 배교자로 밀고한 사람이라 했으며 <和鎭>으로 되어 있다. 이 무고하기를 “이가환(李家煥, 1742~1801, 호: 貞軒)과 정(丁) 아무개 등이 몰래 서교(西敎→서학)를 주창하며 계도에 벗어난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충청 감사 이태영(李泰永, 1744~?)이 비밀히 상주(上奏)했는데, 임금이 특별히 무고하는 글이라고 보고 감사를 엄히 처분하는 한편 그 무고하는 글을 연신(筵臣)들에게 나누어 보여 각자 환히 알게 했다. 그 무고하는 글 중에는 한영익(韓永益, 1767~?) 부자도 언급되어 있었는데, 임금이 또한 “한영익이 근년에 계동(桂洞)의 일에 대해서 고한 적이 있었으니(한영익이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사건 때 밀고한 일을 말한다), 어찌 그들의 심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것이 무고임을 알겠다.”라고 했다. 연신들이 모두 무고라고 생각했다.

12월에는 특별한 교지에 의해 세서례(洗書禮: 책씻이) 때의 어제시(御製詩)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 이때에 임금이 만 가지 기무(機務)를 살피는 여가에 독서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매번 경서 한 권 읽기를 마칠 때마다 태빈(太嬪)이 음식을 장만하여 세서례를 했는데, 민간의 아동들이 하는 습속을 따랐다. 이해 겨울에 임금이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다 읽었으므로 태빈이 또 이 예(禮)를 베풀었는데, 공이 불리어 들어갔다. 임금이 특별히 어제시를 내려주시며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라고 했다. 이로부터 때때로 규장각의 하급관리를 보내 어떤 때에는 어제(御製)를 써서 올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라고도 했다. 어제시가 한 달에 두세 차례 이르러 끊이지 않고 보내왔다.

이달에 넷째이들 농장(農耕)이 태어났다(어렸을 때의 字이다).

1800년(正祖 24, 庚申), 39세 봄에 공이 전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굳게 결정했다. 이때 공이 더욱 세상살이가 위험하다고 느껴 전원으로 돌아갈 계획을 결단했다. 처자를 거느리고 배로 소천(苕川)의 별장으로 내려갔다. 며칠 뒤 임금이 [공이] 전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각(內閣)에 영을 내려 재촉하는 소명(召命)이 있었다. 공이 부득이 서울로 돌아오니, 임금이 승지를 시켜 유시하기를 “규영부(奎瀛府→규장각)가 이제 춘방(春坊: 시강원의 별칭)이 되었으니, 처소를 정한 뒤에

들어와 교서(校書)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어찌 그대를 버리겠는가.” 했다.

6월 28일 정조선황제(正祖宣皇帝-정조(正祖, 재위 1776.3~ 1800.6))가 승하였다. 공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홍화문(弘化門)에 이르니, 문 앞에 여러 신하들이 서로 더불어 가슴을 치면서 소리조차 못 내며 슬퍼하고 있었다.

《균암만필(筠菴漫筆)》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달 12일 한창 달 밝은 밤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맞아들이고 보니 바로 내각의 서리(胥吏)였다. 《한서선(漢書選)》 10질을 가지고 와서 하교를 전하기를 ‘요즘에 책을 편찬하는 일이 있으니 응당 곧 불러들여야 할 것이나, 주자소(鑄字所)를 새로 개수(改修)하여 벽에 바른 흙이 아직 덜 말라 정결하지 못하니 그믐께쯤이면 들어와 경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 위로함이 매우 지극했다. 또 이르기를 ‘이 책 5질은 남겨서 가전(家傳)의 물건으로 삼도록 하고, 5질은 제목을 써서 도로 들여보내라.’ 했다. 내각 서리가 말하기를, ‘제가 친히 하교를 받들 때에 임금님의 안색과 말씀하시는 어조가 매우 온화하고 매우 그리워하는 듯했습니다. 이 《한서선》에 제목을 쓰라는 것은 아마도 겉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안부를 묻고 회유하시려는 성지(聖旨)가 아닌가 합니다.’라고 했다. 서리가 문을 나간 뒤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으니 오히려 다시 무슨 말을 하리요. 다음 날 임금의 옥체에 병환이 나서 이날에 이르러 끝내 봉어하셨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12일 밤에 특별히 서리를 보내 글을 내려주고 안부를 물으신 것이 바로 영결의 은전(恩典)이었다. 잊지 않고 생각해주심은 12일에 이르러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군신의 의(誦)는 이날 저녁에 영원히 끝나버렸다. 매양 생각이 이곳에 미치면 눈물이 펄펄 쏟아져 옷소매를 적시었다. 곧바로 따라 죽어 지하에서나마 천안(天顏)을 뵈고자 했으나 하지를 못했다. 나는 초야에 묻힌 한미한 족속으로 훈구(勳舊)·별열(閼閼)의 은혜를 입은 바도 없었는데, 성균관에 들어간 이후로 18년간 이루어주시며 훈도(薰陶)해주신 공이 이와 같았다.”

공의 묘지문(墓誌文)에 말했다(壙中本이다). “나는 포의(布衣)로 임금의 알아줍을 맺었으니, 정중대왕께서 총애해주시고 칭찬해주심이 동렬(同列)에서 넘어섰다. 앞뒤로 상을 받고, 서책, 구마(廐馬), 문채 나는 짐승 가죽, 진귀한 여러 물건을 내려주신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기밀에 참여하여 듣도록 허락하시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글로 조목조목 진술하여 올리면 모두 즉석에서 윤택해주셨다. 일찍이 규영부 교서(校書)로 있을 때에는 맡은 일을 가지고 과실을 책망하지 아니했으며, 매일 밤 진수성찬을 내려주어 배불리 먹게 하셨다. 내부(內府)에 비장(秘藏)된 서적을 각감(閣監: 규장각의 잡직의 하나)을 통하여 청해 보도록 허락해주신 것들은 모두 남다른 운수였다.

명(銘)에 이르기를

임금의 총애 한 몸에 안고서

궁궐 안 은밀하게 모시었으니

참으로 임금의 심복이 되어

아침저녁 가까이 섬겼다네.

하늘의 총애 한 몸에 안고서

못난 재주 그나마 깨우침 얻어

육경(六經)의 오묘함 연구했고

미묘한 이치도 해석했노라.

아침하는 무리들 가득 찾으나

하늘이 너를 옥같이 사랑하여

거두어 간직해 숨졌다가는

높이 들어 쓰려고 함이었다네.”

겨울에 졸곡(卒哭)을 지낸 뒤 열수(洌水: 한강의 상류인데, 정약용의 고향을 가리킴)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오직 초하루 보름에만 곡반(哭班: 국상 때 궁중에서 벼슬의 순차에 따라 차례로 열을 지어 곡하는 대열)에 나아갔다. 이때에 목가

(睦哥)·이가(李哥) 등 여러 사람들이 길길이 뛰며 좋아하여 날마다 유언비어와 위태로운 말을 퍼뜨려 당시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며, 심지어는 ‘이가환(李家煥, 1742~1801, 호: 貞軒) 등이 난을 일으켜 사흉(四凶)·팔적(八賊)을 제거하려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사흉·팔적의 명단은 절반은 당시 재상이나 명사(名士)를 들고, 절반은 자기네들 음험한 무리인 홍낙안(洪樂安, 1752~?)·이기경(李基慶, 1756~1819) 등으로 인원을 채워 넣었다. 서로 전하며 선동하여 당시 사람들의 노여움을 격동하게 하니, 화의 기색이 날로 급해지고 징조가 점점 두려워졌다. 공이 이에 소천(蓍川)의 별장으로 돌아가 형제가 한데 모여 날마다 경전을 강(講)하고, 그 당(堂)에 ‘여유(與猶)’라는 편액을 달았다.

또 기(記→여유당기)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자기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남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지만 이미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그만둘 수 있는 것이요, 하고 싶었던 일도 항상 그 일을 하지만 이미 남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병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용기만 있지 무모하며, 선(善)만 좋아하지 가릴 줄을 모르며,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기만 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진실로 마음속으로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로 마음속에 거리끼고 불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둘 수 없었다. 이리므로 어려서 분간을 못할 때에는 일찍이 방외(方外)를 치달리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장성한 뒤에는 과거(科擧)에 빠져 돌아보지 않았으며, 30이 된 뒤에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깊이 늘어놓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리므로 선(善)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비방을 받는 것은 유독 많았다. 아! 이 또한 운명이로다.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 또한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할까 보나. 내가 노자(老子)의 말을 보니, ‘망설이면서(興) 거울에 냇물을 건너는 것같이, 주저하면서(猶) 사망의 이웃을 두려워하는구나.’라고 했다. 아! 이 두 말이 내 병에 약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 거울에 냇물을 건너는 것은 차갑다 못해 따끔따끔하며 뼈를 끊는 듯하니, 부득이하지 않으면 건너지 않는 것이다. 사망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켜보는 것이 몸에 가까우니 비록 매우 부득이하더라도 하지 않는 법이다. 남에게 편지를 보내 경(經)과 예(禮)의 같고 다름을 논하려고 하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니,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까지는 없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까지는 없었다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한 그만두는 법이다. 내가 남을 논박하는 소를 올려 조정의 시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남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게 되면 또한 그만두어야 한다. 진귀한 옛 기물(器物)을 널리 모으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그만두며,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나머지를 훔치려고 하는 짓, 이것 또한 그만둔다. 마음에 일어나고 뜻에 싹트는 것도 매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며, 비록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남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분명히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 7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하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번번이 그만두었다. 초천(蓍川)으로 돌아온 뒤에 비로소 문미에다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이유를 적는다.”

이해에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가 이루어졌다. 공이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교리(校理) 홍복원(洪復元, ?~?)으로부터 《문헌비고》를 빌려 보았는데, 까만 난 위에 간혹 차기(箭記: 책을 읽다 느낀 생각을 적어놓은 것)한 것이 대부분 정밀하고 핵심적인 말들이었다. 그러므로 판서 홍명환(洪名漢, 1724~?)이 손수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뜻으로 윤색하고 차서를 매겨 《문헌비고간오》 1권을 만들었다. 임금님께 올려 보시도록 하려 했는데, 마침 승하하셨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으니, 아! 한스럽도다.”라고 했다.

1801년(純祖 1年, 辛酉), 40세 2월 초8일, 사간원의 계(啓)로 인하여 초9일 새벽에 잡혀 옥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유수(李儒修, 1758~1822→글리이유수묘지명)·윤지눌(尹持訥, 1762~1815→무구윤지눌묘지명)이 책룡사

건(冊籠事件) 때문에 공에게 편지를 보내 알렸으므로 공이 도성에 들어왔다. 이른바 책룡이라는 것은 5, 6인의 편지를 섞어 모아놓은 문서인데, 그 안에는 공의 집 서찰이 들어 있었다. 당시 이조 판서로 있었던 윤행임(尹行恇, 1762~1801)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익운(李益運, 1748~1817)과 의논했는데, 유원명(柳遠鳴, 1760~?)을 시켜 상소하여 공을 잡아다 심문할 것을 청하게 하여, 화(禍)의 예봉(銳鋒)을 꺾어버리고자 했다. 최헌중(崔獻重, ?~?)·홍시부(洪時溥, 1749~?, 자: 博汝)·심규(沈澥, 1742~1820, 호: 竹圃)·이석(李楮, 1759~1829) 등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장차 화를 돌려 복을 만들자고 힘써 권했다. 공은 시대의 형세상 화를 돌릴 수 없음을 미리 알고는 모두 듣지 않았다. 그 뒤에 윤행임이 과연 낭패를 당했다. 이때에 공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위관(委官: 죄인을 추국(推鞠)할 때 의정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하는 재판관)이 좌우에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실상 죄를 범한 사실도 없고, 주었던 문적(文蹟) 또한 비슷하게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화의 기색이 박두했으니, 이것을 하라고 중용하는 자가 있으면 내 손수 칼을 잡으리라.”라고 한 것 등은 공의 서찰이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정(丁) 영감의 말은 모두 공같이니 마음을 쓸 것 없다.”, “정 영감이 알면 반드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 말들은 저들 가운데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서찰이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두 가지 안건이 밝혀져 옥석(玉石)이 분명하게 되었다. 비로소 부내(府內)로 보방(保放)되어 처분을 기다렸다. 옥에 갇혀 있을 당시 위관 이하 옥관들이 하나하나 캐물어서 억울한 자를 신원(伸冤)시켜주었다. 당시 홍헌영(洪獻榮, ?~?)·유이환(俞理煥, ?~?)이 대계(臺階)에 들어 있어서 또한 옥에 갇혀 있었는데, 공이 극구 보증하여 무죄로 석방되어 나왔다.

같은 달 27일 밤에 임금의 은택을 입고 출옥하여 장기(長鬢)로 유배되었다. 이때에 공이 옥에 있었는데, 말하는 것이 명백하고 증거를 대는 것이 공정하니, 대신(大臣) 가운데 훌륭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말하기를 “무죄로 석방되어 나가게 될 것이니, 식사를 더 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시오.”라고 했고, 심환지(沈煥之, 1730~1802)는 “쫓쫓, 사돈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구나.”라고 했다.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이서구(李書九, 1754~1825)는 공정히 판결하여 너그럽게 용서해주었고, 동지의금부사 서미수(徐美修, 1752~1809, 자: 公美)는 비밀히 기름 피는 노파를 불러 옥(獄)의 사정을 공의 집안사람에게 알려 정상이 가벼우므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리는 한편 식사를 더 하도록 권려하여 주었다.

공이 일찍이 말했다. “내가 처음 옥에 들어갔을 때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직 《대학(大學)》의 성의장(誠意章)뿐이었다. 대개 죽고 사는 것은 명(命)에 달려 있으니, 노심초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의(誠意)’ 두 자는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한다. 더욱이 우환(憂患)이나 재화(災禍)가 있을 경우에는 오직 이것으로 바른 것을 삼아 반복하여 궁리해 편안히 마음에 얻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못 마음을 너그럽게 가졌는데, 며칠 뒤 홀연히 또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 굳게 마음먹지 못함을 스스로 탄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홀연히 꿈속에 한 어른이 ‘쫓쫓하고 혀를 차면서 나무라기를 ‘자네는 동심(動心)·인성(忍性)하는 공부에 더욱 성의로써 해야 되겠네. 옛날 소무(蘇武, 기원전 140~기원전 60, 중국 한(漢)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 19년 만에 돌아왔음)는 19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참고 견디었는데, 자네는 겨우 19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도리어 스스로 번뇌를 하는가.’ 했다. 이날 과연 석방되었는데, 체포된 날로부터 19일째 되는 날이었다”(경신년(1800, 순조 즉위년)에 유락(流落)한 뒤로부터 무인년(1818, 순조 18)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돌아올 때까지 또한 19년이었다. - 원주).

이 옥사 때 손암(巽菴) 선생(→정약전)은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는데, 공이 중형(仲兄)보다 하루 전에 화를 입었다. 공이 중형의 묘지(墓誌)를 지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당시에 악당들이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지럽게 쌓여 있는 편지 중에서 ‘삼구(三仇)의 설(說)을 가지고 억지로 정(丁)씨 집안의 글이라고 단정을 하고 또 흉악한 말이라고 모함을 하여, 마침내 극형을 내려 내가 일어날 길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고(故) 익찬(翼贊) 순암(順菴) 안봉복(安鼎福, 1712~1791)이 지은 글 중에 분명히 ‘삼구’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무고임이 판명되었다.”

살피건대, 순암이 말하기를 “서쪽 선비들은 사람에게 세 가지 원수[三仇]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자기 몸이니 성색

(聲色)·태타(怠惰)·방자(放恣)·투일(偷佚)이 안으로 나를 은미하게 빠뜨리는 것이요, 둘째는 세속이니 재산·세력·공명(功名)·희락(歡樂)·완호(翫好)가 밖으로 나를 드러나게 빠뜨리는 것이요, 셋째는 마귀(魔鬼)이니 거만하고 오만하며 허깨비의 허혹시키는 것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현혹시켜 안팎으로 나를 친다.”라고 했다. 대개 공이 순암의 글 중에서 이 삼구에 대한 해석을 보고는 지문(誌文)을 짓는 데 인용하여, 중형이 당시에 이와 같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3월에 장기(長鬢)에 도착했다. 장기(障氣)가 심한 시골 황폐한 땅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신을 깨끗이 하여 《삼창고훈(三倉詰誥 한자(漢字) 발달사에 관한 저술)》을 고증하고, 《이아술(爾雅述)》 6권을 저술했으며,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을 지었는데, 겨울 옥사 때 잃어버렸다.

여름에 《백언시(百諺詩)》가 이루어졌다. 그 서(敍)에 말했다. “풀 베고 나무하는 사람의 말도 성인(聖人)이 택했으니, 여항(閭巷)의 비루하고 저속한 말도 때로 우연히 이치에 맞을 경우에는 군자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성호 선생은 우리나라의 속담을 모았는데, 모두 백여 구(句)였다. 사리(詞理)는 비록 밝았으나 도리어 운(韻)이 맞지 않아 옛 속담과 다른 점이 있었다. 신유년(1801, 순조 1) 여름에 내가 장기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할 일이 없어 성호(星湖) 선생(→인)에게서 모아놓으신 것에 운을 달아 바로잡고, 이것을 《백언시》라고 했다.”

10월에 또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손암(巽菴) 선생도 또한 같이 체포되었다. 이때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이 체포되었는데(→황사영백서사건), 홍(洪: 홍낙안(洪樂安), 1752~?, 호: 魯庵)·이(李: 이기경(李基慶), 1756~1819, 瘠庵)의 무리들이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조정에 거짓으로 협박했다. 스스로 사헌부·사간원의 벼슬자리에 들어가 계청(啓請)하여 다시 공을 국문(鞫問)하여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했다. 이때 정일환(鄭日煥, 1726~?)이 해서(海西)에서 돌아와, 공이 해서 지방의 읍을 다스릴 때 남긴 칭송이 아직도 그곳에 자자하니 만약 사형으로 논죄한다면 반드시 옥사를 잘못 처리했다는 비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꼭진하게 말하고, 또 “수초(囚摺)도 발부하지 않았는데 체포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고, 영의정에게 권하여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다. 영의정이 곧 태비(太妃: 영조(英祖, 재위 1724.8~1776.3)의 계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에게 윤허를 청했다. 봄 사이의 대계(臺啓)는 모두 홍·이 두 사람이 종용해서 한 일이었다. 이에 손암공(巽菴公)·이치훈(李致薰, 1759~1822)·이관기(李寬基, ?~?)·이학규(李學逵, 1770~1835)·신여권(申與權, ?~?) 등이 함께 체포되었다. 위관(委官)이 흉서(凶書: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를 가리킴)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반역의 변(變)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조정에서 또한 어떤 생각인들 하지 않으랴. 무릇 서교(西教)에 관한 서적을 한 자(字)라도 본 사람이면 죽어 살아남지 못하리라.”라고 했다. 그러나 일을 조사해보니, 모두 참여한 정상이 없었고 또한 여러 대신들이 문서 중의 예설(禮說)·이아설(爾雅說) 및 지은 시율(詩律)을 보았으나 모두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정밀하여 적과 내통한 흔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측은하게 생각하고 이전에 들어가 무죄임을 아뢰니, 태비도 그것이 모함이라는 것을 살펴 여섯 사람은 정상을 잠착하여 석방하게 하고, 호남에 남은 근심이 있다고 하여 공을 11월에 강진현(康津縣)으로 옮겨 유배하여 진정시키게 하고, 손암공은 흑산도(黑山島)로 유배시키도록 명했다. 이때 교리(校理) 윤영희(尹永禧, 1761~?, 자: 畏心)가 공의 생사(生死)를 탐지하려고 대사간 박장설(朴長壽, 1729~?)을 찾아가 옥사의 실정을 물었다. 마침 홍희운(洪羲運, 1752~?)이 왔으므로 윤공은 옆방으로 피해 들어갔다. 홍희운이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와 발끈 성을 내며 소리치기를 “천 명을 죽여도 아무개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아무도 죽이지 않는 것만 못한데 공은 어찌 힘써 다투지 않소?”라고 하니, 박공이 “저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겠소.”라고 했다. 떠나간 뒤에 박공이 말하기를 “답답한 사람이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려고 피하여 두 번이나 큰 옥사를 일으키고서 또 나더러 다투지 않는다고 책하니, 답답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옥에서 나온 뒤 공의 형제는 나란히 나주(羅州) 울정점(栗亭店)에 도착하여, 형제가 서로 나뉘어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갔다. 살피건대, 흑산보(黑山堡)는 나주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어서 강진(康津)과 해로(海路)로 서로 접한다. 손암 선생이 섬으로 들어간 뒤에 크게 섬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 금지하는 법령이 조금 풀리지자 소식을 서로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저술이 있을 때에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 많았으며, 또 옥(玉)으로 조그만 도장을 새겨 오갈 때의 신표로 삼았다.

1802년(純祖 2, 壬戌), 41세 윤광택(尹光宅, 1732~1804, 자: 德仁)이 자기 조카 시유(詩有, 1780~1833)를 시켜 자주 물품을 보내 주며 안부를 물었다(《옹산윤서유묘지명(翁山尹書有墓誌銘)에 보인다. - 원주). 큰아들 학연(學淵, 1783~1859)이 와서 근친(親親)했다.

겨울에 넷째아들 농장(農祥: 農兒, 1799~1802)이 요절했다는 소식이 왔다(→《농아광지(農兒曠志)》). 집으로 답장한 편지(《示二兒》)에 말했다. “우리 농장이 죽었다고 하니 슬프고 슬픈 일이다. 내가 이 멀고 궁벽한 곳에 와 있어 이별한 지 오래인데 그 녀석을 잃어버렸으니,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가일층 슬퍼지는구나. 또한 나는 죽고 사는 이치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는데도 비통함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네 어머니는 품속에서 내어 흙구덩이 속에다 넣었으니, 그가 살아 있었을 때의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의 기특하고 사랑스런 것들이 귀에 쟁쟁하고 눈에 선할 것이요, 또한 하물며 부인은 인정만 있지 이치는 모르는 것임에랴.”

1803년(純祖 3, 癸亥), 42세 정월 초하룻날 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책을 초(鈔)하는 규모에 대해서 덧붙여 보여주었다(자세한 것은 본집(本集) 가서(家書) [寄兩兒]중에 보인다. - 원주).

봄에 <단궁잡오(檀弓箴誤)>가 이루어졌다. <단궁(檀弓)> 2편은 《예기(禮記)》 여러 편 중에서 그 뜻과 이치가 매우 정밀하고 그 문사(文詞)가 특히 아름답다. 그러므로 공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대개 고례(古禮)는 번잡하여 부화(浮華)한 문제가 없지 않으나 <단궁>에서 말하는 것은 대체로 간략하여 실상 《논어(論語)》에 기록된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의 말과 서로 부합되는 점이 있었으니, 실로 공씨(孔氏)의 은미한 말씀이다. 이에 공(公)이 그 지취(旨趣)를 드러내 혹 옛 주(注)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았으니, 책이 모두 6권이였다. 그 뒤에 《상례사전(喪禮四箋)》이 완성되었는데, 무릇 <단궁잡오> 안에서 대의(大義)와 널리 의론한 것을 모두 옮겨 기입해놓은 것이다. 지금 <단궁잡오>로 남아 있는 것은 오직 과손되어 어디에 소속시킬지 모르는 것뿐이다. 그러니 <단궁잡오>가 본래 이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 무릇 <단궁>을 읽는 자는 《상례사전》에서 옮겨놓은 것을 도로 뽑아 편차록(編次錄)을 살펴본다면 완전해질 것이다.

여름에 <조전고(弔奠考)>가 이루어졌다. 모두 23칙(則)이었다. 제1 칙에서는, 조례(弔禮)는 빈장(殯葬: 시체를 입관(入棺)하여 매장할 때까지 안치하는 것)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니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는 조문(弔問)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했다. 다음으로 여러 주인들이 빈객(賓客)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논했고, 다음에는 주인의 위치가 또한 서쪽 계단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논했다. 또 그다음으로 빈객은 답배(答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했고, 그다음에 조문하는 의복과 조문을 받는 의복에 대해서 논했다. 그다음에는 철사(徹事)와 대사(待事)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부인이 조문할 경우와 사람을 시켜 조문할 경우에 이르기까지 갖추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결같이 경례(經禮)로 근거를 삼고, 세속에 남아 있는 습속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러니 예를 이는 자는 더욱 아끼고 궁리해야 할 것이다.

겨울에 <예전상의광(禮箋喪儀匡)>이 이루어졌다. <상의광(喪儀匡)>이라는 것은 《상례사전(喪禮四箋)》의 하나인데, 모두 17권이다. 공이 유배지에서 밤낮으로 골똘히 궁리하다가 마침내 <사상례(士喪禮)> 3편(《기석례(既夕禮)》와 <사우례(士虞禮)>까지 포함)과 <상복(喪服)> 1편과 그 주석들을 취하여 정밀히 연구했다.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널리 옛 서적을 고찰하여 경(經)으로 경(經)을 증명하여 성인(聖人)의 뜻을 얻고자 했다. 혹 이것과 저것을 대비하여 두 상(相)을 비추어 내기도 했다. 대체로 순수해서 흠이 없는 고주(古注)는 삼가 지켜 잃지 말게 했으며, 성지(聖旨)를 어그러뜨리고 경(經)의 뜻을 잃은 것으로 계속 와전되어 잘못 전해 내려오는 것은 바로잡았다. 이를테면 “질병(疾病)이란 목숨이 이미 끊어지는 것이다.”, “남녀가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담백한 흰 것으로써 바꾸어 입는다는 뜻이다.”, “천자 제후의 상(喪)에는 먼저 성복(成服)을 하고 뒤에 대렴(大斂)을 한다.”, “천자 제후: 대부·사(士) 모두 말우(未虞: 삼우(三虞) 중의 마지막 우제(虞祭)로써 졸곡(卒哭)을 삼아야 한다. 졸곡은 별도로 있는 제사가 아니다.”, “부(附: 삼년상을 마친 뒤 신주를 사당에 모셔

한 곳에서 제사 지내는 것'라는 것은 신도(神道)로써 부(祔)할 따름이지, 신주 옆에 붙이는 것도 아니요,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것도 아니다.”, “길제(吉祭)라는 것은 사계절의 정해진 제사이지만 소목(昭穆)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의 것이다. 이에 대의(大義)를 뽑아 분명히 밝힌 것이다.

1804년(純祖 4, 甲子) 43세 봄에 <아학편훈의(兒學編訓義)가 이루어졌다(모두 2천 자였다. - 원주).

1805년(純祖 5, 乙丑), 44세 여름에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이 이루어졌다. 일명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3권이다. 살피건대, 이 변(辨)은 모두 3본(本)이 있는데 <신사복제변(辛巳服制辨)과 <팔대군변(八大君辨)과 함께 문집에 실려 있다. 첫째 본은 장기본(長鬢本)인데 옥사 때 유실되었으며, 세 번째 본이 <정체전중변)인데 <상례외편(喪禮外編)에 실려 있다. 요컨대, 3본이 글은 다르나 뜻은 한가지다. 이제 총체적인 뜻을 취해 나머지 두 본에 미치고자 하여 <경신복제변(庚申服制辨)을 간추려 신는다.

전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적서(嫡庶)의 이름은 종법(宗法)에서 나온 것이고, 종법은 공족(公族)에서 나온 것이다. 공족이 귀한 까닭은 그들이 임금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임금은 귀하고 존엄한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성서(聖庶: 임금의 장자(長子)가 아닌 여러 아들)는 적통(嫡統)을 빼앗을 수 있다.(→ 탈종)’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임금이 되면 종(宗)이 거기에 있게 되고, 적통이 거기에 있게 되면, 중(重)함이 거기에 있게 된다. 효종대왕(孝宗, 재위 1649~1659)이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있을 때에는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의 서자(庶子)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통(大統)을 있게 되어서는 곧 천지신인(天地神人)의 주인이 되었다. 서자가 되고 적자(嫡子)가 되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비록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로 하여금 하늘이 짧은 명(命)을 주어 왕위를 계승하게 했더라도 이후에는 효종이 뒤를 이었을 것이다. 태비(太妃: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服: 효종(孝宗)이 죽은 후,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가 입어야 할 복(服)을 말함. 이때 남인(南人)의 허목(許穆, 1595~1682, 호: 眉叟) 등은 3년을 주장했고 서인(西人)의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호: 尤庵) 등은 1년을 주장했다.)이 오히려 3년에 해당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천자·제후의 예에 대통을 이어 그 지위를 계승하면 바로 종적(宗嫡)이 되기 때문이다. 적통에서 적통으로 서로 계승하여 그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천지신인의 주인이 되고서도 서(庶)라고 이름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효종의 제사 때 종묘에서 ‘효증손(孝曾孫)’이라고 했다. 이미 ‘효증손’이라고 했으니, 또한 서자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호: 尤庵)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막혀 깨닫지 못한 바가 있었다. 비록 그렇지만 그의 말은 질박하여 꾸밈이 적었다. 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 내리려고 한다는 죄명이 더해졌으니, 당과 싸움이 그러한 폐단을 낳았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애석함을 금치 못하겠다.” 또 말했다. “천자·제후의 예를 어찌 사(士)의 예로써 단정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효종이 정적자(正嫡子)의 바로 다음 동생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서자이거나 혹은 적손(嫡孫)·서손(庶孫) 등이었다면 태비의 복제(服制)가 마땅히 기년복(基年服: 1년간 입는 복)이나 대공복(大功服: 9개월간 입는 복)이 되었을 것이다(서손인 경우에 대공복을 입는다. - 원주). 이때가 되어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호: 眉叟)의 뜻이 설 곳을 찾았다. 아! 임금의 자리가 이미 바르게 되었고 대통이 이미 계승되었으니, 이에 적자가 되고 종자(宗子)가 된 것이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장자(長子)인 백읍고(伯邑考)는 태사(太姒)의 궁(宮)에서 태어나 자랐는데도 ‘주종(周宗)’이라 할 수 없으며, 한(漢)나라 문제(文帝, 재위 기원전 180~기원전 157)는 한 고조(漢高祖, 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의 측실(側室)인 박희(薄姬)의 소생인데도 ‘유씨(劉氏)의 서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의미가 나누어지는 것이 오직 대통을 이어 왕위를 계승하는 선후(先後)에 달려 있는 것인데, 도리어 구구하게 육경(毓慶: 世子)의 자리만 다투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적손이 대통을 이었다가(왕이 됨 - 원주) 불행히 먼저 죽었을 경우에도 태비의 복은 3년에 해당하고, 서손이 대통을 이었다가 불행히 먼저 죽었을 경우에도 태비의 복은 3년에 해당되며, 어진 동생이 대를 이었다가 불행히 먼저 죽었을 경우에도 태비의 복은(태비는 바로 형수이다. - 원주) 3년에 해당되고, 종실의 먼 후예가 들어와 대통을 이었다가 불행히 먼저 죽었을 경우에도 태비의 복은 3년에 해당된다. 일체 대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의 상에는 태비의 복이 3년이 되니, 어째서인가? 그것은 모자(母子)의 경우와 한가지이기 때문이

다. 어머니는 장자(長子)를 위해 본래 삼년복을 입는데, 하물며 천자·제후의 상에 어찌 일년복을 입겠는가. 뒤를 이은 왕이 전왕(前王)의 상에 참취(斬衰: 5服의 하나로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 삼년복을 입는 것은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미 전왕을 아버지로 여기면 전왕의 비(妃)는 자연히 어머니에 해당되니 삼년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다고 여긴다면 전왕의 비는 뒤를 이은 왕의 상에 또한 삼년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 그 본속(本屬)의 아들·손자·동생·조카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물을 필요도 없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춘추(春秋)》에 이르기를 ‘태묘(太廟)에 큰 제사를 지낼 때, 회공(僖公, 재위 기원전 659~기원전 627)을 민공(閔公, 기원전 662~기원전 660) 위에도 올려놓았다.’(노(魯)나라 장공(莊公)이 죽은 뒤 민공이 즉위했고, 민공이 죽은 뒤 회공이 즉위했는데, 회공은 민공의 서형(庶兄)이었다. 그 뒤 문공(文公) 2년에 태묘(太廟)에 제사 지낼 때 회공이 형이라 하여 위패를 민공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했다.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가 말씀하기를 ‘자식이 비록 성인과 나란히 할 정도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했으니,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지만 부자(父子)의 의(義)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회공은 민공의 형이다. - 원주), 하물며 그 나머지에 있어서랴.”

경신년(1800, 정조 24년) 6월에 정종대왕(正宗大王, 재위 1776.3~1800.6)이 승하하자 예(禮)를 의논하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대행왕(大行王: 왕이 죽은 뒤 시호(諡號)를 부여하기 전의 존칭)이 정순대비(貞純大妃, 1745~ 1805)에게 적손(嫡孫)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되므로 정이불체(正而不體: 중국 당(唐)나라 때 가공언(賈公彥, ?~?, 당(唐)나라 7세기 활동)이 그의 저서 《의례주소(儀禮義疏)》에서 주장한 것으로, 삼년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우 중의 하나이다. 즉 적손이 대통을 이었을 경우 적적(嫡嫡)으로 내려온 것은 바르지만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 한 경우는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아버지에게서 받기는 했으나 적자가 아닌 서자가 대통을 이었을 경우에 적적(嫡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이므로 마땅히 자취(齊衰: 삼베로 지은, 아랫단을 꿰매 상복)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다. 당시에 공(公)의 친우들 중 미수(眉叟) 허목(許穆)을 존모(尊謚)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태비는 마땅히 자취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예관(禮官)이 잘못하여 기년복으로 정했으니, 마땅히 상소하여 다투어야 한다.”라고 했다. 공이 이 점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예는 미수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저 ‘정이불체와 체이부정’은 본래 가공언(賈公彥, ?~?, 당(唐)나라 7세기 활동)의 교묘한 설이다. 미수가 당시에 단지 ‘장(將)’ 한 자(字)를 가지고 그 송사를 결단했어야 했다. 장차 임금의 자리를 전해 받을 경우에는 참취삼년복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으나, 이미 임금의 자리를 전해 받았다면 어떤 경우이든 참취삼년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지름길이며 간결하고 엄격하여 팔방으로 통할 수 있는데, 도리어 쓸데없이 적적(嫡妻) 소생이니 첩의 소생이니, 장자로 태어났느니 둘째로 태어났느니 하고 다투어, 화살 떨어진 곳에 표적을 세우고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하니, 어찌 길이 서로 합치되기를 바라겠는가. 효종의 ‘체이부정’에 대해서 같은 ‘서(庶)’라 하고 을은 ‘적(嫡)’이라고 하는 것은 후 다들 만한 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정종의 ‘정이불체’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 하고 손자는 ‘손자’라 하는 것은 실상 논박할 수 없는 말이니, 그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정종은 장헌세자(莊獻世子, 1735~1762)의 적자이며, 장헌세자는 영종(英宗, 재위 1724.8~1776.3)의 서자이다. 정종이 장헌세자에게 있어서는 비록 적자가 되나 영종에게는 서손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가공언의 뜻과 같이 한다면 마땅히 ‘임금의 자리를 이었지만 정체(正體)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지금 예관(禮官)들이 ‘정이불체’라고 의논한 것도 또한 삼가고 두려워하며 정중하고 공경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인데, 그대는 도리어 허물하려는가. 옛날 미수가 말하기를 ‘적자에서 태어난 둘째아들이 들어와 대통을 이은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대행 대왕(大行大王)은 적자에서 나온 둘째아들이 아니니, 어떻게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있겠는가. 미수가 당시 기년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불안하게 여긴 것은 효종이 나라의 임금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의 불안이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데에서 일어났지만, 송사(訟事)에 미처서는 적출(嫡出)이니 첩출(妾出)이니 장자니 둘째니 다투다가, 그분이 나라의 임금이었던는 것조차 잊어 버렸다. 이것이 미수의 진정한 것이다. 대체로 나라 임금의 상(喪)에 오속(五屬)의 친속(親屬) 가운데 그를 위해 삼

년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아는 신하와 백성이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불안하게 여겨 반드시 삼년복을 입은 뒤에야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임금을 위해서 참취복을 입는 것은 큰 표준이며 큰 법이다. 천지간 어느 곳에 세워 놓아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백세 후의 성인을 기다리더라도 의혹되지 않은 것이니, 다른 설로써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의론이 드디어 그치게 되었다.

당시에 또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 순조 대에 獻敬王后, 고종 대에 懿王后로 추존)의 복제(服制)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었는데, ‘양자로 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복(服)’에 관계된 글을 인용하여 자취 기년복으로 정했다. 예전에 영종이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를 낳았는데, 일찍 죽자 장헌을 세자로 책봉했다. 장헌이 죽은 뒤 정종이 장헌의 적자(嫡子)라 하여 영종의 명을 따라 효장의 후사(後嗣)가 되어 대통을 잇게 했다. 영종이 죽자 정종이 효장을 추숭(追崇)해 진종대왕(眞宗大王)이라 하고, 태묘(太廟)에 올려 합사(合祀)하고, 장헌은 경모궁(景慕宮)에 별도로 제사했다. 혜빈(惠嬪) 홍씨(洪氏)는 장헌의 부인이자 정종의 어머니이다. 공이 변론하기를 “삼가 살피건대, 경(經)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은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지 않는 기년복을 입는다.’라고 하고, 그 전(傳)에 이르기를 ‘어찌서 기년복을 입는가? 참취를 두 번 입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참취는 두 번 입지 못하는가? 대종(大宗)에 중(重)함을 두고 소종(小宗)을 강등하기 때문이다.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은 누구를 잇는가? 대종을 잇는다. 왜 대종의 후사가 되는가? 대종은 준귀한 적통(嫡統)이기 때문이다. 남의 후사가 된 뒤에 강복(降服)하는 법은 본래 그가 소종으로부터 대종을 잇는 것이므로 그 소종을 강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효장과 장헌은 모두 영종의 적사(嫡嗣)이며, 모두 영종을 계승했다. 옛 전적을 찾아보아도 이런 예(例)는 없었다. 그러나 진종(眞宗)은 형이고 장헌은 동생이며, 또한 영종이 명한 바가 있으니, 정종이 본래 낳아준 부모를 위해 강복하는 것이 옳다. 혜빈은 이미 총부(冢婦)로서(세자의 부인을 총부라 한다. - 원주) 위로는 영종을 받들었으니, 공경을 옮길 곳이 없다. 이제 정종의 상에 있어서 강복하여 기년복을 입기는 끝내 온당치 않은 듯하고, 그렇다고 만약 자취 삼년복을 입어야지 강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정종이 남의 후사가 된 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남게 되어 더욱 온당치 않은 듯하다. 이럴 경우에 임금을 위해서는 오숙의 친숙이 모두 참취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찌 저토록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겠는가.”라고 했다.

경신년 국상(國喪: 정조의 국상) 때, 내종(內宗)으로 참취삼년복을 입는 사람은 종친(宗親)의 여러 부녀들과 청연(淸衍)·청선(淸璿)의 두 군주(郡主)이고, 외종(外宗)으로 참취삼년복을 입는 사람은 조씨(趙氏)·홍씨(洪氏) 집안의 여러 외숙모·이모 및 외숙·이모의 아들, 그리고 영종의 일곱 옹주(翁主)의 자녀들이었다. 시험 삼아 생각해 보자. 이 줄지어 선 내외 종친들은 모두 참취복을 입고 검은빛 대지팡이를 짚고서 슬픈 표정으로 항렬에서 있는데, 유독 태비(太妃)와 태빈(太嬪)만은 성긴 상복을 입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서 뒷열에서 있으며(상기(喪紀)에 상복의 정(精)하고 거친 것으로 순서를 정했다. - 원주), 소상(小祥) 때에 이르러 저들은 오히려 상복을 입고 있는데 태비와 태빈은 푸르고 붉은 비단으로 먼저 길복(吉服)을 입는다면, 혐의를 분별하고 친소(親疎)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어떻게 되겠는가. 소원한 자가 친하게 되고 친한 자는 소원하게 될 것이니, 어찌 천리(天理)에 합하고 인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으로부터 조용히 생각해 보면, 임금을 위해서 참취삼년복을 입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거의 어렵듯이 깨닫게 될 것이다.

겨울에 큰아들 학연(學淵, 1783~1859)이 와서 뵈었다. 이에 보은산방(寶恩山房)에 나가 밤낮으로 《주역(周易)》과 《예기(禮記)》를 가르쳤다. 간혹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기록해놓았는데, 모두 52칙(則)이었다. 이를 이름하여 <승암문답(僧菴問答)>이라고 했다.

1807년(純祖 7, 丁卯), 46세 5월에 장손(長孫) 대림(大林, 1807~?)이 태어났다.

7월에 형의 아들 학초(學樵, 1791~1807)의 부음(訃音)이 와서 묘갈명(墓碣銘) - <형자학초묘지명(兄子學樵墓誌銘)>을 지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학초의 자(字)는 어옹(漁翁)이니, 둘째형 손암(巽菴) 선생의 아들이다. 선생은 이들을 여러 명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만년에 이 아들을 얻어 매우 두텁게 사랑했다. 그래서 ‘초(樵)’라고 이름했다. 말을 조금 더듬

었으나, 6, 7세에 이미 서(書)와 사(史)를 읽고 그 잘잘못을 의론했다. 일찍이 손무(孫武, 기원전 545~기원전 470)가 부인들에게 병법(兵法)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논하다가 ‘우부인(右婦人) 좌부인(左婦人)’이라는 것(《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에 의식이 생겨 뜻이 통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세웠는데, 과연 본래의 뜻이었으므로 보는 이 가운데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 바둑을 신묘하게 잘 두어 7, 8세 때에는 이미 노장들과 대국했는데, 강한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10세 때에는 학업이 날로 진취하여 이름이 친구들 사이에 떠돌았다. 그러나 성품이 경전을 좋아하여 메양《시경(詩經)》《서경(書經)》《논어(論語)》《맹자(孟子)》를 읽을 때, 그가 문의하는 것은 뜻이 대부분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반드시 그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치에 합당했다. 내가 유락(流落)한 이후로 육경(六經) 사서(四書)의 설을 지은 것이 몇 권 있는데, 학초를 기다려 전해주려 했더니, 이제 가버렸구나. 명(銘)에 일렀다.

호학(好學)했으나 일찍 죽었으니
하늘이 나를 축복했다가
하늘이 나를 앗아갔네.
세태는 날로 더러워지고
성인의 도(道)는 황폐해져
못난 사람들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은 사람들은 뽕죽하기만 하니
그 누가 나의 글 읽어줄 것인가.”

겨울에 <예전상구정(禮箋喪具訂)>이 이루어졌다. 공이 ‘상의(喪儀)’를 바로잡은 뒤에 또 ‘상구(喪具)’에 대하여 와전되고 잘못된 것을 정정했다. ‘구(具)’라는 것은 죽은 이를 보낼 때 쓰는 온갖 물건이다. 그래서 이 글에 ‘상구정(喪具訂)’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모(冒: 시체를 염습(斂斂)한 뒤에 덮는 베로 만든 흠이불)는 흠이불과 같은 것이니 자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악수(握手: 시체의 두 손을 한데 싸 감아 묶는 검은 명주로 만든 喪具)는 두 가닥이 아니라 가운데를 모양만 두 개로 하는 것이다.”, “머리를 베로 싸 감았으니 복건(幅巾)은 의당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머리를 쌀 적에 세로로 싸서는 안 되고 가로로 싸야 한다.”, “심의(深衣: 선비들의 겉옷으로 두루마기의 일종)의 폭(幅)은 모두 12폭인데, 앞이 3폭 뒤가 4폭으로 다른 두루마기와 같고, 다만 3폭을 앞자락에다 겹치고 2폭은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다 1폭씩 댈다. 구변(鈎邊)이란 것은 겨드랑이 아래로 옆에다 대는 것을 말한다.”, “수인(塤人: 장례 때 인부들을 통솔하는 사람)·장인(匠人: 장례 때 영구를 운반하며, 하관을 주관하는 사람)이 수레를 들었다는 것은 영구(靈柩)를 싣는다는 말이다. 신거(蜃車: 塤를 메울 蜃炭을 싣는 수레. 가는 모양이 대합(蟹)과 비슷한데서 붙인 이름이다.)라는 것은 싣탄(蜃炭)을 싣는 수레인데, 네 바퀴로 굴러가게 한 것은 제도가 아니다.” 이 5조항이 정정한 것이다. 공이 논한 것이 주로 틀린 것을 정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상구정’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책은 모두 6권이다.

1808년(純祖 8, 戊辰), 47세 봄에 다산(茶山)으로 옮겨 거처했다. 다산은 강진현 남쪽에 있는 만덕사(萬德寺=백련사(白蓮社)) 서쪽에 있는데, 처사(處士) 윤단(尹搏, 1744~ 1821)의 산정(山亭)이다. 공이 다산으로 옮긴 뒤 대(臺)를 쌓고, 못을 파고, 꽃 나무를 열 지어 심고, 물을 끌어 폭포를 만들고, 동쪽 서쪽에 두 암자를 짓고, 서적 천여 권을 쌓아놓고 글을 지으며 스스로 즐기고 석벽(石壁)에 ‘정석(丁石)’ 두 자를 새겼다. 이때 여러 학생들에게 추이효변지학(推移爻變之學: 《주역(周易)》을 가르쳤다. 학문이 통해지자《주역(周易)》의 뜻을 가지고 서로 더불어 어려운 점을 물어 <다산문답(茶山問答)> 1권을 지었다. 또 다산의 여러 학생들에게 준 증언(贈言)이 있다.

봄에 둘째아들 학유(學游, 1786~1855)가 와서 뵈었다.

여름에 가계(家誡)를 썼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명(明)·청(淸) 이래로 경학(經學)이 여러 갈래로 갈려 각기

이루어놓은 글은 있으나 거의 후세에 끼친 이로움은 없다. 그러나 《주역》과 《예기(禮記)》 두 책은 이미 허다하게 개척해야 할 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에 하늘이 총명한 사람을 아깝게 여겨 한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명예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다. 상례(喪禮)를 이미 정리했다고 하나 왕조례(王朝禮)는 저술한 적이 없으며, 게다가 길례(吉禮)·가례(嘉禮)·군례(軍禮)·빈례(賓禮)는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다하지 않은 복을 남겨 자 손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인가 보다. 왕조례와 상례만은 보충해 편집한 책이 있으니, 대략 상국(相國) 김재로(金在魯, 1682~1759, 호: 淸沙)가 바쳐 의논한 여러 학설에 의거하거라. 그의 학설은 예경(禮經)에 깊은 조예가 있으므로 수사(洙泗)의 옛 뜻에 위배되지 않으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모대가(毛大可 = 모기령(毛奇齡, 1623~1716))는 순전히 예를 알지 못한다. 내가 글을 지어 변론하려고 했으나 이루 다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대개 책을 저술하는 법은 경적(經籍)이 종(宗)이 되고, 그다음은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미칠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하며,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관문이나 기구와 같은 것도 또한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한때의 농담을 취한 소소하고 변변치 못한 설과 진부하고 새롭지 못한 담론이나, 지루하며 쓸모없는 의론 같은 것들은 한갓 종이와 먹만 허비하는 것이니, 손수 귀한 과일나무나 좋은 채소를 심어서 생전의 생계나 풍족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겨울에 <제례고정(祭禮考定)>이 이루어졌다. 공이 우리나라 사대부들의 제사 지내는 법이 자못 경례(經禮)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고증하여 정했다.

겨울에 《주역심전(周易心箋)》(=《주역사전(周易四箋)》)이 이루어졌다. 공이 <역전(易箋)>의 무진본(戊辰本)에 제(題)하기를 “내가 갑자년(1804, 순조 4) 동짓날(계해년(1803) 겨울이다. - 원주) 강진 유배지에서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 여름에야 차록(筊錄)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겨울이 되어 완성했는데, 모두 8권이였다. 이것이 갑자본(甲子本)이다. 이 갑자본은 사의(四義)가 비록 갖추어지긴 했지만 거칠고 소략하고 완전하지 못하여 마침내 없애 버렸다. 그다음 해 개정하여 찬수(撰修)했는데, 또한 8권이였다. 이것이 을축본(乙丑本)이다. 을축년(1805) 겨울에 큰아들 학연(學淵, 1783~1859)이 와서 함께 보은산방(寶恩山房)에 기거하면서, 전본(前本)에서 양호(兩互-양호좌괘법)·교역(交易)의 상(象)을 취하지 못한 것을 모두 개정하여 봄이 되어 끝마쳤다. 모두 16권으로, 이것이 병인본(丙寅本)이다. 병인본이 파성(播性: 본괘(本卦)의 성격을 퍼뜨림)과 유동(留動: 변동은 비유함)의 뜻에 있어서 빠지고 잘못된 점이 많았으므로 또 고치게 했다. 원고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북쪽으로 돌아갔으므로 이칭(李晴=李鶴來, 1792~1861, 호: 靑田)으로 하여금 완성하게 했다. 모두 24권으로, 이것이 정묘본(丁卯本)이다. 정묘본은 이치가 정밀하지 못하고 상(象)의 뜻이 잘못된 점이 많아 무진년(1808) 가을 내가 다산에 있을 적에 둘째아들 학유로 하여금 탈고(脫稿)하게 했다. 또한 24권으로, 이것이 이른바 무진본이다.”라고 했다.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則)을 지었다.

<역례비석(易例比釋)>을 저술했다. 공이 세 가지 오묘한 점을 취했는데, 신인(神印)·귀계(鬼契)와 같이 묘하게도 물상(物象)과 합했다. 또 성인의 온축되고 깊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450괘효(卦爻)의 모든 예를 취해 괘(卦)를 비교하고 문(文)을 비교하여 둘씩 뽑아 대(對)를 만들었으니, 마치 구고가(句股家: 기하학자)가 각각의 전체 비율을 세워 놓고 수리(數理)를 밝히는 것과 같았다. 그리하여 《주역》의 깊은 뜻이 이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옛것을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例)는 원형이정례(元亨利貞例)·형이정례(亨利貞例)·원길례(元吉例)·회례(悔例) 등 모두 28례(例)가 있다. 예(例)를 따라 설(說)을 묶어서 요지(要旨)의 아래에 편집해 놓았다. 또 춘추(春秋) 시대 관점(官占: 국가기관에서 보는 점)에 보주(補注)를 내었다(->《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補註)》). 공이 전에 예(禮)에 대해서 주석을 낼 적에 고례(古禮)는 대부분 《춘추(春秋)》에서 징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관점의 법을 보았으나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래위로 실마리를 뽑아 캐어 들어갔다. 이에 《주역》의 단서에 대한 실마리

*《全書》I-18, 5a, <示二子家誠> 참조.

를 찾게 되었다. 대개 《춘추》는 선진(先秦) 시대의 고문이다. 추이(推移)와 호체(互體)와 효변(爻變)이 모두 이 관점(官占)에 갖추어져 있어서 실상 정경(正經)과 조리가 분명히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취해 1편을 수집하여 보주를 만들었다. 이것을 《역경(易經)》의 끝에 붙여 후인들이 《주역》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사다리가 되게 했다.

또 《대상전(大象傳)》을 취하여 별도로 1편을 모아 주해를 달았다. 그 서(敍)에 말했다. “《대상전》이라는 것은 공자(孔子 = 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께서 점치는 사람들이 보는 단(象)과 상(象)의 뜻 외에 별도로 스스로 상(象)을 음미하여 군자의 쓰임에 바탕이 되게 한 것이다(《대전(大傳)》에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조용히 거처할 때에는 그 상(象)을 보고 움직일 때에는 그 점(占)을 본다.”라고 했으니 《주역》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는 것이다. - 원주). 이것은 십익(十翼)의 하나로 패효(卦爻)의 사(辭)와 관계가 없는 것이니, 본래 의당 별도의 항(行)으로 만들어 스스로 한 경(經)이 되어야 할 것이다(호정방(胡庭芳)은 말하기를 “《대상(大象)》은 모두 공자께서 스스로 취하신 것이지 문왕(文王)이나 주공(周公)이 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패효의 사(辭)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했다. - 원주). 옛날 전하(田何, 기원전 202~기원전 143 사이 추정)라는 사람이 《주역》을 전수해 주면서 이경(二經) 십익으로 12편을 만들어 전해주었는데 동래인(東萊人) 비직(費直, 기원전 50~기원후 10 사이 추정, 자: 長翁)이 처음으로 십익을 합하여 경문(經文)에 붙였던 것이다(지금의 건괘(乾卦)가 이것이다. - 원주). 그 뒤에 정현(鄭玄, 127~200, 자: 康成)이 단(象)·상(象) 및 여러 전(傳)을 분리하여 경 아래에 붙였는데(곤괘(坤卦) 이하 63괘 - 원주) 《대상전》과 《소상전(小象傳)》을 연결해 하나로 만들었다(《대상(大象)》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 원주). 그리하여 후세 유자(儒者)들이 드디어 《문언(文言)》을 십익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대상전》은 별도로 하나의 경(經)이 될 수가 없었다(《문언》 등 여러 장은 본래 《계사전(繫辭傳)》 가운데 여기저기 섞여 나온 것이므로 별도로 제각기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 원주). 오늘날 《주역》을 읽는 자들은 6효(爻)를 배열하기만 하면 한 괘의 전체적인 뜻을 알았다고 생각하니, 이미 잘못된 일이다. 또 《대상전》으로 한 괘의 표제(標題)를 삼아서 단사(象詞)·효사(爻詞)와 함께 섞어서 한 몸으로 만드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제 별도로 막힘이 없도록 옛날 그대로 복귀시키니, 공자께서 생각하던 《주역》의 뜻이 거의 밝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또 《시괘전(著卦傳)》 1부(部)를 위하여 별도로 주석을 달았다. 《주역》의 상하경(上下經) 450패효(卦爻)를 살펴보니, 모두 추이(推移)·호체(互體)·물상(物象)·효변(爻變)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않았으나 《시괘전》 1편만은 오로지 시초(蓍草)를 뽑아 괘를 얻는 묘한 이치를 말하고 있었다. 참으로 시법(蓍法)이 성인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앞의 상하경 450패효가 모두 굳게 잠겨 열 수 없는 물건이 될 것이니, 이른바 구륙(九六)의 뜻이 의심을 풀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뒷날 패시(卦蓍)를 세워神明(神明)을 돕는 자가 조화(造化)를 참작하여 혐의(嫌疑)를 풀려고 할 때, 말미암을 바가 없을까 염려하여, 공이 이에 조리에 맞게 이치를 밝혀 주석해놓았다.

또 《설괘전(說卦傳)》을 취하여 전거(典據)가 있는 것은 보충해 넣고 잘못 와전된 것은 정정했다. 그 서(敍)에 말했다. “《주역》의 문구는 상(象)에서 취한 것인데, 모두 《설괘전》에 근본을 했다. 그러니 《설괘전》을 읽지 않고서는 한 자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물쇠와 열쇠를 버려두고 문 열기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특히 한(漢)나라 선비들이 《주역》에 대해서 말한 것은 6효(爻)의 변화를 몰랐기 때문에(건괘(乾卦)에서 구괘(姤卦)로 가는 것을 몰랐다. - 원주) 용(龍)에 나아가서 소(牛)를 구하고, 닭을 가지고 말(馬)인가 의심했다.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는데도 거기에만 천착하고, 한 걸같이 그쪽으로만 가서 이치에 합치되질 못했다. 그러므로 왕필(王弼, 226~249, 자: 輔嗣)이 말하기를 ‘효(爻)가 순(順)한 데 합치된다면 어찌 곤(坤)이 소가 될 것이며, 뜻이 진실로 건장한 데 응하게 된다면 어찌 건(乾)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설괘전》을 팽개쳐 버리고 쓰지 않으니, 《주역》의 뜻이 마침내 없어지게 되었다. 아! 6효가 변한 뒤에 이 《설괘전》의 문구에 나가 상(象)의 뜻을 구한다면 확연히 얼음이 풀리듯 그 뜻이 풀릴 것이며, 기쁨이 넘쳐흐르도록 이치가 순해질 것인데, 저 구양수(歐陽脩, 1007~1072, 호: 醉翁)의 무리가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으니, 어찌 그리도 망녕스러운가. 이제 경문(經文)을 취하여 간략하게 주석을 내니, 구가(九家)의 새로운 설에 이르러서는 올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으므로 하나하나 정정했고, 또 《주역》의 문구 중에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취하여 대략 보충해 넣었다.”

또 괘(卦)가 서로 겸(兼)하거나 교호(交互)하는 것을 보고 상(象)을 취하는 법을 이 편의 끝에다 붙여 놓았다. 그 서(敍)에 말했다. “《주역》의 문구 중에서 물상(物象)을 취한 것이 두 괘를 서로 겸하거나 교호(交互)하여 물(物)이라고 명명(命名)한 것이 많다(혹 서너 개의 괘를 겸하거나 교호하여 상(象)으로 삼은 것도 있다. -원주). 공자께서 말한 ‘성인의 정(情)은 사(辭)에 나타난다.’라는 것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다. 순(荀)·우(虞) 제가(諸家)(→순구가)는 효(爻)가 변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인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매양 한 물상을 가리켜 오로지 한 괘에 속한다고 했으니, 후세의 학자들이 경문에 나가 고증해보지도 않고 그런 학자들의 말을 가볍게 믿는다면 성인의 정은 끝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또 제가(諸家)의 주설(註說)을 취하여 차례대로 조리에 맞게 논해놓고 이름하여 《주역서언(周易緒言)》이라 했는데, 모두 12권이다(→《역학서언(易學緒言)》). 《주역심전(周易心箋)》(→《주역사전(周易四箋)》)의 서문(손암(巽菴)이 찬했다. -원주)에 말했다. “내가 미용(美庸: 다산의 字)을 동생으로 둔 것이 어언 44년이나 되었다. 미용은 어려서 성균관에 들어가 공령(功令)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그래서 나는 재치가 번뜩이는 재사(才士)라고 생각했다. 장성하여서는 관각(館閣)에 드나들며 밝은 임금을 문학으로 섬기었으므로 내가 문장경술사(文章經術士)라 생각했다.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함에 크고 작은 안팎의 일이 모두 지극한 경지에 나갔으므로 내가 재상감이라 생각했다. 만년에 바닷가로 귀양을 가 《주역사해(周易四解)》(→《주역사전》)를 지었는데, 내가 처음에는 놀랐고 중간에는 기뻐했으며 끝에 가서는 무릎이 절로 굽혀지는 줄도 알지 못했으니, 미용을 어떤 부류에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해(四解)’라는 것은 무엇인가? 벽괘(辟卦)가 연괘(衍卦)에서 추이(推移)했다는 것과, 물상(物象)은 모두 설괘(說卦)에 근본한다는 것과, 호체(互體)는 상(象)과 본괘(本卦) 등에서 취했다는 것과, 효사(爻詞)는 변체(變體)를 주관한다는 것이다. 추이의 뜻이 분명하여 음양의 왕래(往來)·굴신(屈伸)이 드러나 있고, 물상의 뜻이 분명하여 성인이 가까운 데서 취하기도 하고 먼 데서 취하기도 한 뜻이 드러나 있으며, 호체의 뜻이 분명하여 육허(六虛)를 두루 돌아다니며 일정함이 없는 세계를 오르고 내리는 그 용(用)이 온전하며, 효변의 뜻이 분명하여 길흉(吉凶)·회린(悔吝)의 결단이 근거한 바가 있으니, 이것을 사해라고 하는 것이다. 추이하지 않으면 64괘는 8×8의 사법(死法)에 불과할 것이고, 괘상(卦象)이 아니면 《주역》 문구에서 말하는 온갖 물상과 찬(撰)한 덕이 헛된 말이 될 것이며 <설괘(說卦)> 1편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요, 호체가 아니면 내괘(內卦)·외괘(外卦)가 줄렬하게 끈기만 하고 변화가 적어 8괘가 서로 움직여바람과 우레가 일어나는 그런 묘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효변이 아니면 괘사(卦詞) 외에 주공(周公)이 지위에 따라 말을 달리한 그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경(二經)·십익(十翼)에서 그것을 궁구하고, 《좌편(左傳)》·《국어(國語)》를 참고하고, 구가(九家)의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채록하고 수집하여 때를 닦아 거울을 환히 드러나게 하고, 모래를 일어 금을 취하여 이것으로 경(經)을 삼고 위(緯)로 삼으며, 잇고 드러내어 천 가닥 만 올이 모두 질서 있게 바르게 되었으니, 4가지 큰 뜻이 강기(綱紀)가 되었던 것이다. 《주역》이 이제야 그 온축된 뜻을 잃지 않게 되었다. 6효가 교호(交互)하는 것을 인증(印證)하는 법이 총형으로 개발되어 한 글자 한마디 말이 모두 질서 정연히 곡진하게 되었으며, 뜻 깊은 말이 나 오묘한 뜻이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분석되었으므로 64괘 384효가 촘촘히 늘어서 그 뜻이 밝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세 성인(聖人)이 털끝만큼 미미한 데까지 은택을 미쳐 살피시며 상(象)을 보고 말을 세운 그 언모(言貌)와 색상(色象)이 천 년 뒤에도 비슷하게 되었으니, 사해의 묘함이 이에 지극해졌다. 이미 이경(二經)의 전(箋)을 완성하고, 또 <대상전>을 취해 별도로 1편을 만들어 추이의 법으로 해석해놓고, 《대전(大傳)》에서 추이·변통의 설을 골라 뽑아 조리 있게 정리하여 시괘(著卦)를 논한 것이 별도로 1편이 되었는데 옛 성인의 삼천양지(三天兩地)의 법을 회복한 것이다. 또 <설괘전>을 취하여 그 입상(立象)의 뜻을 드러내어 밝혔는데 공자의 문구 중에서 징험할 수 없는 것은 경(經)에서 상고하고 예(例)에서 고증하여 빠진 뜻을 보충했다. 순구가(荀九家)·우중상(虞仲翔)의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춘추관점(春秋官占)>이란 이름으로 붙여놓았으니, 모두 24권이다. <인언(滕言)>, <서언(緒言)>, <답객난(答客難)> 등의 편목(編目)이 많이 남아 있으니, 아, 완전히 구비되었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옛 학문이 폐해지자 인심(人心)이 가려졌고, 대의(大義)가 혼미해

지자 온갖 이치가 따라서 문란하게 되었다. 비유컨대, 하나의 누에고치에서 실이 손을 따라 술술 풀려나와야 하는데, 천 가닥 만 올이 어지럽게 얽히고설킨 것과 같으니, 비록 총명하고 준결한 선비라 하더라도 문을 바라보고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세 성인이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신 뜻이 마침내 수천 년에 이르러 어두워지니, 이에 도술(道術)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단(異端)만 어지러이 일어났다. 큰 소리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행(奇行)으로 대중을 의혹시키고, 허물이 있으면서도 고칠 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몰라날 줄은 모르게 되어 세교(世敎)가 상실됨이 극에 달했다. 미용(美庸)은 동이(東夷) 사람으로 후배요, 말학(末學)이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혼자 보고 혼자 깨달았으나 조그만 칼로 자르고 베는 그 기세가 대를 쪼개는 것과 같았다. 구름과 안개가 걷힌 뒤에는 무지한 노예라 하더라도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미용을 세 성인의 양자운(揚子雲, 기원전 53~기원전18)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 형제가 된 지 44년인데, 그의 지식과 역량이 이러한 경지에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듣건대, 천하 사람들을 위해서 혼미함을 열고, 의혹을 타파하며, 난리를 평정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할 때에는 부득불 남의 힘을 빌린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내가 미용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요, 미용이 또한 자신을 알지 못한 것이다.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기원전 86?)이 말하기를 ‘문왕(文王)이 주왕(紂王)에 의해 유리(姜里)에 갇혀 있을 때 《주역》을 연역했고, 공자가 궁궐했을 때 《춘추》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울적하게 맺힌 것이 있어 자기의 도를 통할 수 없었으므로 지난 일을 서술하고 앞의 일을 생각한 것이니, 이 말도 또한 울분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럴 만한 이치가 있다고 할 만하다. 가령 미용이 편안히 부귀를 누리며 존귀한 자리에 올라 영화롭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책을 이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 뜻을 얻어 그의 충성과 지혜를 다했다고 한들 그가 이룬 공업(功業)이 반드시 요숭(姚崇, 650~721)·송경(宋璟, 663~737)·한기(韓琦, 1008~1075)·부필(富弼, 1004~1083)의 무리보다 더 훌륭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요숭·송경·한기·부필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는가?는 몸소 옛 성인의 뜻을 이으려는 공(功)을 맡아 끊어진 실마리를 찾고 미쳐 날뛰는 무리들을 막으려는 사람은 위정자가 허여함이 적은 것이니, 미용이 뜻을 얻지 못한 것은 곧 그 자신에 있어서 다행한 일이며 우리 유학계(儒學界)에 있어서도 다행일 뿐만 아니다. 내가 미용보다 몇 살 위지만 문장과 학식은 그의 아래에 있는 지 오래되었다. 천박한 말로 이 책을 더럽힐 수 없으나 선배가 죽으면 백세(百世)를 기다리기 어려운 법이니, 천지간에서 이 책을 지은 자는 미용이고 이 책을 읽은 자는 나인데, 내가 어찌 또한 한마디 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다만 나는 섬 가운데 갇힌 몸,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언제 미용과 함께 한 세상 한 형제로 살아볼 수 있으랴. 이 책을 읽고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 또한 만족을 한다. 나는 참으로 유감이 없도다. 아, 미용도 또한 유감이 없을 것이다!”

1809년(純祖 9, 己巳), 48세 봄에 《예전상복상(禮箋喪服商)》이 이루어졌다. 공이 상구(喪具)에 대해서 정정을 한 뒤에 또 <상복상(喪服商)을 취하여 그 제도가 예에 맞는가를 헤아려 단정했다. 복(服)이라는 것은 오복(五服)의 정교하고 거친 것과 장례·소상(小喪)·대상(大喪)·담제(禫祭) 때 복을 입는 제반 의례인 것이다. 이름하여 <상복상>이라고 했다.

가을에 《시경강의(詩經講義)》를 산록(刪錄)했다. 공의 묘지문(墓誌文)에 말했다. “나는 바닷가로 귀양 온 뒤, ‘내가 어려서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어언 20년간 세로(世路)에 빠져 다시 선왕(先王)의 대도(大道)를 알지 못했더니, 이제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혼연히 스스로 기뻐하여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를 취하여 깊이 연구했다. 대체로 한(漢)·위(魏) 이후로 명(明)·청(淸)에 이르기까지 경전의 뜻을 보충하여 설명해 놓은 학설을 널리 수집하고 두루 고증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일가(一家)의 말을 갖추어버리고 취한 뜻을 밝혀놓았다. 선대왕(先大王)의 비평을 받은 《모시강의(毛詩講義)》 12권을 수편(首篇)으로 삼고, 별도로 《강의보(講義補)→시경강의보유》 3권을 지었다(여유당경합(與猶堂經函)에는 시(詩)를 수편으로 하고 있다. 공이 일찍이 문인(門人)들에게 “나의 경학(經學)은 모두 임금님의 은총 속에서 도야(陶冶)된 것이다.”라고 했다. - 원주). 《시(詩)》는 이렇게 다루었다. 시라는 것은 간림(諫林)이다. 순(舜)임금 때 오성(五聲)과 육률(六律)로써 오언(五言)을 받아들였는데, 오언이라는 것은 육시(六詩) 중의 5가지이다. 풍(風)·부(賦)·비(比)·흥(興)·아(雅)가

그 5가지이며 오직 종묘(宗廟) 제사 때 쓰는 술(頌)만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눈먼 악관(樂官)이 아침저녁으로 소리 높여 읊고, 가수가 거문고·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선(善)을 듣고서는 감발(感發)하게 하고 악(惡)을 듣고서는 징계(懲戒)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의 포핍(褒貶)의 뜻이 《춘추(春秋)》보다 더 엄격하여 임금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詩)가 망(亡)함에 《춘추》가 지어졌다.’라고 한 것이다. 풍(風)·부(賦)·비(比)·흥(興)은 풍자한다는 말이며, <소아(小雅)>·<대아(大雅)>·<이아(二雅)>는 바른 말로써 간쟁하는 것이다.”

이 편 의 머리말에 이르기를 “건륭(乾隆) 신해년(1791, 정조 15) 가을 9월에 내원(內苑)에서 활쏘기를 시험했는데, 신이 맞추지 못한 벌로써 북영(北營: 金耀門) 밖에 있다. - 원주)에서 숙직했다. 얼마 있다가 임금께서 《시경》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한 800여 장(章)을 내려 주시며 신으로 하여금 40일 안에 조목조목 답변을 하여 올리라고 했다. 신이 20일만 더 연기하여 달라고 하여 윤희를 받았다. 각 조목마다 진술하여 올렸더니, 임금님의 비답이 찬란히 빛났으며 칭찬해 주심도 융숭했고 조목조목 품평하신 것이 모두 분수에 지나쳤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화를 만나 입각(入闕)하여 몸소 받는 영광을 얻지 못했다. 오직 ‘넒리 백가(百家)를 인용하여 그 출전(出典)이 끝이 없으니, 진실로 평소 은축된 지식이 해박하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랴. 내가 돌아보고 질문한 뜻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학사 이명연(李明淵, 1758~?)이 암송하고 있던 것인데, 이제 머리에 써서 서문에 인용한다. 아, 임금께서 승하시자 신의 유락(流落)됨이 이와 같이 되었다. 책을 어루만지며 은혜를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1810년(純祖 10, 庚午), 49세 봄에 《시경강의보(詩經講義補)》가 이루어졌다. 그 편 의 머리말에 이르기를 “내가 《시경강의(詩經講義)》 12권에 대해 이미 차례대로 순서를 정하여 편집해놓았다. 다만 강의의 체(體)가 오직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뿐이었으므로 질문이 미치지 못한 것은 비록 전에 들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서술할 수가 없었다. 이에 백 가지를 논하면서 한 가지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조그만 명성조차 드러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오년(1810, 순조 10) 봄 내가 다산(茶山)에 있을 적에 작은 아들 학유(學游, 1786~1855)마저 돌아간 뒤 오직 이청(李晴=李鶴來, 1792~1861, 호: 靑田)만이 곁에 있었는데, 산은 고요하고 해는 길어 마음을 불일 곳이 없었다. 당시 《시경(詩經)》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남은 뜻을 이청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했다. 이때에 내가 풍증(風症)으로 매우 곤란을 겪어 정신이 맑지 못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본래 선성(先聖)·선왕(先王)의 도에 대해서 몸을 바쳐 진력하여 죽은 뒤에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혹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봄에 <관례작의(冠禮酌儀)>가 이루어졌다. 그 편 의 머리말에 이르기를 “제례(祭禮)를 쉽게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나라의 풍속이 변화를 어렵게 여기기 때문이요, 상례(喪禮)를 쉽게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부형(父兄)·종족(宗族)이 의론함이 많기 때문이요, 혼례(婚禮)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은 양가(兩家)가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직 관례(冠禮)만은 개정하기에 가장 편리하니, 이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옛날의 관례는 번거롭고 글을 갖추어야 하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따를 수 없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활용할 경우 비록 고례(古禮)에 비해 간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관복(冠服)은 제도가 달라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우리 성호(星湖=李翼, 1681~1763, 호: 星湖) 선생께서 간략하게 만든 관의(冠儀)가 있는데, 또한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내가 다산에 있을 적에 마침 주인의 아들이 가관례(加冠禮)를 치르기에 삼가 《의례(儀禮)》·《가례(家禮)》를 취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삼가지문(三加之文)을 갖추는 바이다. 가난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한다.’라는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 말씀도 거의 이런 점에서 취했을 것이다.(원문은 생략한다. - 원주)”라고 했다.

《가례작의(嘉禮酌儀)>가 이루어졌다. 그 편 의 머리말에 이르기를 “혼례(婚禮)에서 친영(親迎)이란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온다는 뜻이다. 우리 동방의 풍속에 혼례는 여자의 집에서 치르는데, 한(漢)·위(魏)의 여러 사적(史籍)을 뒤져보니 기롱하여 폄하(貶下)하고 있어 그것을 읽을 적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근세의 선배들이 풍속을 따라 예(禮)를 만들어 그것을 글로 써 놓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양가(兩家)의 의견이 어긋나 한 곳으로 쉽게 귀결되지 못하면 구차하게 풍속을

따르면서 부끄러운 기색도 없으니, 반드시 말을 세워 후세에 남겨서 성법(成法)이 되게 하기에는 크게 불가한 것 같다. 오늘날 경성의 귀한 집에서는 하루 안에 신랑은 날짐승을 폐백으로 바치고 신부도 폐백을 바치는데, 그를 일러 ‘당일 신부(當日新婦)’라고 하니, 이 어찌 친영이 아니겠는가. 단지 합환주(合歡酒)를 마시는 것이 여자의 집에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점에 대해서 점점 고쳐 나간다면 고례(古禮)에 우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고례 및 《주자가례》를 취하여 틀린 곳을 바로잡아 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래와 같다.(원문은 생략한다. - 원주)”라고 했다.[이 머리말은 《嘉禮酌儀》중의〈婚禮〉(《全書》)Ⅲ-23, 5b.)에 대한 머리말이다.]

봄에 〈가계(家誡)〉를 썼다(글은 본집에 있다. - 원주).

여름에 〈가계〉를 썼다(글은 본집에 있다. - 원주).

가을에 〈가계〉를 썼다(글은 본집에 있다. - 원주).

손암공(巽庵公=丁若銓, 1758~1816, 호: 巽菴)에게 올리는 편지(上仲氏)에 말했다. “몇 년 사이에, 요(堯)·순(舜) 시대의 정치하던 법이 후세에 비해 엄혹하고 빈틈이 없어 물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편안히 한담(閑談)이나 해도 천하가 자연히 태평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이치에 닿지 않으며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의 견해일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 식욕(食慾)·색욕(色慾)만 갖추고 있어 뿌리나 덩굴이 없듯 온통 악습에 젖었을 것이니, 어찌 자연히 태평해질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매양 ‘요·순 시대는 회회(熙熙)하고 호호(皞皞)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순후하고 평담한 뜻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회’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며(글자가 화부(火部)에 있다. - 원주) ‘호호’는 희다는 뜻이니, ‘회회호호’란 만사가 모두 이치가 밝고 명백하여 티끌 하나 터럭 하나라도 그 악을 숨기고 그 추함을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속담에 ‘밤이 낮과 같은 세상’이라는 말이 참으로 요·순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오직 고적(考績: 관리들의 치적을 조사 심사하는 일)이라는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적 제도는 요즘의 ‘팔자제목(八字題目)’과 같이 소루(疏漏)하고 거칠지 않았습니니다.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친히 임금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하게 했으니, 악한 자는 얼굴빛을 거깃으로 꾸밀 수 없었으며, 착한 자도 얼굴빛을 겸양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다하고 나면 말한 것에 대해 고찰해 보는 법(考言之法)이 있으니, ‘말한 것에 대해 고찰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적입니다. 배를 움켜쥐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웃음을 참지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으니, 우(禹)가 자기의 공적을 스스로 말하던 때의 일입니다. 순(舜)임금이 말하기를 ‘가까이 오너라, 우야. 너도 또한 창언(昌言)하라.(창언이라는 것은 드러낸 말이니, 자기 공덕을 드러내 말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말을 드러내 놓고 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 원주)라고 하니, 우가 말하기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기를 생각했을 뿐입니다.(우가 부끄러워 차마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겸손히 “제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고 단지 대강을 간략히 얘기하면서 “저는 오직 부지런히 힘썼을 뿐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 원주)라고 했습니다. 고요(皋陶)가 말하기를 ‘아, 어떻게 했던 말이오?(고요가 정색을 하고 위엄 있게 나무라기를 “고적의 법은 지극히 엄한 것인데, 지척의 임금님 앞에서 어찌 감히 당황하고 머뭇거리기를 이같이 하는가. 부지런히 힘썼다고 한 절목은 무엇인가? 어찌 빨리 자세하게 진술하지 않는가.”라고 한 것이다. - 원주) 하니, 우가 말하기를 ‘홍수가 범람해 하늘을 덮어 넘실넘실 산을 두르고 구렁을 덮어서 백성이 빠져 있기에, 제가 4가지 기구를 타고, 산에 올라 나무를 베며, 익(益)과 함께 날고기 먹는 법을 일러 주었으며(익의 이름을 삼입한 것은 공(功)을 나누려는 뜻이 있다. - 원주), 제가 9천(川)을 터서 사해(四海)에 이르게 하며 크고 작은 도랑을 파서 냇물에 대고(두 번째로 ‘제가’라고 한 것은 치수(治水)의 일은 진실로 자기 혼자 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원주), 직(稷)과 함께 곡식의 씨를 뿌리고 식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먹고사는 방법과 날것을 먹는 법을 일러주었으며, 힘써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쌓여 있는 물자를 교역하니 많은 백성이 곡식을 먹게 되어 온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가리려야 가릴 수 없고 사양하려야 사양할 수 없으며 도망하려야 도망할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공로를 다 말한 것이다. - 원주)라고 했

습니다. 고요가 말하기를 ‘아! 당신의 훌륭한 말을 본받겠습니다.’(“아”하고 탄식한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고, “당신의 훌륭한 말을 본받겠다.”라는 것은 그 도리가 당연히 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원주)라고 했습니다. 기(夔)도 또한 스스로 자기의 공을 아뢰는데 매우 상황하게 거듭거듭 말을 했으니, 그날 한 자리의 광경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한 폭의 생생한 그림과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순임금은 주인 자리에 앉고 고요·우·직이 줄지어 앉아 고적 하던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해와 상서로운 구름이 역력히 눈앞에 떠오르는 참으로 절묘한 광경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순임금은 우의 창언(昌言)을 구하고(오늘날 사람들은 창언을 직언(直言)이라고 한다. - 원주) 고요는 재촉하여 필경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찬양하여 자기의 공을 꼭 채운 것이 되니, 천하에 이와 같은 창언이 있겠으며 천하에 이와 같은 염치가 있겠습니까. 동방삭(東方朔)이나 우맹(優孟, ?~?)이라도 그러한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터인데, 우가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부질없는 짓일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슬러 올라가 이전(二典: 《서경(書經)》의 〈요전(堯典)〉·〈순전(舜典)〉)과 이모(二謨: 《서경》의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皋陶謨)〉)를 본다면 이른바 ‘일을 묻고 말을 살핀다.’, ‘3년마다 고적(考績)한다.’, ‘말로써 아뢰다.’, ‘밭게 공적을 시험한다.’ 등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고 아래와 위가 연이어 있는 것이 모두 이 고적 한 가지 일뿐입니다. 전(典)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며, 모(謨)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입니다. 그 법과 그 계책이 고적이라는 한 가지 일보다 앞서는 게 없다는 점, 이것이 요·순 시대의 정치가 되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순 임금이 바야흐로 진흙으로 빚어 놓은 사람처럼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서 눈을 감고 잠잠게 앉아 있기는 했는데도 천하가 자연히 태평해졌다고 생각하니 헛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천하가 썩어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포퓰(褒姒) 제목에 ‘편안한 정치에 한 고을이 조용하다.’라는 말이 있으니,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순 임금의 당(堂)에 올라 스스로 자기 공을 아뢰게 한다면, 무슨 일을 가지고 아뢰 수 있겠습니까. 또 ‘뼈대 있는 집안의 전해오는 규범을 잘 지키며 혁혁한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으니, 만일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순임금의 당에 올라 스스로 자기 공을 아뢰게 하고 고요가 옆에 있다가 호령을 한다면 무슨 말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요·순 시대의 다스리는 법과 정사의 계책은 고적을 떠나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적은, 직접 대면하여 입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은 스스로 자기의 공적을 서면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속된 세상에서는 만약 스스로 자기의 공을 서면으로 아뢰게 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守令) 된 자들이 혹 수족(手足)을 흔들고 심지(心志)를 움직여 한두 가지 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 듯이 하려고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 자기의 공적으로 올려 바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생민(生民)의 도탄이 어찌다 이다지도 심하게 되었습니까. 아! 누가 이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 임금께 아뢰겠습니까.”

9월에 큰아들 학연(學淵, 1783~1859)이 바라를 두드려 역을함을 하소연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해주시는 은총을 입었다. 이때 홍명주(洪命周, 1770~?, 자: 自天)의 상소(上疏)와 이기경(李基慶, 1756~1819)의 대계(臺啓)가 있었기 때문에 석방되지 못했다.

겨울에 《소학주관(小學珠串)》이 이루어졌다.

1811년(純祖 11, 辛未), 50세 봄에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가 이루어졌다.

겨울에 〈예전상기별(禮箋喪期別)〉이 이루어졌다. 공이 이미 〈예전상복상(禮箋喪服商)〉을 만들어놓았는데, 또 상기(喪期)에 관한 여러 의소(義疏)를 모아 별도로 만들었다. 기(期)라는 것은 내종(內宗)·외종(外宗)이 입어야 하는 상복의 용쇄(隆殺)와 의당 복을 입어야 하는지 입지 않아야 하는지 하는 것과 의당 강복(降服)해야 되는지 강복해서는 안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한 것이다. 이름하여 〈상기별(喪期別)〉이라고 했다.

1812년(純祖 12, 壬申), 51세 봄에 가정공(稼亭公)의 부고(訃告)를 받았다(가정공은 공의 계부(季父)이다. - 원주). 가정공 행장(行狀)을 지었다.

봄에 《민보의(民堡議)》가 이루어졌다. 이때 패서(溲西→쾌서성) 지방 토적(土賊) 홍경래(洪景來, 1771~1812)·이희저(李

禮著, ?~1812) 등이 정주(定州)를 근거지로 반역했는데, 관군이 포위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승첩의 소식이 이르지 않았다. 공이 이에 윤경(尹耕, 1513~?, 자: 子莘)의 <보약(堡約)>을 취하여 현실의 실정에 맞게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 첫째는 <총의(總義)>이고, 다음은 <민보택지지법(民堡擇地之法)>, 다음은 <보원지제(堡垣之制)>, 다음은 <민보수어지법(民堡守禦之法)>, 다음은 <민보편오지법(民堡編伍之法)>, 다음은 <민보지량지법(民堡支糧之法)>, 다음은 <민보농작지법(民堡農作之法)>이며, <민보경야지법(民堡警夜之法)>, <민보상구지법(民堡相救之法)>, <민보점구지법(民堡覘寇之法)>, <민보상벌지법(民堡賞罰之法)>, <해도설보지법(海島設堡之法)>, <산사설보지법(山寺設堡之法)>, <답객난(答客難)>, <천파도설(天耙圖說)>, <호창거설(虎偃車說)> 등으로 모두 3권이였다. 이름하여 《민보의》라 했다. 이는 대체로 병사(兵事)에 관한 일을 민간에 인식시켜 급할 때 큰 계책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겨울에 《춘추고징(春秋考徵)》이 완성되었다. 그 편이 첫머리에 일렀다. “춘추(春秋)란 육예(六藝)의 하나이니 옛날의 이른바 좌사(左史: 왕의 말을 기록한 사관)이다. 왕도(王道)가 행해지면, 말 한마디와 행동 한 가지가 모두 경(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경(書經)》과 《춘추》가 육경(六經)에 들게 된 것이다.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자취가 사라지게 되면 그 왕이 하는 말은 다 비리(鄙俚)하게 되고 그 왕이 하는 일은 무너져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우사(右史: 왕의 행동을 기록한 사관)가 지은 것은 문사(文辭)로 흘러 버렸고 좌사가 기록한 것은 전기(傳紀)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이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가 나뉘어 두 가지가 되었고 존귀함과 비천함의 정도가 현격해지게 되었으나, 기실은 사서도 일찍이 경서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러나 노 은공(魯隱公, ?~기원전 712) 이전의 사서는 없어져 전하지 않고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께서 지으신 《춘추》도 지금은 백분의 일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고 단지 그 의례(義例)만 상고(詳考)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제 《춘추》의 의례를 보니 오직 사실에 의거하여 바로 써서 선과 악이 저절로 나타나 있다. 찬양하거나 깎아 내리거나 덧붙이거나 박탈하는 일은 애초부터 집필자가 능히 조종하거나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유(先儒)들 가운데서 《춘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매우 한 글자 한마디에 집착하여 공자의 정미한 뜻이라 여겨, 주(誅)니, 폄(貶)이니, 상(賞)이니, 포(褒)니 하게 되었고, 빠진 글자나 문장을 끝까지 파고들어 평범한 고사(故事)를 멋대로 견강부회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도 이미 이런 병통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호문정(胡文定=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왕성한 기세에 있어서랴. 명(明) 이후 선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면서 꼭 그러하지는 않다고 밝히는 사람들이 또 까치떼나 벌떼처럼 일어났다. 돌아보건대 나는 몽매하고 고루하여 바야흐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하물며 그 파란을 조장하겠는가. 선유들의 논의를 두루 살펴보니 오직 주자(朱子=朱熹, 1130~1200, 호: 晦庵)의 설이 진실하고 정확하고 공평하고 올바르다. 《어류(語類)》에 실린 천언만어(千言萬語)가 모두 요점에 들어맞는데 내가 또 무슨 군더더기 말을 붙이겠는가. 한선자(韓宣子=韓起, ?~기원전 514)가 노(魯)나라를 방문해서 본 책은 《역상(易象)》과 《춘추》였는데 도리어 ‘주(周)나라의 예가 노나라에 남아 있다.’라고 했으니(소공(昭公) 2년-원주) 《춘추》는 주나라의 예를 증명할 수 있는 책이다. 주나라의 예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춘추》에서 상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건의 종류가 복잡하고 조례(條例)가 많아 다 들 수가 없어서 먼저 <길례(吉禮)>와 <흉례(凶禮)> 두 가지만 잡아 그 대강을 나누어 그 귀취(歸趣)를 바로잡고 세세한 것은 생략하여 미루어 통하게 했다.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등 세 가지 예는 한 가지만 들어 보이면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호자(同好者)가 있다면 보충하여 완성할 것을 바라고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그 초본은 아들 학윤(學游, 1786~1855, 호: 耘浦)가 받은 것이고(무진년(1808) 겨울에 완성한 초고본이다.-원주), 재고본(再稿本)은 이평보(李絃父=李綱會, 1789~?, 자: 絃甫, 호: 雲谷)가 도운 것이다.” 책은 12권이다.

<아암담문(兒菴塔文)>(→ 아암장공담명)을 지었는데 그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강진(康津)에 귀양가 5년째 되던 해에 봄에 아암(兒菴=혜장(惠藏), 1772~1811, 호: 兒庵)이 백련사(白蓮社)에 와서 지냈는데 급히 나를 만나보고자 했다. 하루는 시골 노인들을 따라가서 내 신분을 숨기고 그를 만나보았다. 그와 더불어 한나절 이야기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

아채지 못했다. 이윽고 작별하고 돌아와 북암(北菴)에 이르니 해가 막 저물려고 했다. 아암이 종종걸음으로 뒤쫓아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여 말하기를 ‘공(公)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이십니까. 공은 정대부(丁大夫) 선생이 아니십니까? 빈도(貧道: 중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는 밤낮으로 공을 뵈고 싶어 했는데 공께서는 어찌 차마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손을 잡고 그의 방에 가서 함께 잤다. 밤이 고요해지자 내가 말하기를 ‘듣자 하니 자네는 본디 《주역(周易)》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의심스런 것이 없는가?’라고 하니 아암이 말하기를 ‘정씨(程氏=程頤, 1033~1107, 호: 伊川)의 《역전(易傳)》과 소씨(邵氏=邵雍, 1011~1077, 호: 康節)의 《역설(易說)》과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역학계몽(易學啓蒙)》에는 의심스런 것이 없습니다만 오직 《주역》의 경문(經文)만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역학계몽》 가운데서 수십 장을 뽑아 그 뜻을 물어보았더니 아암은 《계몽》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융통하고 입에 익어 단숨에 수백 자를 외우는데, 마치 구슬이 언덕을 굴러 내리는 듯, 가족부대에서 물을 부어 내는 것 같이 도도하여 끝이 없었다. 내가 크게 놀라 과연 그가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임을 알았다. 이어 그는 문도(門徒)들을 불러 재를 담은 소반을 가져오게 하여 재 위에다 낙서(洛書→하도낙서)와 구궁(九宮)을 그려 그 본말(本末)을 분석했는데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태도였다. 팔을 휘두르며 젓가락을 잡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까지 그어 열다섯으로 하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까지 그어 열다섯으로 했다. 또 가로로 셋, 세로로 셋을 그었는데 어디든지 열다섯이 되지 않음이 없었다. 이날 아암이 재 위에 그리면서 낙서(洛書)를 이야기하는 것을 문밖에 서서 본 비구승들 중 놀라며 머리털을 곤두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밤이 깊어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는데 서쪽 창문에 달빛이 낮과 같았다. 내가 끌어당기면서 ‘장공(藏公)은 자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닙니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건괘(乾卦)의 초효(初爻)가 9(→구·육)라는 말은 무엇을 이룬 것인가?’라 했더니 아암이 ‘9란 양수(陽數)의 극입니다.’라고 했다. 내가 ‘음수(陰數)는 어디에서 극이 되는가?’라고 물었더니 ‘10에서 극이 됩니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서 곤괘(坤卦)의 초효는 10이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아암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 하더니 벌떡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하소연하기를 ‘산승(山僧)이 20년 동안 《주역》을 배워왔지만 단 헛것이었습니다. 감히 물건대 곤괘의 초효가 6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모르겠네. 점대를 제(除)해가는 방법은 최후에 손가락에 남은 것은 4 아니면 2다(4개씩 제해나가면 남은 점대는 4 아니면 반드시 2이다. - 원주). 모두 홀수가 되는데 2와 4는 짝수가 아닌가?’라고 했다. 아암이 처량하게 큰 탄식을 하고 말하기를 ‘우물 안 개구리와 장독 속의 초파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을 청합니다.’라고 했다. 내가 다산(茶山)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가 찾아오는 것이 더욱 잦아 정미한 말과 오묘한 뜻을 크게 부연할 수 있었다.”

1813년(純祖 13, 癸酉), 52세 겨울에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가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이 책은 여러 해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이해 겨울에 완성했는데 40권이였다. 이강회(李綱會, 1789~?, 호: 擊磬子)·윤동(尹洞=尹鍾心, 1793~ 1853)이 함께 도왔다. 《논어(論語)》에 대해서는 이의(異義)가 워낙 많은지라 <원의총괄(原義總括)을 만들어 <학이(學而)에서부터 <요왈(堯曰)까지의 원의를 총괄한 것이 175칙(則)이 되는데 다만 그 대강만 든 것일 따름이다. 또 춘추삼전(春秋三傳) 및 《국어(國語)》에 실린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의 말을 모아 한 편을 만들어 책 끝에 붙이고 <춘추성언수(春秋聖言蒐)라 이름했다. 대개 공자의 말로 다른 경전에 산견되는 것도 많다. 《예기(禮記)》·《맹자(孟子)》에 있는 것은 학자들이 이미 익히 보고서 믿지만, 제자서나 《가어(家語)》 등에 실린 말은 진위가 뒤섞여 다 믿을 수는 없다. 오직 이 책에 실린 것은, 이미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증명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이다. 무릇 63장인데《춘추좌전(春秋左傳)》에서 46장,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서 4장,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서 5장, 《노어(魯語)》에서 8장을 수집했다. - 원주) 고주(古注)를 채택하여 사실을 덧붙였다.

1814년(純祖 14, 甲戌), 53세 여름 4월에 대계(臺啓: 司憲府·司諫院)에서 죄인을 심문하여 올리는 啓辭가 처음으로 정지되었

*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全書》II-7~II-16.

다.[臺啓가 정지되면 이미 처벌한 죄인명부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 장령 조장한(趙章漢, 1743~?)이 사헌부에 나아가 특별히 정지시켰던 것이다. 그때 의금부에서 관문(關文: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을 발송하여 석방시키려 했는데, 강준흠(姜浚欽, 1768~?)의 상소로 막혀 발송하지 못했다.

여름에 《맹자요의(孟子要義)》가 이루어졌다. 공의 묘지문에서 말했다. “맹자(孟子, 기원전 372~기원전 289 추정)가 한 말은 곧 ‘천자의 신하가 천승(千乘)을 차지한다면 3공(公) 6경(卿)이 각각 천승씩 가질 것이니 남는 것은 천승뿐이다. 천자와 9신(臣)이 각각 천승을 가진 것이니, 천자의 녹이 경(卿)의 10배가 되지 않고, 또 소재(小宰·소사도(小司徒) 이하는 조금의 녹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만승(萬乘)의 나라는 진(晉)나라 제(齊)나라 등이고, 한(韓)·위(魏)·조(趙)·전(田)씨 등은 천승 되는 집으로 그 임금을 시해했다. 맹자는 본래 연(燕)나라, 제나라를 만승의 나라로 여겼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정치로써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흉년에 구휼하는 일 등을 말하는 것이지, 한 고조(漢高祖, 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나 송 태조(宋太祖, 재위 960~976)가 도륙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말함이다. ‘하후씨(夏后氏)는 50무(畝)씩을, 은(殷)나라 사람들은 70무씩을 나누어 정전(井田)을 실시했다.’라는 말은 도랑을 묻고 등성이를 평평하게 하여 정전으로 바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기(氣)는 의(義)와 도(道)를 짝하는데 의와 도가 없으면 기가 시들게 된다.’라는 말은 여조검(呂祖僉, ?~1196, 자: 子約, 호: 大愚)이 남긴 뜻이다. 성(性)이란 기호(嗜好)이다(→성기호설). 형구(形龜)의 기호도 있고 영지(靈知)의 기호도 있는데 똑같이 성이다. 《시경(書經)》, 《소고(召誥)》에 ‘성을 절제한다.’라고 했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백성들의 성을 조절한다.’라고 했으며, 《맹자(孟子)》에 ‘마음을 움직여 성을 참는다.’; ‘이목구체(耳目口體)가 좋아하는 것이 성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형구의 기호이다. ‘하늘이 명한 상’, ‘천도와 함께 한다.’; ‘성은 선하다.’; ‘성을 다한다.’의 성은 영지의 기호이다. ‘본연지성(本然之性)’이란 말은 원래 불서(佛書)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유가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는 얼음과 솥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선(愆)에 힘써 인(仁)을 구하라.’라는 훈계이다. 사람의 자식 되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의 형제·부부·손님과 주인 되는 도리는 경례(經禮)가 3백 가지, 곡례(曲禮)가 3천 가지인데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여 성실하다면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 천하 사람들이 인(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지, 만물일체(萬物一體)니,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의미가 아니다. 맹자는 성을 논하면서 이목구체까지 언급하여 이(理)만 논하고 기(氣)는 논하지 않는 병통은 없었다. 왕망(王莽, 기원전 45~기원후 23)과 조조(曹操, 155~220)는 기질이 대개 맑고, 주발(周勃, 기원전 240~기원전 169)과 석분(石奮, ?~기원전 124)은 기질이 대개 탁했다는 것인가. 선과 악은 힘써 행하는 데 달린 것이기 기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9권이다.

가을에 《대학공의(大學公議)》가 이루어졌다. 공의 묘지문에서 말했다. “대학(大學)이란 주자(胄子: 임금으로부터 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代를 잇는 장남)와 국자(國子: 공경대부의 장남을 제외한 子弟)들의 학궁(學宮)이다. 주자와 국자는 아래로 백성을 다스리는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방법을 가르치는데 일반 서민의 자제들이 끼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덕(明德)이란, 효(孝)·제(弟)·자(慈)이지 사람의 영명(靈明)은 아니다. 격물(格物)이란, 물(物)에는 본말(本末)이 있다 할 때의 물을 격(格)하는 것이다. 치지(致知)란,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아는 것이다. 성(誠)이란, 사물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므로 성의(誠意)가 뒷자리에 놓인 것이다. 정심(正心)이란, 수신(修身)하는 것이니, 몸 에 성내는 바가 있으면 고칠 수가 없다.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한다[老耆는 것은 태학(太學)에서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다.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한다[長耆는 것은 태학에서 세자(世子)도 나이에 따라 앉는다는 것이다. 고아를 불쌍히 여긴다[恤孤는 것은 태학에서 고아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다. 백성이 바라는 것은 부(富)와 귀(貴)이다. 군자는 조정에서 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인은 야(野)에서 부(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사람 등용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여 어진 이를 어진 이로 대접하지 않고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지 않으면 군자가 떠나가고, 재산 모으는 일에 절제가 없게 되어 즐거워할 일을 즐기지 못하고 이익을 이롭게 여기지 못하게 되면 소인이 돌아가게 되어,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만다. 그래서

편말(篇末)에 이 두 가지 일을 거듭거듭 경계했다.” 모두 3권이다.(〈자찬묘지명〉에는 빠져 있다.)

《중용자잠(中庸自箴)》이 이루어졌다. 공의 묘지문에 말했다. “《중용(中庸)》에서 다룬 것 이렇다. 순(舜)임금이 전악(典樂)에게 명하여 주자(胄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하고 강직하면서도 포악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오만하지 않도록 했는데, 《주례(周禮)》에 대사악(大司樂)이 국자(國子)를 가르치되, 중화(中和)하고 공경하고 떳떳하도록 했으니 곧 그 유법(遺法)이다. 고요(阜陶, ?~?)가 9덕(德)으로써 사람을 등용했고 주공(周公)이 《서경(書經)》, 〈입정(入政)〉에서 이르기를, ‘9덕의 행실을 충실히 행할 줄 알았다.’라고 한 것도 그 유법이다. 《서경》, 〈홍범(洪範)〉에서 이르기를 ‘높고 밝음에는 부드러움으로 이기고, 숨으려 함에는 강(剛)함으로 이긴다.’라고 했으니 모두 중화의 뜻이다. ‘진실로 그 중(中)을 잡아라.’라고 한 것은 이러한 모든 말들의 큰 강령이 되는 설(說)이다. 용(庸)이란, 항상 오래도록 지속하여 중단하지 않는 덕을 말한다. ‘도(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라는 것도 용이고, ‘백성들로 능히 오래 할 수 있는 자가 드물다.’라는 것도 용이다. ‘일 년 동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용이고 ‘나라에 도(道)가 있어도 변치 않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도 용이다. ‘중도에 그만두는 자는 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도 용이고, ‘떳떳한 덕을 행하고 떳떳한 말을 삼간다.’는 것도 용이다. ‘지극한 정성은 쉽니 없으니 쉽니 없으면 오래 간다.’라는 것도 용이고, ‘문왕(文王)의 순수함은 중단이 없다.’라는 것도 용이다. 안연(顏淵=顏回, 기원전 521~기원전 481)은 석 달 동안 인(仁)을 어기지 않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쯤 인에 이른다.’라는 것도 용이고, ‘하루 종일 상제(上帝)의 길을 힘쓰지 못했다.’라는 것도 용이다. 고요가 9덕의 향목을 들면서 ‘뚜렷하고 변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맺고, 〈입정〉에서 9덕의 훈계를 거듭하기를 ‘오직 변치 않는 덕’이라 했다. 《주역(周易)》에서는 ‘능히 오랫동안 중(中)을 한다.’라고 했다. 이 모두가 중용의 뜻이니 중을 지키고 용(庸)할 수 있으면 성인(聖人)일 따름이다. ‘보지 않음[不聞]’은 내가 보지 않는 것이며 ‘듣지 않음[不聞]’은 내가 듣지 않는 것이다. 하늘의 일에서 ‘은(隱)’은 하늘의 체(體)이며 ‘미(微)’는 하늘의 적(跡)이다. 숨어 있어도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잘 나타남이 없고, 미세해도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남이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삼간다. 하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꺼리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미발(未發)은 평상시에 오래 있는 마음의 상태이지 마음의 지각(知覺)과 사려(思慮)가 발(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물과 닳과 함정은 관리들의 형벌의 화(禍)가 아니다. ‘색은(索隱)’이란 이유 없이 숨는 것이니, 백이(伯夷, ?~?, 이름: 允, 자: 公信)나 태백(太伯, ?~?) 같이 인륜(人倫)의 변을 만나 그러하던 것이 아니다. ‘고친 뒤에 멈춘다.[改而止].’란, 도끼자루로 도끼자루를 어림해서, 길면 고치고 짧아도 고치고, 커도 고치고 작아도 고쳐서 본래의 도끼자루와 같게 한 뒤에야 멈춘다는 말이다. 사람의 강서(強恕)도 이와 같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심인심(道心人心)’이란 말은 《도덕경(道德經)》에서 나왔고 ‘유정유일(唯精唯一)’이란 말은 《순자(荀子)》에서 나왔으니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 도(道)와 인(人)의 사이란 그 가운데를 붙잡을 수 없으며, 하나가 된 뒤에 정(精)일 수 있는 것이지 둘을 잡아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3권이다.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가 이루어졌다. 그 책머리에서 말했다. “건륭(乾隆) 갑진년(1784, 정조 8)에 임금께서 ‘중용의 문(中庸疑問) 70조(條)를 내려 대학생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했다. (그때 공은 성균관에 있었다.) 그때 죽은 벗 광암(曠菴) 이벽(李穡, 1754~1786, 호: 曠菴)이 수교(水橋)에서 독서하고 있었으므로 대답할 것을 물었더니 광암이 기꺼이 토론해주어 서로 더불어 초고를 만들었다. 돌아와서 보니 중간중간에 이치는 관촬으나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곳이 있어 내 뜻대로 줄이고 윤색하여 임금께 바쳐 보시게 했다. 며칠 후 도승지(都承旨) 김상집(金尙集, ?~?)이 승지 홍인호(洪仁浩, 1753~1799)에게 이르기를 ‘오늘 임금께서 경연에서 유시하시기를, 성균관 유생들의 대답한 것이 모두 거칠고 잡스러웠는데 유독 아무개가 답한 것만은 특이하니 반드시 식견 있는 선비일 것이라 했네.’라고 했다. 대개 우리나라 선비들의 리발기발(理發氣發)의 설에 있어서 내가 대답한 것이 임금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지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3년 후 병오년(1786, 정조 10) 여름에 이벽이 죽었고, 8년 후 계축년(1793, 정조 17) 가을에 내가 명례방(明禮坊)에서 탈고했는데, 대답한 것에 건강부회(牽強附會)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술년(甲戌年, 1814, 순조 14) 가을에 《중용자

잡)을 지었는데 비로소 갑진년(1784, 정조 8)의 구고(舊稿)를 가져다가 다시 줄이고 윤색했다. 혹 본지(本旨)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따라서 고쳤고, 혹 임금이 질문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분변해야 할 곳이 있으면 절(節)에 맞추어 증보했는데, 모두 6권이였다. 이제 임금님도 승하하시어 아득히 하늘에 계셔 그 옥음(玉音)을 영원히 들을 수 없으니 질문할 곳도 없다. 이벽과 토론하던 때를 헤아려 보니 이미 30년이 됐다. 가령 이벽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 덕(德)에 나아가 널리 배운 것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신(新)·구고(舊稿)를 모아서 보니, 분명히 하나는 남고 하나는 없어지게 될 것이나 탄식한들 어찌하겠는가. 책을 어루만지며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다.”

삼가 살피건대, 《중용강의보》에서 논한 바는 새로운 뜻이 또한 많다. 첫째, 음양오행(陰陽五行)이 만물을 화육(化育)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물(物)은 오상(五常)의 덕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둘째, 수(修)라는 글자에는 품절(品節)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과(過)·불급(不及)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나서는 죽을 때까지란 말은 오직 한길로 갈 뿐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섯째,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不睹不聞]’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함을 이르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일곱째, 발(發)하기 전의 광경은 죽은 나무(枯木)와 꺼진 재(死灰)와 같고 선가(禪家)의 입정(入定)과 같다는 점을 밝혔다. 여덟째, 기뻐할 만한 것과 성낼 만한 것은 모두 칠정(七情)이 발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점검하여 천명(天命)에 들어맞아야만 그 중(中)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홉째, ‘만물일체(萬物一體)’란 말이 고경(古經)에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밝혔다. 열째, 중용의 ‘용(庸)’은 평상의 이치로 풀이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하는 줄이고 기록하지 않는다.)

겨울에 《대동수경(大東水經)》이 이루어졌다. 이청(李淸=李鶴來, 1792~1861, 호: 靑田)으로 하여금 집주(集注)하게 했다.

겨울에 이재의(李載毅, 1772~1839, 호: 文山, 자: 汝弘)의 편지에 답하여 학문과 사변(思辨)의 공(功)을 논했다.

1815년(純祖 15, 乙亥), 54세 봄에 《심경밀험(心經密驗)》과 《소학지언(小學枝言)》 두 책이 이루어졌다. 그 책머리에 말했다. “내가 곤궁하게 살면서 일이 없어 육경사서(六經四書)를 연구한 지 여러 해 되었다.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뽑아서 간직해두었다. 이에 그 독실하게 행할 방도를 추구해보니, 오직 《소학(小學)》과 《심경(心經)》이 여러 경전 가운데 정수를 밝힌 것이었다. 배우는 이들이 진실로 이 두 책을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 《소학》으로써 밖을 다스리고 《심경》으로써 안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자(賢者)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내 일생을 돌아보면 불우하여 노년(老年)의 결과가 이와 같지 못하구나! 《소학지언》은 구주(舊注)를 보충한 것이고, 《심경밀험》은 나 자신에게 시험해 봐서 스스로 경계한 것이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 다스리는 방법에 힘을 쏟아 경전 연구를 《심경》으로 끝맺으려 한다. 아, 실현되었는가 말겠는가! 모두 2권이다.”

《심성총의(心性總義)》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괄컨대, 마음속에는 세 가지 이(理)가 있다. 그중 성(性)에 대하여 말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니 이른바 맹자(孟子, 기원전 372~기원전 289 추정)의 성선(性善)이다. 권형(權衡)에 대하여 말하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고자(告子, ?~?, 이름: 不害)가 소용돌이치는 물(湍水)에 비유한 것이니, 양웅(揚雄, 기원전 53~기원후 18)의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설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그 행사(行事)에 대하여 말하면, 선하게 되기는 어렵고 악하게 되기는 쉽다는 것이어서 순자(荀子, 기원전 298~기원전 238, 본명: 荀卿)의 이른바 성악설(性惡說)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순경과 양웅은 본래 성(性)을 잘못 알았으므로 차이가 난 것이지, 마음속에 본래 이 세 가지 이(理)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이미 사람에게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또 아래로는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쉬운 도구를 부여했으며, 위로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본성을 부여했다. 이런 본성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옛날부터 조그마한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라.’, ‘덕성을 높여라.’, ‘성인은 본성을 보배로 여기니 감히 떨어뜨려 잃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1816년(純祖 16, 丙子), 55세 봄에 《악서고존(樂書孤存)》이 이루어졌다. 그 책머리에 말했다. “육예(六藝)의 학은 진(秦)나라 때 모두 없어졌다.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다섯이고 일어나지 못한 것이 한 가지이니, 《악기(樂記)》가 그것이다. 다

른 경전에 산견되는 것으로는 오직 <우서(虞書)> 몇 군데와 <주례(周禮)>의 5, 6절뿐이다. 진한 때에 추연(鄒衍, 기원전 305년~기원전 240년 사이 추정)의 오행(五行)의 학문이 울연(鬱然)히 크게 일어나자 양적(陽翟: 현재의 하남성(河南省) 우주시(禹州市)의 큰 장사꾼(여불위(呂不韋, 기원전 292~기원전 235)를 말함)이 엄연히 선비들의 영수가 되어, 위로는 포악한 진(秦)나라의 세력을 끼고 아래로는 쇠망한 주(周)나라의 습속을 타고 고삐를 당겨 이리저리 달리기를 멋대로 했으니, 그 설은 왕도(王道)와 패도(霸道)가 섞이고 사(邪)와 정(正)이 뒤죽박죽이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漢)나라에서 민간의 서적을 구하게 되었을 때 슬쩍 성경(聖經)이 되었으니 <월령(月令)>의 종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일파는 엄연히 악가(樂家)의 조종(祖宗)이 되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확고히 굳어졌다. 그 천 갈래 만 갈래가 오류에 오류를 답습하여 깨뜨릴 수가 없다. 오늘날 배우는 자가 고악(古樂)을 배우고자 해도 <우서>나 <주례>의 적막한 몇 마디뿐이어서 아득히 의지할 데가 없지만, 금악(今樂)을 배우고자 하면 <여씨춘추(呂氏春秋)> <여람(呂覽)>, <한사(漢史)>, <백가(百家)>의 설들이 상세하게 두루 갖추어져 거기에 의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악(樂)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가져다 문호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몸으로는 추연과 여불위의 자취를 따르고 입으로만 <우서>와 <주례>의 계통을 있는다고 하니, 위로는 선성(先聖)의 정확(正學)을 속이고 아래로는 미래의 영재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불선(不善)함이 심하다! 여러 가지 오류를 잡막하게 엮어 거것을 꾸며 존속하느니, 차라리 외롭게 하나의 진실을 내세워 정말로 없어지는 것을 구제하는 것이 낫다. 비록 그 절목(節目)이 무너지고 조리(條理)가 엉성하지만 대강이 바로잡혔으니 본원(本源)이 맑아졌다. 이것으로써 제수(制數)·입균(立均)·분조(分調)·성문(成文)하여 팔음(八音)으로 하여금 잘 조화되고 서로 자리를 빼앗음이 없게 한다면, 저 고금(古今)의 악(樂)을 갖다 붙이고 진짜와 가짜를 뒤섞어 놓은 것과는 같은 수준에서 논할 수 없다. 다만 풍증으로 힘이 빠져 강적들과 힘든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고악(古樂)이 이미 없어지고 선성(先聖)의 도가 캄캄해졌으므로 내가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문(經文) 몇 조(條)를 취하여 첫머리에 두고 다음으로 추연과 여불위의 학설에 대하여 대략 정리를 했다. 이청(李晴=李鶴來, 1792~1861, 호: 靑田)에게 받아 적게 하고 김중(金宗, ?~?)에게 주어 달고하게 했다. 이름하여 <악서고존>이라 했는데 12권이다.’

여름 5월, 가서(家書)[<答淵兒>]에 답했다. 그 답서는 다음과 같다. “보낸 편지는 자세히 보았다. 천하엔 두 개의 큰 기준이 있으니, 하나는 시비(是非)의 기준이고 하나는 이해(利害)의 기준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4가지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은 것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면서 해를 입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을 추종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가장 낮은 등급은 옳지 않은 것을 추종하여 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제 나에게, 필친(筆泉: 공의 사촌 처남인 판서(判書) 홍의호(洪義浩, 1758~1826)이다.)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할 것을 받고, 또 강(姜준흠(姜浚欽, 1768~1833, 호: 三溟)이다)·이(이기경(李基慶, 1756~1819)이다.)에게 꼬리를 치며 동정을 애걸해 보라고 했는데, 이는 세 번째 등급을 택하려는 것이나 필친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니, 내가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는가. 대저 조장한(趙章漢, ?~?)의 일은 나에게 불행한 일이다. 하루 만에 내 것은 멈춰 두게 하고 저들 것을 올렸다(장령(掌令) 조장한이 갑술년(1824, 순조 24) 봄에 사헌부에 나아가, 이기경이 공(公)을 논하는 계(啓)를 멈추게 했다. 같은 날 계(啓)를 올려 이기경이 몰래 권유(權裕, 1729~1804)를 비호한 죄를 논했다.)[권유는 1790년 윤지눌(尹持訥, 1762~1815)이 급제한 후 한 달 만에 史官으로 추천된 데 반대하다가 창원(昌原)에 유배되기도 했다.].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니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일 따름이다. 동정을 애걸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강준흠(姜浚欽, 1768~1833, 호: 三溟)이 작년에 올린 상소는 그에게는 이미 쏘아 버린 화살, 아마 죽는 날까지 내 욕이 입에 꿩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동정을 애걸해 봤자 그 사람이 나를 성토하는 일을 늦추고 잘못을 뉘우치겠는가. 강씨(姜氏)가 이러하니 이기경도 한통속인데 강씨를 배반하고 나에게 너그럽게 대할 리가 없다. 동정을 빌어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강씨와 이씨가 뜻을 이루어 그럴 만한 위치에 있게 되면 반드시 나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나를 죽인다 해도 <순수(順受)>라는 두 글자 외에는 딴 방도가 없는데, 하물며 나를 석방시키라는 관문(關文)을 저지시킨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내

가 절개를 굽혀서야 되겠는가. 비록 내가 수절(守節)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세 번째 등급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네 번째 등급이 되는 것을 면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한번 동정을 애걸한다면 세 사람이 모여 몰래 비웃기를 ‘저 사내는 진짜 간사한 사람이구나.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를 속이고 다시 올라와서는 마음대로 겁나는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밖으로는 빈말로 나를 풀어줄 뜻을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 막대기를 박아놓거나 위급할 때 돌을 던지는 것이 독수리 같을 것이니 내가 네 번째 등급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필천(筆泉)과 나는 본래 조금도 원한이 없었는데, 갑인년(1794, 정조 18) 이래 까닭 없이 나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더니 을묘년(1795) 봄 그가 잘못 시기하고 있음을 알고 털어 놓고 이야기했으므로, 지난날의 입씨름 같은 것은 물 흐르듯, 구름 걷히듯 죄다 씻어버렸다. 신유년(1801) 이후 한 글자의 편지라도 서로 통해야 한다면 그가 먼저 해야겠는가, 내가 먼저 해야겠는가? 그 사람은 나에게 문안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도리어 내가 편지하지 않는다고 허물을 돌리니, 이는 기세당당한 위세로 나를 지렁이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너는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외야 하는가를 한마디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 너 또한 부귀영화에 현혹되어 그런 것이냐? 그가 나를 폐족(廢族)이라 여겨 먼저 편지를 보내지 않기에 내가 머리를 쳐들고 대항하는 것인데, 내가 먼저 동정을 애걸하는 편지를 쓰다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일은 진실로 큰일이다. 그러나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사람이란 때때로 고기를 버리고 곰을 취할 때도 있듯이 삶을 버리고 죽음을 취할 때가 있다. 허물며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조그마한 일로 하여 남에게 꼬리를 치며 동정을 애걸한다면, 만일 나라에 외침이 있을 경우 임금을 배반하고 짐승 같은 적군에게 투항하지 않을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운명이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운명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천만만 기다리는 것은 진실로 도리가 아니다. 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했다. 그런데도 내가 돌아갈 수 없다면 이 또한 운명일 뿐이다. 강씨가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하지 말고 시일을 기다려 보는 것이 도리에 십분 가까우니 다시는 여러 말 하지 말라.”

여름 6월에 손암(巽庵) 선생(→정약전)의 부음(訃音)을 들었다. 박재평(朴載宏, ?~?)을 보내 나주(羅州)로 영구를 돌아오게 했다. 이평보(李紘父=이강희(李綱會, 1789~?, 자: 紘父, 호: 擊磬子))에게 주는 편지에 말했다. “돌아가신 형님은 덕행과 도량이 넓고 학문과 식견이 깊고 밝아 내가 감히 견줄 수 없지만, 부지런하고 민첩한 것은 나보다 못했다. 그래서 저술한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이 같은 분은 다시는 없을 것이니, 나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 신문받은 죄인으로서 압송하던 장교들을 울며 작별하게 한 사람은 오직 돌아가신 형님 한 분뿐이었고, 유배된 죄인으로서 온 섬사람들이 길을 막고 머물기를 원한 사람도 오직 돌아가신 형님 한 분뿐이었다. 돌아가신 정조대왕(正祖大王, 재위 1776.3~1800.6)의 간곡한 교서(敎書) 10줄에는 매양 그 동생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아! 형님을 알아주기로는 임금님만 한 분이 없었다. 온 섬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주었으니, 이 마음 아프고 답답한 바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보낸 편지(寄二兄)에 말했다. “6월 초6일은 내 어진 중씨(仲氏)가 세상을 떠난 날이다. 아, 어질고도 궁하기가 이 같은 분이 있었겠는가! 돌아가심이 원통하여 울부짖으니 나무와 돌도 눈물을 흘리는데 다시 또 무슨 말을 하리요. 외로운 천지간에 다만 손암 선생만이 나의 지기(知己)였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내 비록 터득한 것이 있다 한들 어느 곳에서 입을 열어 말하겠는가. 사람에게 지기가 없으면 죽는 것만도 못하다. 아내도 지기가 아니고 자식도 지기가 아니고 형제·친척도 지기가 아니다. 지기인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또한 슬프지 않겠는가. 경집(經集) 240책을 새로 장정해서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 내가 장차 이것을 불태워버렸으면 한다. 율정(栗亭)에서의 이별이 천고에 애통하여 견디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큰 덕행과 도량, 깊고도 정밀한 학문과 식견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그 오활(迂闊)한 면만 보고서 고박(古朴)하다고 여겨 조금도 흠모하는 뜻이 없었다. 자질(子姪)들이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이 지극히 애통할 뿐이지 다른 것은 슬퍼할 바가 없다. 요사이 수령(守令)으로서 서울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오게 한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다른 섬으로 옮겨갈 때 본래 있던 섬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만류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집안에 큰 학덕을 갖춘 분이 계시는데도 그 자질들마저 알아주지 못했으니 원통한 일이 아닌가. 돌아가신 정조대왕께서 신하를 알아보는 현명함이 있어 매양 ‘형이 동생보다 낫다.’라고 하셨으니, 아! 훌륭한 임금께서는 형님을 알아주셨다.”

순암 선생의 묘지명을 지었다(本集에 실려 있다.→〈선중씨정약전묘지명〉).

거울에 이굉보(李紘父)의 편지에 답했다(本集에 실려 있다).

1817년(純祖 17, 丁丑), 56세 가을에 《상의절요(喪儀節要)》가 이루어졌다. 무릇 6편으로 상3편은 시졸(始卒)로부터 빈(殯)까지 인데 공의 장자(長子)가 받아 적은 것이다. 하1편은 계빈(啓殯)으로부터 상(祥)·담(禫)까지인데 이굉보(李紘父)의 물음에 답한 것이다. 이것들을 모아 책을 만들어 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또 〈어서차기(禮書節記)〉 1편과 〈오복연혁표(五服沿革表)〉 1편을 이 책 끝에 붙여 합하여 《상의절요》라 이름했다.

《방례초본(邦禮草本)》의 저술을 시작했는데 끝내지는 못했다. 살피건대, 이 책은 또한 《경세유표(經世遺表)》라고도 한다. 경세란 무엇인가? 관제(官制)·군현지제(郡縣之制)·전제(田制)·부역(賦役)·공시(貢市)·창저(倉儲)·군제(軍制)·과제(科制)·해세(海稅)·상세(商稅)·마정(馬政)·선법(船法)·영국지제(營國之制) 등을 지금 쓰이나 않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經紀)를 세워 진술함으로써 낡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무릇 49권인데 대강은 이미 짜였지만 소조목(小條目)은 혹 빠진 것이 있다. 또 아방공부지제(我邦貢賦之制) 같은 조목은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은명(恩命)이 있었기 때문에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6관은 모두 6권이고 그다음은 〈천관수제(天官修制)〉가 5권인데, 동반관계(東班官階)·서반관계(西班官階)·종친훈척(宗親勳戚)·외명부(外命婦)·외관지품(外官之品)·직품표(職品表)·삼반관계(三班官制)·군현분예(郡縣分隸)·고적지법(考績之法)·경관고공표(京官考功表)·경관고예표(京官考藝表)·외관고공표(外官考功表)·우후변장등고공표(虞候邊將等考功表)·군현분등(郡縣分等)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지관수제(地官修制)〉 35권인데, 전제(田制)·정전론(井田論)·정전제도(井田圖)·관전별고(官田別考)·방전의(邦田議)·팔도전결시기표(八道田結時起表)·기사추대개장(己巳秋大槩狀)·아방정전의(我邦井田議)·어린도(魚鱗圖) 등으로 되어 있고, 전제별고(田制別考)에는 결부고변(結負考辯)·양전고(量田考)·방전시말(方田始末)·어린도설(魚鱗圖說)·전제보유(田制補遺)의 항목이 들어 있으며, 또한 교민법(教民法)·갑을부참계룡산론(甲乙符讖鷓鴣山論: 역시 教民에 속한다)·구부론(九賦論)·직공법(職貢法)·부공제(賦貢制)·역정지례(力征之例)·이사지례(弛舍之例)·방부고(邦賦考)·호적법(戶籍法)·창름지저(倉廩之儲)·균역추의(均役追議)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춘관수제(春官修制)〉 2권으로, 과거지규(科擧之規)·치선지액(治選之額)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하관수제(夏官修制)〉 1권으로 무과(武科)의 내용이며, 다음은 〈추관수제(秋官修制)〉, 그다음은 〈동관수제(冬官修制)〉인데, 아방영국도설(我邦營國圖說)·선의(船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 완성하지 못했다.

1818년(純祖 18, 戊寅), 57세 봄에 《목민심서(牧民心書)》가 이루어졌다. 목민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법으로써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을 3기(紀)로 하고,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을 육전(六典)으로 하여 진황(賑荒)으로 끝을 맺었다. 각각 6조(條)씩 편성했는데, 고금의 사례를 찾아 배열하여 간악하고 거짓된 것을 들추어내어 지방관에게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공의 심정이었다. 무릇 48권이다. 첫째는 부임육조(赴任六條)인데, 제배(除拜)·치장(治裝)·사조(辭朝)·계행(啓行)·상관(上官)·이사(莅事)로 되어 있다. 다음은 율기육조(律己六條)인데, 칙공(勅躬)·청심(淸心)·제가(齊家)·병객(屏客)·절용(節用)·낙시(樂施)로 되어 있다. 다음은 봉공육조(奉公六條)인데, 선화(宣化)·수법(守法)·예제(禮際)·문보(文報)·공납(貢納)·왕역(往役)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애민육조(愛民六條)인데, 양로(養老)·자유(慈幼)·진궁(賑窮)·애상(哀喪)·관질(寬疾)·구재(救災)로 되어 있다. 다음은 이전육조(吏典六條)인데, 속리(束吏)·어중(馭衆)·용인(用人)·거현(擧賢)·찰물(察物)·고공(考功)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호전육조(戶典六條)인데, 전정(田政)·세법(稅法)·곡부(穀簿)·호적(戶籍)·평부(平賦)·권농(勸農)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예전육조(禮典六條)인데, 제사(祭祀)·빈객(賓客)·교민(教民)·흥학(興學)·변등(辨等)·과예(課藝)로 되어 있다. 다음은 병전육조(兵典六條)인데, 침정(簽丁)·연졸(練卒)·

수병(修兵)·권무(勸武)·응변(應變)·어구(禦寇)로 되어 있다. 다음은 형전육조(刑典六條)인데, 청송(聽訟)·단옥(斷獄)·신형(慎刑)·홀수(恤囚)·금포(禁暴)·제해(除害)로 되어 있다. 다음은 공전육조(工典六條)인데, 산림(山林)·천택(川澤)·선해(繕廩)·수성(修城)·도로(道路)·장작(匠作)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진황육조(賑荒六條)인데, 비자(備資)·권분(勸分)·규모(規模)·설시(設施)·보력(補力)·준사(竣事)로 되어 있다. 다음은 해관육조(解官六條)인데, 체대(遞代)·귀장(歸裝)·원류(願留)·결유(乞有)·은졸(隱卒)·유애(遺愛)로 되어 있어, 모두 72조이다.

여름에 《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는 《상례외편(喪禮外編)》에 편입되어 있다.)가 이루어졌다(모두 2권이다).

가을 8월에 이태순(李泰淳, 1759~1840, 자: 來卿)의 상소로 관문(關文)을 발하여 다산(茶山)을 떠나 14일에 비로소 열수(洑水)의 본집으로 돌아왔다.

효부 심씨(沈氏) 묘지명*을 지었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효부 심씨는 내 친구 심오(沈澳)의 딸이요, 내 작은아들 학유(學游, 1786~1855)의 아내이다. 나이 열네 살에 우리 집으로 시집왔으니 곧 가경(嘉慶) 경신년(1800, 정조 24) 봄이었다. 이해 여름 임금(정조(正祖, 재위 1776.3~1800.6))이 승하하셨고 그다음 해 신유년(1801, 순조 1) 봄에 내가 영남으로 귀양 갔다가 겨울엔 강진으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병자년(1816) 8월 초10일에 효부가 죽었다. 죽은 지 3년 만인 무인년(1818) 가을에 향리로 돌아오니 그 무덤엔 이미 풀이 무성했다. 시어머니 홍씨(洪氏)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며느리는 유순하고 조심성이 있어 시어미 섬기기를 친어머니 같이 하고, 시어미 사랑하기를 친어머니 같이 하여, 한 이불에서 잠자고 남은 밥을 먹으며 18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미가 병이 많아 겨울밤에 이질로 설사하기를 십여 차 했는데 효부는 매번 일어나서 따라가 대변보는 일을 도와주고 신음소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눈바람 치는 추위에도 게으른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좁아서 마음에 드는 일이 드문데도 시어머니의 말이 이리하니 마땅히 효부라 할 만하다. 오랜 병으로 배태를 하지 못하여 소생이 없다. 명(銘)은 이리하다.

시아버지 섬기기 일 년뿐이라

나는 그 어짊을 알지 못하나

시아머니 섬기기 17년이라

시아머니를 두고 예쁘다 하네.

1819년(純祖 19, 己卯), 58세 여름에 《흠흠신서(欽欽新書)》가 이루어졌다. 이 책의 처음 이름은 《명청록(明清錄)》이었는데 후에 <우서(虞書)>의 “흠재흠재(欽哉欽哉) 즉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뜻을 써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

겨울에 《아언각비(雅言覺非)》가 이루어졌다. 그 서(序)에 말했다. “학(學)이란 무엇인가? 학이란 깨닫는 것(覺)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잘못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바른 말(雅言)에서 깨달아야 한다. 쥐를 옥 덩어리라고 말했다가 조금 후에 이를 깨달아 ‘이것은 쥐일 따름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가 조금 후에 이를 깨달아 ‘이것은 사슴일 따름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여, 이미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를 학(學)이라 이르는 것이다.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악한 일은 작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문장 다듬기를 배우는 사람도 ‘악한 일은 작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이는 학문이 이미 먼 데까지 진전된 사람이다. 학문이란 다 전해 듣는 것일 따름이다.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를 들어 보이면 셋의 반응을 나타내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이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책무이다. 모두 조사해서 말하는 것은 끝이 없으므로 대강을 말하는 것이요, 그 그릇된 것을 그르다고 하여 이에서 그친다.” 모두 3권이다.

*《全書》I-16, 37b.

1820년(純祖 20, 庚辰), 59세 겨울에 웅산(翁山) 윤정언(尹正言: 윤서유(尹書有, 1764 ~ 1821, 호: 翁山))의 묘지명(司諫院正言翁山尹公墓誌銘)을 지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공의 이름은 서유(書有), 자(字)는 개보(皆甫)다. 건륭(乾隆) 경술년(1790, 정조 14) 연간에 공이 북으로 와 서울에서 노닐 때 우리 형제들과 교분을 맺었다. 내가 강진으로 귀양 간 이듬해인 임술년(1802, 순조 2)에 공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그의 사촌동생 시유(詩有, 1780 ~ 1833)를 보내어 몰래 읍으로 들어와 만나 보도록 했는데 술과 고기를 주면서 위로하기를 ‘큰아버지께서 옛일을 생각하시어, 친구의 아들이 곤궁하게 되어 우리 고향에 의탁하고 있는데 비록 속식을 시켜줄 수는 없을망정 단속이 두려워 위문과 음식 대접을 안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로부터 혹 밤이면 찾아와서 정의(情誼)를 계속해 갔다. 다산(茶山)으로 옮기게 되자 공의 집과는 더욱 가까웠다. 공은 그 아들 창모(昌謨, 1795 ~ 1856)를 나에게 보내어 경사(經史)를 배우게 했으며, 드디어 혼인할 것을 의논했고 공의 집을 옮길 것을 의논했다. 가정(嘉慶) 임신년(1812, 순조 12)에 창모가 우리 집에 장가들었고 그 이듬해에 공의 온 가족이 북으로 이사했다. 이것이 두 집안이 서로 사귀게 된 본말이다. 목리(牧里)의 서쪽 웅중산(翁仲山)에 조그마한 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를 웅산(翁山)이라 했다(웅중산은 耽津의 남쪽, 石門 아래에 있다). 그 동쪽에 용혈(龍穴)이 있는데 제법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또 그 서쪽에 농산(農山) 별장이 있는데, 덕룡산(德龍山: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산)의 여러 봉우리가 나열해 있었고, 집과 마주보는 곳에 조석루(朝夕樓)가 있어 푸른 산기운을 움켜쥘 수 있었다(朝夕樓記). 옛날 내가 공과 함께 노닐 때 봄가를 좋은 날마다 민어를 회치고 낙지를 삶아 술 마시고 시 읊으며 유희하곤 했다. 공이 이사 온 지 6년 만인 무인년(1818, 순조 18)에 내가 비로소 북으로 돌아와 초라담(鈔羅潭)에 배를 띄우고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며 발을 씻기도 하고 석양녘에 소요하면서 함께 더불어 아픔을 걱정하고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며 사돈 간의 정의(情誼)를 누렸다.”

1821년(純祖 21, 辛巳), 60세 봄에 《사대고례산보(事大考例刪補)》가 이루어졌다. 그 서문에 말했다. “옛날 가정(嘉慶) 4년 기미년(1799, 정조 23) 봄에 정종대왕(正祖(正祖, 재위 1776.3~1800.6))께서, 청나라 사신이 늦게 오게 되었으므로 지패(紙牌)·목패(木牌)의 예(例)를 상고하도록 명했다. 이보다 앞서 사역원 정(司譯院正) 김윤서(金倫瑞, ?~?)·현계환(玄啓桓, ?~?) 등이 《동문회고(同文彙攷)》를 편찬했는데 번잡할 뿐 요점이 적어 참고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동문회고》 및 《통문관지(通文館志)》·《대전회통(大典會通)》을 가져다가 깎고 보충하여 별도로 책 한 권을 만들어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듬해 여름에 임금님이 갑자기 승하하여 일이 실행되지 않았다.道光(道光) 원년(1821, 순조 21) 봄에 사역원 정이시승(李時升, ?~?)이, 이미 유명(遺命)이 있었으니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통문관지》는 연차순(年次順)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길흉(吉凶)·상변(常變)이 뒤섞여 참고하기 어렵고, 《동문회고》는 상세하게 만드는 데에 힘썼기 때문에 복잡·산만하고 범위가 넓어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고 하나는 번잡하여 그 평균을 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제 두 책을 가져다가 일의 종류대로 모아서 중복된 것은 삭제했다. 무릇 나라 안의 문헌 및 중국의 서적을 널리 찾아 사대(事大)에 관계있는 것은 모두 모으고 분류하여 편찬을 만들었는데, 26편이었다. 이름하여 《사대고례》라 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로 이청(李淸=李鶴來, 1792~1861, 호: 靑田)이 편찬을 맡아 했는데, 삭제하거나 보충할 것은 모두 나에게 재가를 받았다. 범례(凡例)·제서(題辭) 및 비표(比表)·안설(按設) 등은 내가 쓴 것이다. 이제 그 초고에 적어서 후일 이 사실이 인멸되지 않도록 하노라.”

가을 9월에 백씨(伯氏) 진사공(進士公=정약현(丁若鉉, 1751~1821, 호: 黼淵))의 상을 당했다. 진사공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本集에 보인다.)→〈선백씨정약현묘지명(先伯氏丁若鉉墓誌銘)〉.

겨울에 남교(南臯) 참의(參議) 윤지범(尹持範, 1752 ~ 1821, 자: 无咎)의 묘지명을 지었다→〈남교윤지범묘지명(南臯尹持範墓誌銘)〉.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옛날 돌아가신 임금 갑인년(1794, 정조 18) 가을 9월 중순에 남교 윤공(尹公)이 친구 오록 인을 이끌고 백운대 꼭대기에 올라 호기롭게 휘파람 불며 시 읊고 노래하기를 곁에 아무도 없는 듯이 했는데 사실은 나도 함께 있었다. 돌아와서, 촛불에 국화그림자 구경하는 잔치를→〈국영시서(菊影詩序)〉 죽란서옥(竹欄書屋: 明禮坊

에 있었던 정약용의 집)→〈죽란시사첩서(竹欄詩社帖序)〉에서 벌었는데, 모인 사람은 8, 9인이었고 남고가 모임을 주재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각자 시를 수십 수 지었는데, 오직 성조(聲調)만 격렬했을 뿐 그 이외의 것은 추구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중씨(仲氏) 손암 선생(정약전(丁若銓, 1758~1816, 호: 巽菴) 및 한치웅(韓致鷹, 1760~1824, 자: 僊父)·채홍원(蔡弘遠, 1762~? 자: 邇叔)·윤지눌 등 여러 사람이 공을 추대하여 사백(詞伯)으로 삼았다. 매양 한 편을 지을 때마다 공은 기다란 소리로 읊조렸는데 가락이 맑고 깨끗하여 적막한 사방에서 오직 공의 목소리만 들렸다. 이때는 채제공(蔡濟恭, 1720~1799, 호: 樊翁)이 정승으로 있었고 대릉(大陵)과 소릉(小陵)[大陵은 尹弼秉(1730~1810, 호: 無號菴)·蔡弘履(1737~1806, 호: 岐川)·李鼎運(1743~1800, 호: 五沙) 형제이며, 小陵은 李家煥(1742~1801)이다. 이들이 貞陵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이 재신(宰臣)으로 보필하며 쪽 늘어서 있을 때였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또 뒤따르며 모임을 가지고 있어 풍류가 너그럽고 온전하여 칭찬받기에 충분했으니 참으로 번성하던 한때의 찬란함이었다. 그 뒤 6년이 지난 기미년(1799, 정조 23) 봄에 채제공이 별세했고 그 이듬해 여름에 선대왕(先大王)이 승하하셨고 또 그다음 해 봄에 화란이 일어나 나는 장기(長鬚)(현재 경상북도 포항 지역)로 귀양 갔다. 무릇 나와 교분이 있는 사람들로 뜻밖의 횡액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풀을 베듯 새를 잡듯, 잡아가두어 조사하고 처단하자고 의논해버리자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법망에 걸려들까 봐 두려워 떨었다. 이러한 때에 공은 장기에 귀양 살고 있는 나에게 시를 보내왔는데,

산에 올라 긴 노래 읊조려 보지만
 동해는 아득히 만 리나 깊네
 하만자(何滿子)에 맑은 눈물 흘리지 말게
 바라는 소식 광릉금(廣陵琴)에 남아 있다네.
 벗들은 있지만 편지 한 장 아니 오고
 다만 고향 산천 꿈속에 찾네
 우리들 옛 흔적 길이 남아 있으리라.

라고 했다. 내가 이 시를 받아보고 놀라 혀를 내둘렀다. 공과 같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이처럼 침착하고 의젓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10여 년이 지난 뒤에 공이 원주(原州)로부터 배를 타고 두릉(斗陵,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을 지나다가 나의 처자를 위로해주었고, 서루(書樓)에까지 들어와 내가 다산에서 지은 시들을 또 기다란 소리로 낭독했는데, 그 소리가 비분 격절하여 듣는 자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은혜를 입어 향리로 돌아온 수년 후에 또 공이 원주로부터 나에게 들려 사흘을 자며 20년 동안 맺었던 울분을 다소나마 풀었다. 신사년(1821, 순조 21) 가을에 공이 죽었는데, 공의 아들 종걸(鍾杰, ?~?)이 공의 시문(詩文) 유고를 나에게 맡기면서 말하기를 ‘저의 선친(先親)을 알아주실 분은 어르신네이고, 선친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도 어르신네이며, 선친의 시문을 알아주실 분도 어르신네이니, 골라 뽑아 편집하고 서(序)를 써서 책머리에 붙이는 일은 어르신네가 하실 일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저승의 사람이라 감히 문자(文字)로 써 공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네. 오직 묘지명만은 깊이 물어버리지만 오래갈 수 있으니 그것만은 내가 쓰겠네.’라고 했다. 가장(家狀)을 살펴보니 공의 이름은 지범(持範)이요.…”

1822년(純祖 22, 壬午), 61세 이해는 공의 회갑년이다. 육경사서(六經四書)의 학도 두루 연구하여 마쳤고 경제·실용에 대한 책도 마쳤으니 천하의 능사(能事)가 끝난 것이다.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근원에 통달하고 생사(生死)·추탈(抽脫)의 근본을 체험하여 다시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지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自撰墓誌銘)은 擴中本·集中本の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발췌한 것은 集中本이다. “정오년(1810, 순조 10) 가을에 아들 학연(學淵, 1783~1859)이 정을 울려 역을함을 하소연하자 형조 판서 김계락(金啓洛, 1753~1815)이 임금의 재가를 청하여 고향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내렸다. 갑술년(1814) 여름에 대계(臺啓)를 정지시켰다. 무인년(戊寅年, 1818) 여름에 응교(應敎) 이태순(李泰淳, 1759~1840)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대계가 정지되었는데도 의금부에서 관문(關文)을 발송하지 않는 것은

국조(國朝) 이래 아직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과생될 폐단이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정승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이 의금부의 여러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에 판의금(判義禁) 김희순(金熙淳, 1757~1821, 호: 山木)이 관문을 보내어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가경(嘉慶) 무인년(1818) 9월 보름날이었다. 기묘년(1819) 봄에 배를 타고 남한강(濕水)을 거슬러 올라가 충주(忠州)의 선산에서 성묘했다. 가을에 용문산(龍門山)을 유람했고, 경진년(1820) 봄에는 배를 타고 산수(山水)를 거슬러 올라가 춘천(春川) 청평산(淸平山)을 유람했다. 가을엔 다시 용문산을 유람하는 등 산과 시냇가를 소요하면서 일생을 마칠까 했다. 내가 바닷가로 귀양 가자 어린 시절에 학문에 뜻을 두었지만 20년 동안 속세에 빠져 다시는 선왕(先王)의 대도(大道)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틈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이에 혼연히 스스로 기뻐하여 육경사서를 가져다가 골똘히 연구했다. 무릇 한(漢)·위(魏) 이래 명(明)·청(淸)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의 학설 중에서 경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널리 수집하고 고증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취사선택하여 나 나름의 학설을 갖추어놓았다. 선대왕(先大王)의 비평을 받았던 《모시강의(毛詩講義)》 12권을 필두로 하여 따로 《강의보(講義補)》 3권을 저술했으며,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9권(道光 甲午年에 改修하여 1권을 더했다), 《상서고훈(尙書古訓)》 6권,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7권(道光 甲午年에 《고훈》과 《지원록》을 합하고 또 8권을 더하니 21권이 되었다), 《상례사전(喪禮四箋)》 50권, 《상례외편(喪禮外編)》 12권, 《사례가식(四禮家式)》 9권, 《악서고존(樂書孤存)》 12권, 《주역십전(周易十箋)》 24권, 《역학서언(易學緒言)》 12권, 《춘추고징(春秋考徵)》 12권,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40권, 《맹자요의(孟子要義)》 9권, 《중용자간(中庸自箴)》 3권,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6권, 《대학공의(大學公議)》 3권, 《희정당대학강록(熙政堂大學講錄)》 1권, 《소학보전(小學補箋)》 1권, 《심경밀협(心經密驗)》 1권을 저술했으니, 경집(經集)이 모두 232권이다. 선왕(先王)의 도(道)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마음의 허령(虛靈)함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지만 본연(本然)이니, 무시(無始)니, 순선(純善)이라고 해서 안 된다. 마음의 기능을 생각함에 있어서, '도리어 미발(未發) 이전의 기상을 살핀다.'라고 해서 치심(治心)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은 재(才)이며,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쉬운 것은 세(勢)이며, 선을 즐겨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성(性)이니, 이 성을 따라 어김이 없으면 도(道)에 나아갈 수 있다. 때문에 성은 선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인(仁)이 된다. 아버지를 효로 섬기면 인이고, 형을 공손히 섬기면 인이고,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면 인이고, 벗을 신(信)으로 사귀면 인이고, 백성을 자애롭게 다스리면 인이다. '동방의 물(物)을 낚는 이차니, 천지의 지극히 공평한 마음'이라고 해서 인의 뜻을 풀이할 수 없다. 강서(強恕)로 행함이 인을 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러므로 증자(曾子, 기원전 505~기원전 435)가 도를 배움에 공자(孔子=丘, 기원전 551~기원전 479, 자: 仲尼)는 '일관(一貫)'으로 말해주었고, 자공(子貢, 기원전 520~기원전 456 추정)이 도(道)를 물었을 때에도 '일언(一言)'으로 일러주었다. 그래서 '경례(經禮) 3백, 곡례(曲禮) 3천을 꿰뚫는 것은 서(恕)이다.', '인을 행함은 자기에게서 비롯된다.', '자기를 극복하여 예(禮)로 돌아간다.'라는 말들이 공문(孔門)의 올바른 취지이다. 성(誠)이란 것은 서(恕)에 성실한 것이고, 경(敬)이란 것은 예(禮)로 돌아감이다. 이것으로써 인을 하는 것이 성(誠)과 경(敬)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삼가 밝게 상제(上帝)를 섬긴다면 인이 될 수 있지만, 헛되어 태극(太極)을 높이고 리(理)를 천(天)으로 여긴다면 인이 될 수 없고, 천(天)을 섬기는 데 돌아가고 말 뿐이다. 처음 내가 역(易)을 음미하고 예(禮)를 연구하여, 다른 여러 경서(經書)에 손을 대면서 매양 한번 깨달아 풀릴 때마다 마치神明(神明)이 가만히 깨우쳐주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나의 형님 [정약전(丁若銓, 1758~1816, 호: 巽菴)]이 흑산도(黑山島) 바다 가운데 계시면서 책이 한 편 완성될 때마다 보시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것은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 도(道)가 잃어진 지 천 년에 백 가지로 가리어지고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헤쳐 내고 분변하여 그 가린 것을 확 열어젖혔으니, 어찌 너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했다. 《시경》에 '하늘이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훈(墳)을 부는 듯, 지(麓)를 부는 듯하다.'라고 했거니와, 성(性)이 기호(嗜好)임을 알아냈고→성기호설(性嗜好說) 인(仁)이 효제(孝弟)임을 알아냈고 서(恕)가 인술(仁術)임도 알아냈으며 하늘에서 상제가 내려다본다는 것도 알아서, 정성스럽고 공경하여 부지런히 힘쓰며 장차 늙음이 닥쳐올 것도 잊은 것

은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내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또 시(詩)를 지은 것이 18권인데 깎아서 6권으로 하면 되겠고, 잡문(雜文)이 전편(前篇) 36권, 후편 24권이 있다. 또 잡찬(雜纂)은 종류가 각각 다르다. 《경세유표(經世遺表)》 49권은 미완성이고, 《목민심서(牧民心書)》 48권, 《흠흠신서(欽欽新書)》 30권과 《아방비이고(我邦備禦考)》 30권은 미완성이고,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10권, 《전례고(典禮考)》 2권, 《대동수경(大東水經)》 2권, 《소학주관(小學珠串)》 3권, 《아언각비(雅言覺非)》 3권, 《마과회통(麻科會通)》 12권, 《의령(醫零)》 1권을 합하여 문집(文集)으로 하면 모두 260여 권이 된다. 육경사서로써 자신을 닦고 일표(一表)《경세유표》·이서(二書)《欽欽新書》·《牧民心書》로써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자 했으니 본말(本末)이 구비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꾸짖는 사람은 많으니, 천명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불속에 넣어 태워도 괜찮겠다. 나는 건륭(乾隆) 임오년(1762, 영조 38)에 태어나 지금 도광(道光) 임오년(1822, 순조 22)을 만났으니 갑자(甲子)가 한 바퀴 돈 60년의 돌이다. 죄 많고 후회스런 세월이니 지금까지의 인생을 총결하여 한 평생을 다시 돌이키고자 한다. 금년부터 정밀하게 몸을 닦고 실천하여 하늘이 준 밝은 명(命)을 살피서 여생을 마치려고 한다. 집 뒤 자좌(子坐)를 등진 언덕에 관 들어갈 구덩이 모양을 그려 놓고 나의 평생의 언행을 대략 기록하여 하관(下棺)할 때의 묘지(墓誌)로 삼겠다.

명(銘)에 일렀다.
 네가 너의 착함을 기록하여
 여러 장이 되었는데
 숨겨진 너의 나쁨 기록한다면
 한없이 많으리라.
 사서육경(四書六經) 안다고
 네 스스로 말하지만
 행한 바를 살펴보면
 부끄럽지 아니하라.
 넓게 명예 드날리되
 찬양이랑 하지 말라.
 몸소 행해 증명해야
 드러나고 빛난다네.
 너의 분운(紛紜) 거두고
 너의 창광(猖狂) 거두어서
 힘써 밝게 삼긴다면
 끝내는 경사(慶事) 있네.

지평(持平) 윤지눌(尹持訥, 1762~1815)의 묘지명을 지었다[→〈무구윤지눌묘지명(無咎尹持訥墓誌銘)〉].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유년(1801, 순조 1) 봄에 내가 열상(洌上)에 있었는데 한성부(漢城府)에서 책룡사건(冊籠事件)이 터져 재앙의 계기가 무성했다. 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한 사람도 알려 주는 이가 없었는데, 유독 군(君)이 이주신(李周臣=이유수(李儒修, 1758~1822, 자: 周臣, 호: 錦里))[-〈금리이유수묘지명(錦里李儒修墓誌銘)〉]과 의논하여 빨리 서울로 들어오도록 편지로 알려주었다. 나는 진흙길을 헤치고 상경한 밤에, 이유수와 함께 군의 집에 모였는데, 군은 화로에 인삼 3뿌리를 달여 마시게 하면서 말하기를 ‘혹시 그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할까 해서라네.’라고 했다. 내가 옥(獄)에서 나오자나의 두 아들이 하남(河南)에서 나를 송별하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군과 이유수가 고기를 작은 술에다 끓여주며 먹도록 했고, 울면서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 서로 껴안은 채 잠을 자고 나서 보내주었다. 아, 말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이나 되겠는가! 군의 사람됨은 선(善)을 즐기고 의(義)를 좋아하며 과단성이 있어 행동에 머뭇거리미 없어, 뜻에 맞는 일이면 펄펄 끓는 물도 밧을 수 있었다. 계축년(1793, 정조 17) 이후에는 유독 천전(天全)(巽菴先生の字)과 어울렸으며, 날마다 이주신(儒修)·한혜보(韓僊父=한치응(韓致應, 1760~1824))·윤의심(尹畏心=윤영희(尹永禧, 1761~?, 자: 畏心))·강인백(姜仁伯=강이원(姜履元, ?~?)) 등과 남산 아래에 모여 마음껏 마시며 멋대로 놀았는데, 더러는 소릉(少陵)으로, 더러는 직금방(織錦坊)으로 모이는 장소를 자주 바꿨다. 나와 채이숙(蔡邇叔=채홍원(蔡弘遠, 1762~?))은 자주 그들의 단정치 못함을 나무랐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비분강개하여 속된 사람들이 겉으로 꾸미고 비위 맞추는 태도를 흘려본 것이다. 오직 혜보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했으며 멋대로 지껄이는 일이 없었다. 천전이 일찍이 말하기를, 너는 아무개 상서(尙書), 아무개 시랑(侍郎)과 좋아 지내지만 나는 술꾼 몇 사람과 얽매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바람이 일고 물결이 치솟으면 어느 쪽이 서로를 배신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신유년(1801, 순조 1)에 화란이 일어나자 이 몇 사람만이 평소처럼 따듯하게 감싸주었다. 의심은 대관(臺官)에게 거리낌 없이 말했고, 우리 형제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인백은 화원(花園)에서 통곡하며 취중에도 우리 형제가 좌우에 있길라도 한 듯 찾았다. 그러나 지위 높은 사대부들은 곧장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나를 공격했으나, 아! 이것이 내가 형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다. 군(君)의 이름은 지눌(持訥), 자(字)는 무구(无咎), 호는 소고(小阜)인데, 해남 윤씨(海南尹氏) 충헌공(忠憲公)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후손이다.”

장령(掌令) 이유수(李儒修, 1758~1822)의 묘지명을 지었다[→금리이유수묘지명(錦里李儒修墓誌銘)].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공은 날마다 나의 중씨(仲氏) 천전(天全)·한혜보(韓僊父)·윤의심(尹畏心)·윤무구(尹无咎)·이한여(李翰如=이시우(李是鈺, ?~?))·강인백(姜仁伯) 등과 어울려 다니며 마음껏 마시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옛날의 동료 중에 존귀한 신하와 권세 있는 재상이 많았지만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체제공(蔡濟恭, 1720~ 1799)에 대해서도 그 덕을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사모했지만 그분 덕에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한참 악당들이 선동하고 있을 때 공은 편지로 나에게 알려주어 내가 급히 서울로 들어와 변란을 살필 수 있도록 했으며, 내가 귀양지로 가버리자 나의 두 아들을 어루만지며 항상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악당들이 유언비어로, 공이 술을 차고 나와서 나의 형제를 강 위에서 전별했다고 하면서 눈을 흘기고 이를 갈며 공을 처벌하려고 벌렸다. 겨울에 공이 이가환(李家煥, 1742~1801)·정모(丁某) 등과 사귀었던 일을 논하여 공을 무산부(茂山府)에 안치했다. 공은 평소 몸이 약했는데 변방의 기후가 사나와 거의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으니 계해년(1803, 순조 3) 겨울에 방환되었던 것이다. 무인년(1818, 순조 18) 가을에 내가 남쪽으로부터 돌아오자 공이 말하기를 ‘벗이 돌아오니 내가 세상 살맛이 난다.’라고 했다. 기묘년(1819, 순조 19) 가을에 열상(例上)으로 나를 찾아와 20년 동안의 답답한 회포를 풀었다. 경진년(1820, 순조 20) 겨울에 김이교(金履喬, 1764~1832)가 이조 판서가 되자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제수되었다. 공이 이조 판서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가니 이조 판서가 말하기를, ‘공에게는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지요?’라고 물었다. 공이 말하기를, ‘20년 동안 마당가에 몰락되어 있어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그가 ‘오직 정모(丁某) 한 사람뿐인가요?’라고 해서 공이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옛날 김공후(金公厚, 1767~1847)(履載)가 고이도(卓夷島)의 가시울타리 속으로부터 사면되어 향리로 돌아갈 때 나에게 들러 묻기를, ‘풍파가 몹시 심했던 동안에 능히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라 하기에 내가 ‘이주신(李周臣) 한 사람뿐이오.’라고 하고, 신유년(1801, 순조 1)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들 형제(金履喬·金履載 형제)가 공과 나의 친교를 말했다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다.”

〈사암지문보유(俟菴誌文補遺)〉[〈자찬묘지명〉(集中本)의 補遺를 말한다.]에 말했다. “내가 《주례(周禮)》를 연구하여 새로운 뜻을 세운 것이 많다. 육향(六鄉)의 제도에 관해서 말하면, 육향은 왕성(王城)의 안에 있다. 장인(匠人)이 나라의 규모를 계획할 때 이흠 구역으로 나누어 왕궁은 가운데 있고 전면은 조정(朝廷)이고 후면은 저자(市)이다. 좌우에는 육향인데, ‘둘씩 서로 마주보게 한다.[兩兩相鄉.]’라고 할 때의 ‘향(鄉)’은 ‘嚮[향한다]’의 뜻이다. 하관(夏官: 중국 周나라의 6관의 하나.

大司馬가 그 장이며 軍政과 兵馬를 관장했다.) 양인(量人: 중국 周나라의 官名. 測量·營造 등을 관장했다.)이 도(都)·비(鄙)를 만들 때 모두 9주(九州)로 했다. 기자(箕子, 기원전 1175?~기원전 1083?)가 평양성(平壤城)을 만들 때에도 성안을 정(井)자 모양으로 구획했던 것은 다 이 법이었다. 정현(鄭玄, 127~200, 자. 康成)은 육향이 교외(郊外)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향삼물(鄉三物: 六德·六行·六藝의 세 가지)’과 ‘교만물(敎萬物)’을 배풀 곳이 없다. 승지(承旨) 신작(申紳, 1760~1828, 호: 石泉)이 아직도 정현의 뜻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나는 왕복 서너 번의 편지로 그렇지 않음을 밝혔다.”

6월에 신작의 편지에 답하면서 육향의 제도를 논했다(편지[〈答申在中〉]는 本集에 실려 있다.)(〈答申在中〉).

정산(鼎山) 김기서(金基鉞, 765~?)에게 편지를 보냈다(편지[〈答鼎山〉]는 本集에 실려 있다).

1823년(純祖 23, 癸未), 62세 9월 28일에 승지(承旨) 후보로 낙점(落黜)되었으나 얼마 후 취소되었다.

1827년(純祖 27, 丁亥), 66세 10월에 윤극배(尹克培, 1777~?)가 ‘동뢰구언(冬雷求言)’으로 상소하여 공을 참혹하게 무고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때는 익종(翼宗, 1809~1830: 純祖(재위 1800.7~1834.11)의 世子로 1827년 代理聽政하여 善政을 베풀었으나 聽政 4년 만에 죽었다. 죽은 후 翼宗으로 追尊되었다.)이 대리청정(代理聽政)하던 첫해였는데, 익종의 마음은 어진 인재를 목마르게 구하여 바야흐로 공을 거두어 쓰려고 했다. 악당들이 그 사정을 알고 윤(尹)을 사주하여 소(疏)를 올리게 한 것이다. 소가 들어가자 승정원에서 올리지 않으므로 승정원에 직접 나아가 아뢰었다. 이에 극배(克培)를 엄하게 국문하자 마침내 무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인년(1830, 순조 30) 연간에 윤극배가 또 사서(邪書) 한 권을 만들어 소매 속에 넣고 다니면서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 1765~1832, 호: 楓阜)을 통하여 알현하려고 했다. 그때는 익종이 승하하여 순조가 다시 정사를 맡았는데 영안(永安)이 심복의 신하로 요직에 있었다. 윤(尹)은 사서를 영안에게 바쳐 공을 무고하려는 계획이었다. 명함을 드리고 들어가 앞에 이르러 윤이 책을 바치니, 영안은 슬쩍 두어 줄도 채 안 보고 그것이 사람을 무고하는 괴상한 무리의 글임을 알고 도로 주면서 이르기를 “이런 화(禍)를 좋아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후는 이런 글로 나에게 요청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 후 또 윤이 책을 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마치려 하니 영안이 말하기를 “지난번 책을 또 가지고 와서 나에게 요청하니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다. 고약한 사람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어찌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청지기에게 명하여 붙들고 나가게 하니 윤의 계획이 끝내 실행될 수 없었다.

1830년(純祖 30, 庚寅), 69세 5월 초5일, 약원(藥院)에서 당제(湯劑)의 일로 아뢰어 부호군(富護軍)에 단부(單付)되었다. 그때 익종(翼宗)의 환후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여 약원(藥院)에서 아뢰어 약(藥)을 논의할 것을 청했다. 공이 명을 받들어 들어가 진찰하니 환후가 거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약을 달여 올리기로 했는데, 미처 올리기도 전에 오악(五嶽)의 기도 소리가 났으니 이는 초6일이었다. 공은 애통해하며 그날로 집에 돌아왔다.

1834년(純祖 34, 甲午), 73세 봄에 《상서고훈(尙書古訓)》과 《상서(尙書)지원록(知遠錄)》을 개수(改修)하여 합편했는데 모두 21권이였다. 그 합편 서설(序說)에 말했다. “옛날 내가 다산(茶山)에 있을 때 《상서(尙書)》를 읽으면서 매색(梅頤=梅頤, 枚頤, 동진 시대, ?~?)의 잘못된 이론을 잡아서 논술한 것이 있는데 《매씨서평(梅氏書評)》이라 이름했다. 무릇 9권이였다. 이어서 벽중진본(壁中眞本) 28편에서 구하고 구양씨(歐陽氏)·하후씨(夏侯氏)·마씨(馬氏)·정씨(鄭氏)의 설을 모아 《고훈수략(古訓蒐略)》이라 이름했다. 이어서 매씨(梅氏)·채씨(蔡氏)의 설을 고훈(古訓)과 비교하고 간간이 내 의견을 붙인 것을 《지원록(知遠錄)》이라 이름했다. 이 3부의 책은 모두 귀양살이하면서 편찬한 것이라, 참고할 책이 적어서 빠진 것이 매우 많다. 또 새로 고기 한 점의 맛을 볼 때마다 스스로 기뻐하여 변론한 사기(辭氣)가 사납고 오만하여 공손치 못한 것이 많았다. 24년이 지난 지금 펼쳐 볼 때마다 두렵고 걱정스러워 스스로 마음 아파하면서 언행에 소박함이 없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내가 지은 육경사서의 설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더욱 심한 것이 《서경(書經)》에 대한 설이다. 이제 《매씨서평》을 가져다 그 경박한 말을 깎아버리고 《상서지원록》을 가져다가 조목조목 나누어 《상서고훈》의 편에 붙여 한 부로 만들었다. 허황한 소리와 어그러진 말은 이미 제거했지만, 그 가운데서 심하지 않은 것은 간간이 남겨두어 뒷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사람임을 알게 하고자 했다. 책은 비록 두 권을 합쳤지만 이름은 그대로 《상서고훈》이라고 했으니, 새로운 설(說)을 붙이긴 했지만 고훈을 위주로 했기 때문이다. 금년 나이가 73세인지라 정력이 쇠진하여 스스로 분발할 수도 없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능히 일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겠다.”

가을에 《매씨서평》을 개정했다. 이 책은 경오년(1810, 순조 10)에 완성했는데, 이때 개수(改修)하고 또 1권을 보태었으니, 모두 10권이다. 그 책머리에 말했다. “내가 옛날 서울에 유학할 때 사우(師友) 간에 왕왕 《매씨상서(梅氏尙書)》 25편의 문체가 비순(卑順: 겸손하고 순수함)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내각(內閣)의 과제에 응하여 <우공(禹貢)>에 이르렀을 때 큰일이 일어났다. 건륭 임자년(1792, 정조 16) 봄에 회정당(熙政堂)에 입시(入侍)하여 <우공> 외우기를 마치자 임금의 칭찬이 흠족했고, 옥음(玉音)이 거둬 간절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 임금은 경전에 마음을 쏟아, 당시의 인재들에게 널리 물어보는 ‘상서조문(尙書條文)’ 수백여 조가 있었는데,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의 구별에 세세히 마음을 쏟았다. 나는 상중(喪中)이라 집에 있었으므로 조문(條問)에 답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한스러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이미 승하했으니 조금 들은 것마저도 물어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매씨(梅氏)의 책은 여러 가지 말을 긁어모아 일가를 이룬 것인데 그중에는 지극한 말과 올바른 가르침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수집할 때 <열명(說命)>·<태서(太誓)>처럼 본래 편명(篇名)을 표방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열명>·<태서>로 삼았으니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는가. <하서(夏書)>·<주서(周書)>처럼 단지 시대만 표방한 것과 ‘서왈(書曰)’, ‘서운(書云)’과 같이 원래 구분해놓지 않은 것은 각 편에 나누어 넣고 거짓된 말을 섞어 성경(聖經)의 이름을 훔친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맑게 분별하는 사람은 연구해서 밝혀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朱熹, 1130~1200, 호:晦庵)는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공안국(孔安國, 기원전 156~기원전 74 사이 추정)의 《상서(尙書)》를 의심했다.’, ‘이것은 가짜 책이다.’, ‘공안국의 《상서》가 동진(東晉) 때에야 나왔는데, 그전 시대의 선비들이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서경》중에서 읽기 쉬운 것은 모두 고문(古文)이고 읽기 어려운 것은 모두 금문(今文)이다.’, ‘복생(伏生, ?~?, 前漢 시기 활동)이 입으로 외어 전수했는데 어찌 하여 어려운 것만 기억하고 쉬운 것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는가?’, ‘어찌하여 몇 백 년 동안 벽 속에 있었던 물건이 한 글자도 잘못되고 손상됨이 없었던 말인가?’라고 했다. 한 당 이래로 고경(古經)을 독실하게 좋아하기를 주자만 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 책을 의심하고 흠 없는 지극한 보배를 헐뜯었겠는가. 매씨의 책이 진실로 의심할 만하기 때문에 주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덕(德)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음에야. 주자에 앞서 오역(吳越, 1100~1154)이 있었고 주자 이후에 오정(吳澄, 1249~1333)이 있어, 두 사람 모두 따로 책을 지어서 그 허위를 통렬하게 분별하고 매씨를 공격했으니 어찌 주자만 그러했겠는가. 소산 모씨(蕭山毛氏=모기령(毛奇齡, 1623~1716, 호:西河))의 책이 나와서는 주자를 업신여기고 헐뜯음이 끝이 없었다. 그는 말하기를 ‘고문의 원통함은 주씨(朱氏)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했다. 그가 지은 《고문상서원사(古文尙書冤詞)》 8권에서는 수천만의 글로 횡설수설하며 ‘나는 성경(聖經)을 지키다.’라고 했다. 그 말이 이와 같을진대 꼭 입 아프게 싸워 경전을 헐뜯는 욕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단지 그 본의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자가 한 말을 힘써 배척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이름은 들날릴지 몰라도 그 뜻은 옳바르지 못하다. 무릇 마음가짐을 공평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변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고거(考據)가 기묘하고 능청스러우며 변론이 호쾌하기 때문에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이 아니면 그 뿔을 꺾기가 어렵다. 또 잘못을 따지는 법은 공평하고 진실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한(漢)나라 사람들이 ‘정위평(廷尉平: 漢나라의 官名. 廷尉에 左右 4인을 두었음. 주로 獄訟을 공평하게 판결하는 일을 맡았다.)’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무슨 원통함이 있어서 시끄럽게 굴고 기세를 뽐내는가. 나는 본래 일이 없는지라 공평함으로써 이를 대응하니, 또한 ‘편안함으로써 수고로움을 맞는다.[以逸待勞]’라는 뜻이다. 이에 주자가 의심을 품은 단서를 취하여 공평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논의했다. 이름하여 《매씨서평》이라 한다.”

그 서문에서 말했다(巽庵先生이 지었다). “밝은 임금이 나오지 않고 도학(道學)이 찢기고 무너져, 바른 것은 숨어버리

고 비뚤어진 것은 날뛰며, 진실한 것은 굽혀지고 거짓된 것은 신장되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육경(六經)이 더욱 심하다. 그러나 전주(箋註)만 멋대로 지어 후학들을 현혹시킬 뿐이지 경전은 경전 그대로이다. 옛글을 교묘히 바꾸고 가짜로 새 경전을 만들어 천하 사람들을 미혹한 것으로는 매색(梅蹇)의 고문(古文)《상서(尙書)》만한 것이 없다. 아! 백 편의《상서》는 제왕의 떳떳한 법도인지라 그것을 완전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은 만세의 복이다. 불행하게도 이미 산일되어버린 이상, 남은 것을 모아 지겨 귀한 보배로 여길 것이거늘 어찌하여 위서(僞書)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는가. 아! 고적(古籍)을 모아서 엮고 문장을 만들어 고문(尙書)라 했으니, 애초에는 제해(齊諧: 怪談을 적은 책)·우초(虞初: 漢나라 때의 方士. 소설을 처음 지었으므로 소설을 뜻함)의 종류였을 뿐이었다. 어찌 감히 정학(正學)을 쓸어 내고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랐겠는가. 세월이 흐른 지 오래되매, 정현의 학문이 쇠미해지고 진(晉)나라 정사가 혼란해진 것을 보고서 매색이 영예와 작록을 얻을까 하여 임금에게 올리게 되었다. 한번 바뀌어 당(唐)의 공영달(孔穎達)이 이것에 소(疏)를 붙여 오경(五經)의 반열에 서게 했고 두 번 바뀌어 송(宋)의 채침(蔡沈, 1167~1230)이 전(傳)을 달아 삼경(三經)에 끼이게 했다. 천하가 드디어 이에 휩쓸려 정현(鄭玄)의 진고문(眞古文)은 없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주부자(朱夫子)의 공평한 마음과 높은 안목이 그 간사하고 그릇됨을 밝혔다. 그 자세한 말과 바른 논의는 유집(遺集)에 산견된다. 원·명 때에도 논란이 분분했으나 다만 그 조사와 증명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승복하지 않았다. 돌피와 가라지가 좋은 곡식에 끼어 있었으니 어찌 매색이 그랬겠는가. 대개 또한 의거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종대왕(正宗大王)은 성학(聖學)이 삼대를 꿰뚫었고 사도(師道)가 육예(六藝)에 두루 미쳤다. 하문하신 ‘상서조문(尙書條問)’에서 금문(今文)·고문(古文)의 논쟁을 반복해서 따졌으니 매씨의《상서》가 진실로 위서란 점은 이미 통찰하여 분명히 변분하셨다. 약용(若鏞) 같은 신하가 있어《상서평(尙書平)》9권을 지었으니 이른바 맹자(孟子, 기원전 372~기원전 289 추정)·순경(荀卿=荀子, 기원전 298~기원전 238)이 부자(夫子)의 사업을 윤색한 것과 같다. 그 지식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은 모두 선왕(先王)의 훈도에 의한 것이다. 유락한 이래로 이왕 흘러가버린 냇물을 아깝게 여겨 사문(斯文)의 물결을 돌려놓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경전에 침잠하고 의리에 입각하여《역경(易經)》·《예기(禮記)》의 주(註)를 차례로 완성했다.《상서평》1부(部)는 2천 년래《상서》의 진면목이다. 공안국(孔安國) 이후로 고문(尙書)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매씨 이후로는 진(晉)나라 이전의 전적이 비로 쓸어버린 듯 없어졌으니 지금 세상에 나도는 것은 매씨의 우익(羽翼)이 아닌 것이 없다. 모기령(毛奇齡)의《원사(冤詞)》같은 것은 옹혼한 변론과 해박한 고증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되었다. 신 약용(若鏞)이 이에 그 본원(本源)을 거슬러 올라가 고찰하여 틀림없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고적(古籍)을 모은 것은, 그 본래 뜻을 지적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이 저절로 드러나게 한 것이고, 전사(前史)에 의거한 것은, 그 실증을 밝히어 간사하고 핑계 대는 일을 못하게 한 것이다. 매씨설의 감추어진 실상을 적발해낸 것은 마치 장탕(張湯, ?~기원전 115)이 죄수를 신문한 것과 같고, 모씨(毛氏)의 허황한 문사(文辭)를 판결한 것은 마치 자로(子路, 기원 전 542~기원 전 480)가 옥사를 판결한 것과 같았다. 종합한 이치가 공평하여 모두 극치에 이르렀으며, 거짓되고 간사한 것이 쫓겨나고 참되고 바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비록 매씨·모씨가 몸소 폐석(肺石: 周나라 때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이 돌 위에 3일간 앉아 있으면 임금이 그 일을 처리해 주었다고 함) 위에 앉더라도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자복할 것이지, 감히 대답을 못할 것이다.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후에 이 책을 읽는 자가 만일 변석(辨析)의 정확함과 고거(考據)의 해박함과 문장의 유창함만을 이 책에서 추구한다면 지엽적인 것이다. 아, 요(堯)·순(舜)·우(禹)·탕(湯)이 전수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끊어진 나무에서 바른 길을 찾았고 떨어진 계통에서 대명(大命)을 이었다. 어긋난 것을 배척하고 정미(精微)한 것을 드러내어 우뚝이 도학의 종지(宗旨)가 된 것이 거의 동량(棟梁)에 충당될 만하다. 이는 다만 술 안의 고기 한 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학문이 고금에 뛰어났다고 말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아, 백세(百世)가 앞에 있고 천세(千世)가 뒤에 있지만 내가 어찌 이를 사사로이 여겨 말하지 않아야 하겠는가! 전(傳)·《중庸》을 말함에 말하기를 ‘국가가 흥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상서로움이 있고 국가가 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라고 했는데, 매색의《위상서(僞尙書)》는 도(道)에 있어서 재앙이고, 신(臣) 약용의《상서평》은 도에 있어서 상서로움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백성을 깨우침이 훈(薰)과 같고 지(麋)와 같고 장(璋)과 같고 규(圭)와 같다.’라고 했으니 나는 이에 느낀 바가 깊도다.”

11월에 임금의 환후로 다시 소명(召命)이 있기에 명을 받들어 급히 대궐에 나아갔다. 12일에 출발하여 이튿날 새벽에 동점문(東漸門)을 들어갔다. 임금님의 환후는 매우 위독하여 백관들이 곡반(哭班)으로 달려 나갔다. 공은 홍화문(弘化門)에서 초상이 났다는 말을 듣고 그 이튿날 고향으로 돌아왔다.

1836년(憲宗 2, 丙申), 75세 2월 22일 진시(辰時)에 공이 열상(洌上)의 정침(正寢)에서 생을 마쳤다. 이날은 공의 회혼일(回婚日)이어서 족친이 모두 왔고 문생들이 다 모였다. 이보다 앞서 4일에 약한 증세가 있었는데 21일에 뚜렷이 회복될 희망이 있었지만 공은 이미 죽을 때가 된 줄을 알고 여러 가지 지시하는 것이 평소와 같았다. 22일에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으니 진시 초각(初刻)이었다. 장례 절차는 모두 유명(遺命) 및 《상의절요(喪儀節要)》를 따랐다. 이날 진시에 큰바람이 땅을 쓸며 불었고 햇빛이 엷어져 어둑어둑했으며 토우(土雨)의 기운이 누렇게 끼었다. 문인 이강회(李綱會, 1789~?, 호: 擊磬子)가 서 울에 있었는데 큰 집이 무너져 내려 누르는 꿈을 꾸었다. 아! 이상한 일이다.

이에 앞서 임오년(1822, 순조 22) 회갑 때 공이 조그마한 첩(帖)을 잘라 유명(遺命)을 적어두었으니 장례 절차였다. 그 첫머리에 말했다. “이 유명(遺命)은 꼭 예(禮)에 따를 것도 없고 꼭 풍속을 따를 것도 없고 오직 그 뜻대로 할 것이다. 살았을 때 그 뜻을 받들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뜻을 좇지 않으면 모두 효(孝)가 아니다. 하물며 내가 《예경(禮經)》을 수십 년 동안 정밀하게 연구했으므로 그 뜻은 다 예(禮)에 근거를 둔 것이지 감히 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니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상의절요>에 있으니 마땅히 잘 살펴서 행하고 어기지 말라.” 그 유령은 다음과 같다. “병이 나면 바깥채에 거처하게 하고 부녀자들을 물리치고 외인(外人)을 사절한다. 숨이 끊어지면 속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 수시(收屍)는 풍속대로 하되 이(齒)를 괴지 말고(飯含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을 묶지 말고 한두(限斗: 황토를 다리 사이에 넣어 시체를 고정시키는 것)를 설치한다. 그날로 목욕시키고 염습하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튿날 아침에 해도 좋다. 명목(幛目: 시체의 눈을 가리는 베)은 검은 비단에 붉은 안감을 쓴다. 악수(握手)는 검은 비단에 붉은 안감을 쓴다. 귀마개는 흰 솜을 쓴다. 명의(明衣)는 무명을 쓴다(지금은 흘적삼 흘바지를 쓰는데 적삼은 잇던 것이 있으니 곧 汗衫이다). 속옷은 겹옷으로 하는데(솜을 넣지 않는다). 위는 소매 긴 옷을 쓰고 아래는 바지를 쓰되 모두 무명으로 한다. 중간 옷은 홑옷(單衣)을 쓰되 명주도 좋고 무명도 좋다. 입던 옷도 좋다. 겹옷은 조포(朝袍)를 쓰는데 명주도 좋고 무명도 좋다. 검은 띠는 흰 선을 두른다(선을 두르지 않아도 좋다). 옛날에는 포(布)를 썼다(넓이는 두 치이고 길이는 세 치이며 양쪽 끝을 늘어뜨리지 않는다). 흰 선은 푸른 선을 두른다. 얼굴 가리개는 비단을 쓰되 복건(幅巾)을 사용하지 않는다. 버선에는 끈이 있고 바지에는 띠가 있게 한다. 녹색 주머니가 4개인데 명주나 베를 쓴다. 작은 이불은 겹이불을 쓴다(솜을 넣지 않는다). 무명이거나 삼베이거나 더럽지 않으면 빨지 말라. 숨이 끊어지고 하루 반이 지나야 소렴(小斂)을 할 수 있다. 시신을 묶는 끈은 삼베를 쓰되 없으면 무명을 쓴다. 산의(散衣)와 도의(倒衣) (棺 속 빈 곳에 채워 넣는 옷)는 헤어진 것을 씌어 마땅하다. 그다음 날 대렴(大斂)을 하는데 관(棺)은 몸에 맞게 하고 칠성판(七星板: 관 밑바닥에 까는 판자. 복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구멍을 뚫거나 먹으로 표시했다.)과 출회(紼灰: 차조의 재. 棺 바닥에 깔았다.)는 쓰지 않는다. 이불과 요는 쓰지 말고 소렴한 시신을 곧 관에 넣는다. 빈 곳을 채우는 데에는 옷과 솜을 쓰지 않고 靚(禮箋과 樂書 등에 있는 稿本이다.)과 황토(크게 빈 곳에는 깨끗한 흙을 가져다가 구워 말려 체로 쳐서 가늘게 만들어 두터운 종이 주머니에 담아서 쓴다.)를 쓴다. 천금(天翁)은 무명을 쓰되 붉은 안감을 댄 검은 색으로 한다. 명정(銘旌)을 만들어 혼백과 마주 두고 장례할 때에는 붉은 깃발을 설치한다. 집의 동산에 매장하고 지사(地師)에게 물어보지 말라. 광(塋)을 만들 때에는 회(灰)로 쌓지 말고 하관할 때 회를 채워 넣는다. 회를 모래에 섞을 때에는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하고 아주 고르게 이겨야 한다(세 번 흙을 섞는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마음을 쓸 것은 이 한 가지 일뿐이다. 다른 것은 다 쓸데없는 글이다. 석물(石物)은 지나치게 세우지 말라. 그 나머지는 <상의절요>를 따라 어겨서는 안 된다. 너의 어머니 상도 이와 같이 하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이어서 발(跋)을 붙여 말했다. “천하에 가장 업신여겨도 되는 것은 시체이다. 시궁창에 버려도 원망하지 못하고 비단 옷을 입혀도 사양할 줄 모른다. 지극한 소원을 어겨도 슬퍼할 줄 모르고 지극히 싫어하는 것을 가해도 화낼 줄 모른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은 이를 업신여기고 효자는 이를 슬퍼한다. 그러니 유령(遺令)은 반드시 준수하고 어기지 말아야 한다. 옆에서 떠들고 비웃는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인데도 살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시체는 말이 없지만 박학한 사람인데도 죽었기 때문에 업신여기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앞의 첩(帖)에서 말한 바를 털끝만큼이라도 어긴다면 불효요, 시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너희 학연(學淵, 1783~1859)·학유(學游, 1786~1855)야! 정녕 내 말대로 하여라.”

4월 1일에 집 동산에 장사 지냈는데 유명대로 쫓았다. 곧 여유당(與猶堂) 뒤편 광주(廣州) 초부방(草阜坊) 마현리(馬峴里) 자좌(子坐)의 언덕이다(곧 지금의 楊州郡 瓦阜面 陵內里이다).

1910년(隆熙 4, 庚戌) 7월 18일, 특별히 정헌대부(正憲大夫)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을 추증(追贈)하고 문도공(文度公)의 시호를 내렸다(널리 배우고 많이 들은 것을 文이라 하고, 일을 처리할 때 義에 맞는 것을 度라 한다).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옛 승지(承旨) 정약용은 문장과 경제(經濟)가 일세에 탁월하여 마땅히 조가(朝家)의 표창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에 특별히 정삼품(正三品) 규장각 제학을 추증하여 절혜(節惠)의 은전을 베푸노라.”라고 했다.

공께서 돌아가신 지 8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연보(年譜)가 편성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경신년(庚申, 1920) 여름에 연보를 편성하기 시작하여 1년이 걸려서 완성했다. 삼가 연보의 체재를 살펴 공의 자취를 기술했거니와 공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서체(書體)가 아니다. 공은 일찍이 임금의 지우(知遇)를 받아 20년 동안 가까이 모시어 총애와 포장(褒獎)이 분수에 넘었으니 이것은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공이 20년 동안 유포되어 다산(茶山)에 있으면서 열심히 연구와 편찬에 전념하여 여름 더위에도 멈추지 않았고 겨울밤에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 경서와 사서(史書)를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두어 명이고, 입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 적어 붓 달리기를 나는 것같이 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고, 항상 번갈아가며 원고를 바꾸어 정서(正書)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고, 옆에서 도와 먹으로 칠친 종이에, 잘못 불러준 것을 고치고 종이를 눌러 편편하게 하며 책을 장정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었다. 무릇 책 한 권을 저술할 때에는 먼저 저술할 책의 자료를 수집하여 들쭉 들쭉 비교하고 서로 참고하고 정리하여 정밀하게 따졌다. 《시경(詩經)》·《서경(書經)》에 관한 책을 저술할 때에는 먼저 《시경》·《서경》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춘추(春秋)》를 고징(考徵)할 때에는 먼저 《춘추》에 관한 자료들을 모았다. 그러므로 저술할 책의 경지(經旨)는 구름을 헤치고 햇빛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희미하고 흐린 기운을 띤 것이 없다. 그 학문의 문로(門路)는 진(秦)·한(漢) 이하는 끊어버리고 뛰어올라 바로 공자(孔子)의 학(學)에 접했기 때문에 이를 터득한 자는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서 아이 때부터 머리가 허영게 될 때까지 익힐 걱정이 없었다. 무릇 육경사서의 학에 있어서 《주역(周易)》은 5번 원고를 바꾸었고 그 나머지 구경(九經)도 두세 번씩 원고를 바꾸었다. 공의 탁월한 식견에 부지런하고 민첩함을 겸하여 이 큰일을 완성했던 것이다. 저술이 풍부하기로는 신라 고려 이전이나 이후에 없었던 바이다. 그 편질(篇帙)이 방대하여 흠어지고 없어진다면 후손 중에서 누가 기억할 수 있을지 두렵다. 그래서 상세히 기록했다. 이기경(李基慶, 1756~1819)·홍희운(洪羲運, 1752~?)·윤극배(尹克培, 1777~?)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분노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두고 보자’라는 식이 아닌 공의 뜻을 받든 것이다. 윤남교(尹南臯=윤지범(尹持範, 1752~1821))·이장령(李掌令=이유수(李儒修, 1758~1822))·윤소고(尹小阜=윤지눌(尹持訥, 1762~1815))의 묘지명을 뽑아 실은 것은 은혜를 아는 공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후세 자손들로 하여금 돈독한 정의를 지니게 하려함이다. 병자년(1816, 순조 16)의 가서(家書)는 네 가지 큰 등급의 정밀한 뜻을 밝혀 몸을 세울 바른 곳을 나타내고 우뚝하게 꺾이지 않았으니, 후학들이 종신토록 가슴에 새기게 하려 함이다. 가계(家誡)와 가서는 모두 성현들이 남긴 의논이어서 범속한 데에 떨어지지 않았으

니, 한집안의 자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자제들이 다 이것으로 수신(修身)·제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수록했다. 공이 임오년(1822, 순조 22) 이후로 마음을 정밀하게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도(道)를 즐기고 천명(天命)에 순종하여 15년간 기술한 것을 받은 사람이 없다. 아! 공은 처음에 거룩한 임금을 만나 정조대왕(正祖大王, 재위 1776.3~1800.6)을 가까이 모시면서 경전을 토의하고 학문을 강론하여 먼저 그 바탕을 세우고, 중년에 상고의 성인들을 경적(經籍)에서 사숙(私淑)하여 아무리 심오한 것도 연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무리 높은 것도 우러르지 않은 것이 없다. 만년에는 대월(對越)의 공부와 병중흑백두(瓶中黑白豆: 마음을 맑게 하는 敬公부. 앓는 자리에 두 개의 병을 두고, 착한 마음이 일면 한 병에 흰콩을 넣고 악한 마음이 일면 다른 병에 검은 콩을 넣었는데, 처음에는 흰콩이 적고 검은 콩이 많았으나 후에는 흰콩이 많아지고 나중엔 검은 콩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다.)에 엄했다. 정신이 혼미할 때에는 다시금 각성하여 우러러 주자(朱子)의 남긴 법을 본받았다. 이미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여 대단한 체하지도 않았고, 이미 늙었다고 하여 조금도 헤이해지지 않았으니, 아, 지극한 덕행(德行)과 훌륭한 학문이 아닌가!

77 갑자(甲子) 신유(辛酉, 1921) 12월 하순(下旬) 현손(玄孫) 규영(奎英) 삼가 적음